
分 期 別

勞 動 動 向 分 析

Quarterly Labor Review

第 3 卷 第 2 號

————— 編輯委員 —————

委員長 崔榮起

委員 金兌基 朴基性

柳吉相 李原德

編輯問議：動向分析室(785-7430)

編輯問議：研究調整室(785-5080)

————— 執筆陣 —————

- 要約
 - 國內勞動市場動向 및 展望(黃仁泰)
 - 國內勞使關係動向 및 展望(兪京滯)
 - 海外勞動動向(李泰憲)
 - 우리나라 勞動組合의 現況과 發展課題
(朴德濟·朴基性)
 - 우리나라 勞使紛糾의 產業別發生性向과
持續期間의 特徵(金兌基)
 - 建設勞動市場의 現況과 諸問題點(李泰憲)
 - 重要勞動判例(金哉勳)
-

5	要約	
---	----	--

13	國內勞動市場動向 및 展望	
	I. 經濟一般	13
	II. 雇 傭	15
	III. 賃 金	35
	IV. 勤勞時間	41

46	國內勞使關係動向 및 展望	
	I. 勞動組合	46
	II. 賃金交渉	55
	III. 勞使紛糾	59

67	海外勞動動向	
	I. 싱가포르	67
	II. 臺 灣	78

83	우리나라 勞動組給의 現況과 發展課題	
----	---------------------	--

96	우리나라 勞使紛糾의 産業別 發生性向과 持續期間의 特徵	
----	-------------------------------	--

106	建設勞動市場의 現況과 諸問題點	
-----	------------------	--

115	重要勞動判例	
-----	--------	--

124	主要勞動日誌	
-----	--------	--

131	附 表	
-----	-----	--

要 約

▷ 주요 목차 ◁

- I. 勞動市場
- II. 勞使關係

I. 勞動市場

● 雇傭 및 失業

1/4 분기성장률 10.3%
 제조업성장률 7.1%
 건설업성장률 39.1%

우리 경제는 올해 1/4분기중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3%라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지난해 특히 침체가 심했던 제조업부문에서도 7.1% 성장하여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산업별 성장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반면 건설업은 39.1%, 전기·가스·수도사업은 18.1%, 서비스업은 9% 성장하여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성장보다는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부문의 불균형 고도성장이 특징적이다.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온 광공업 주도의 성장패턴이 작년 이후 급격히 反轉되어 광공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금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 분기 실업률 3.1%

올해 1/4분기중 실업률은 3.1%를 기록하여 지난해 1/4분기의 3.3%에 비해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평균 실업률이 2.6%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실업률도 지난

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심적 노동력 계층이라 할 수 있는 25~54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2%에 불과하여 지난해 1/4분기중의 2.6%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져 總量的으로 낮은 실업률에다 失業構造도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분기중 취업자수
제조업 2.5% 감소
서비스업 6.8% 증가

지난해 4/4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금년 1/4분기 들어 그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2.5%, 절대수로는 12만 3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 등 비제조업부문에서의 취업자수는 지난해보다 그 증가폭이 금년 1/4분기중 더욱 확대되어 절대수로 7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취업자수의 산업별 분포가 크게 변하고 있는 이유는 산업구조 고도화 경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최근 投機所得 등에 의한 소득구조 歪曲에 의한 것이라 보여진다. 즉 소득구조 왜곡에 따라 소비구조가 왜곡되고 이에 따라 노동력이 제조업부문에서 서비스업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일시적 奇現象이 최근의 산업별 고용불균형으로 나타났다 하겠다.

1/4 분기중 취업자수
생산·운수직 1.7%
서비스직 9.4% 증가

1/4분기중 직종별 취업자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였고 서비스직 취업자수도 9.4% 증가하였으나 육체노동자라 할 수 있는 생산·운수직 취업자수는 1.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별 취업자 변동추이에서도 나타났듯이 생산직 중심의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직업별 취업자수 변화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日雇 18.8%
常時雇 4.3% 증가

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지난해 2/4분기 이후 그 증가추세가 뚜렷한 日雇勤勞者들이 금년 들어서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단위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 증가추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일고 증가추세를 여자근로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자근로자들이 일고 형태로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수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26만 8천명

의 일고근로자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2/3 가량이 女子日雇 중
가분이었다.

1/4 분기중

상용근로자 2.4% 감소

상용생산직 7.4% 감소

금년 1/4분기중 1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常傭勤勞者 추이를 보면 지난해의 변화 추세가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수는 分期를 거듭할수록 감소폭이 확대되어 왔는데 올해 1/4분기중에도 2.4% 감소하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산직과 여자근로자의 감소가 전체 상용근로자 감소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생산직 감소추세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와 변화 추세를 같이하고 있으나 여자상용근로자 감소는 전체 여자취업자의 대폭적인 증가추세와 전혀 상반된 현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여자취업자 증가가 주로 일용직 형태로 늘고 있으며 이들이 10인 이상 사업장보다는 10인 미만의 사업장(특히 서비스업계통의 사업장)에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이래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 기간중 전체 취업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경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제조업 상용근로자

4.9% 감소

1/4분기중 산업별 상용근로자 추이를 보면 제조업과 광업 상용근로자가 각각 4.9%, 5.9% 감소한 반면 건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상용근로자가 6%,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모별 상용근로자 추이를 보면 금년 1/4분기중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생산직 감소가 두드러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 賃金 및 勤勞時間

임금상승률

지난해 21.1%

올해 1/4분기 23%

지난해 평균 임금상승률은 名目으로 21.1%, 實質로 14.5%에 이르러 지난 3년간 임금상승 퍼레이드의 절정을 이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질임금과 흔히 대비되는 物的 勞動生産性은 상용종업원 기준으로 지난해 6.7% 증가에 그쳐 실질임금상

승률과 많은 격차를 보였다. 금년 1/4분기중의 임금동향은 지난해의 高率引上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년동기대비 名目賃金이 23%, 實質賃金이 1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금교섭이 주로 3~6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같은 높은 상승률이 올해 임금상승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올 임금교섭의 결과는 한 분기 늦은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생산직과 제조업
임금의 급상승

금년 1/4분기중 생산직 임금상승률은 28.5%, 사무직은 17.8%에 불과하였고 지난해의 평균임금상승률을 보아도 생산직 26%, 사무직 16.2%이어서 직종간 賃金隔差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향은 생산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에 힘입은 바 크겠지만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중되고 있는 생산직 구인난에 의한 임금상승 압박도 무시 못할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직의 고율임금상승은 다시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 금년 1/4분기중 제조업 임금이 평균 27.1% 상승한 것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상승률보다 4%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향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금년 임금교섭의 결과를 반영하기보다는 지난해의 임금동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규모별 임금
격차폭 확대지속

지난해와 금년 1/4분기중 규모별 임금상승률 추이를 보면 500인 미만 사업장과 500인 이상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과의 임금상승률 격차가 198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1/4분기중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상승률이 27.2%이었음에 비해 100~5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21.8% 상승에 불과하여 1987년 이래의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 추이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1/4분기중
주평균 근로시간 :
전산업 47시간
제조업 48.4시간

지난해 전산업 週當 평균근로시간이 49.2시간으로 감소되어 1974년 오일쇼크 이래 처음으로 50시간 미만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의 평균근로시간도 50.7시간에 불과하여 1988년 대비 8.6%의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어 전산업 평균 8.7%의 시간단축이 있어 전

산업 평균 47시간, 제조업 평균 48.4시간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3월 29일자로 법정근로시간이 46시간으로 단축된 효과와 더불어 잔업·휴일 특근이 줄고 있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勞使關係

● 勞動組合

1989년말 기준
노조전임자수
평균 220명당 1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專任者數는 평균 단위노조 1개 소당 1.09명 또는 조합원 220명당 1명으로 나타났다. 半專任者까지를 포함하면 평균전임자수는 약간 늘어 단위노조당 평균 1.85명, 조합원 191명당 평균 1명의 전임 또는 반전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리나라의 전임자수가 외국에 비하여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전임자수를 보면 노동조합체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예컨대 일본의 경우 조합원 500~600명당 1명의 전임이, 유럽 국가의 경우 약 1,500명당 1명의 전임이 있는 정도여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전임자수가 조직상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약간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89년말 기준
유니온숍 비율 20%

최근 團體協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임자수 이외에 유니온숍制의 도입 여부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동조합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중 유니온숍제도를 두고 있는 조합은 약 20%인 1,567개소로 나타났다. 규모별 채택률을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2% 수준에 불과하나 규모가 커질수록 채택률이 높아져 500~5,000인 미만 규모에서는 34%,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0%선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었다.

1989년중 신규조합
설립은 영세사업장
중심

지난해 신규설립된 노동조합의 수는 1,943개소로 연간 신규설립 조합수로는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 중 약 64% 가량의 조합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조직 확장이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1988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지난해 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의 전체조합 7,458개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영세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업장별 단체교섭의 효율성은 이와 반대로 갈수록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하겠다.

● 賃金交渉

상반기중 임금교섭
진도율 61.8%
임금인상 8.7%

올해 상반기중 단체교섭에 의해 타결된 평균임금인상률은 8.7%에 불과하여 지난해 상반기중의 인상률 18.7%에 비하여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상반기중에 주요사업장의 임금교섭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는 점과 전체 임금교섭 대상중 약 62% 가량의 교섭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지난해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대폭 감소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賃金指導와 노사간의 자제 분위기 그리고 낮은 인상률을 보상해 주는 각종 福祉패키지 개발과 연말성과배분제 도입 등 복합적인 임금교섭의 결과라 보여진다.

직종별 타결임금인상률을 보면 생산직 임금이 10.1%, 사무직 임금이 7.2%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직 임금인상률이 지난해와 같이 사무직보다 높다. 다만 그 격차 폭은 약간 줄었다.

규모별 타결
임금인상률 격차

금년 상반기중 규모별 타결임금인상률 격차를 보면 지난해와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타결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인상률은 7.1%에 불과하나 100~300인 규모의 중소기업 사업장 타결임금인상률은 11%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福祉

패키지를 개발하기 힘들 뿐 아니라 심한 인력난까지 겹쳐 임금 인상 이외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경향은 또한 정부의 한 자리수 임금정책이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되었다는 것에도 기인한다 하겠다.

● 勞使紛糾

1990년 1~5월중
분규건수 215건

금년 5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중의 1,003건보다 78.6%가 감소하였다. 월별 발생건수 추이를 보면 5월중 분규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KBS·現代重工 사태에 이어 全勞聯측의 메이데이 총파업 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일시적 파동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월중 분규건수가 급증하였지만 1987년과 1988년의 예를 비추어 볼 때 6월 이후 다시 急減할 전망이어서 금년에는 총분규건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우려가 된다면 하반기에 교섭예정인 사업장에서 최근의 물가동향을 감안하여 두 자리수 임금인상을 완강히 고집하거나, 既妥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후의 추가보너스 지급범위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분규건수가 예상보다 많아질 수는 있겠다. 그러나 금년 임금교섭의 패턴이 이미 형성된 상태이고 전국 주요사업장의 교섭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중 노사분규가 특별히 우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

분규발생 원인의
다양화

원인별 분규발생 현황을 보면 임금인상관련 분규가 1987년 이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들어서도 이같은 경향은 계속되고 있어 1990년 1~5월중 임금관련 분규건수 비중이 46.5%에 불과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중의 57.4%에 비하여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대신 團體協約 또는 기타 複合的인 요인에 의한 분규건수가 40% 정도까지 급증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단체교섭의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다양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빈번히 제기되는 이슈로는 전임자 및 쉼제도 관련문제 등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사항과, 해고자·구속자 문제와 징

계(인사)위원회 勞使同數 참여문제 등 인사관련사항 그리고 공장이전, 매각 또는 外注下請에 따른 고용문제와 編輯權 獨立 등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퇴직금누진제 도입여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총임금 보상여부와 종업원 지주제 등이 혼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의 분규비중 증가

1990년 1~5월중 산업별 분규발생건수를 보면 제조업의 분규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중의 56.6%에서 77.2%로 증가하여 1987년 이래 전체 분규건수 중 제조업에서의 분규비중이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보면 지난해에 비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분규비중이 줄고 대규모 사업장의 분규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보인다. 또한 분규발생 원인별로 이를 다시 분류해 보면 대형사업장에서는 임금관련 분규건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 노동조합일수록 요구사항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0년 1~5월중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관련분규는 35%에 불과하였다.

國內勞動市場動向 및 展望

▷ 주요 목차 ◁

- I. 經濟一般
- II. 雇 傭
- III. 賃 金
- IV. 勤勞時間

I. 經濟一般

● 경제성장

우리 경제는 지난 1/4분기에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의 고성장에 힘입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1/4분기의 6.2% 성장에 비해 10.3%의 높은 실질경제성장률(GNP)을 시현하였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지난 1988년의 12.4% 성장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수 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부동산경기 확산, 물가 상승, 수출부진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악화 분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시현한 것은 금리인하, 원화평가절하, 설비자금 공급 등의 경기부양책과 노사분규 및 임금상승 진정추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산업간, 지출항목별 성장이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경제전체의 균형성장과 성장잠재력 배양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분기 성장률과 설비투자를 위시한 내수증가, 수출증가세 등을 감안하여 금년의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된 8~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문별 성장

지난 1/4분기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건설경기의 활황에 힘입어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이 각각 39.1%, 18.1%의 대폭적인 신장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제조업은 7.1% 성장함으로써 전년동기의 1.8% 성장에 비해 그 증가세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전체의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지출항목별로는 총고정자본형성이 건설투자(46.9%), 설비투자(18.6%)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11.1%)에 비해 3배 가까운 32.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최종소비지출도 과소비와 서비스부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9.7%)에 비해 더욱 증가한 11.1%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내수과열로 인한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부문의 성장에 비해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9%(상품수출

〈표 1〉 주요경제지표

(단위 : 억달러, %)

	1988	1989	1990. 1/4
국내 총생산	11.5	6.1	9.6
농림어업	8.0	-0.7	-3.6
광공업	13.1	3.5	6.8
(제조업)	(13.4)	(3.7)	(7.1)
전기·가스·수도	9.8	10.1	18.1
건설업	9.5	15.4	39.1
서비스업	12.7	8.3	9.0
정부 및 민간영리서비스업	6.2	5.9	5.6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11.5	6.1	9.6
최종소비지출	9.7	9.5	11.1
총고정자본형성	13.4	16.2	32.1
(설비)	13.0	12.3	(18.6)
재화와 용역의 수출	12.5	-4.0	1.9
(상품)	(14.0)	(-5.2)	(0.1) ¹⁾
재화와 용역의 수입	12.8	16.3	17.2
(상품)	12.3	14.3	(15.2) ²⁾
국민총생산	12.4	6.7	10.3
무역수지	114.5	46.0	-14.1 ³⁾
경상수지	141.6	50.6	-55.4 ³⁾
도매물가상승률	2.3	1.1	3.3 ⁴⁾
소비자물가상승률	7.2	5.1	7.4 ⁴⁾

주 : 1) f.o.b. 기준.

2) c.i.f. 기준.

3) 1~5월 누계치.

4) 6월 평균 전년말대비.

0.1%) 증가한 데 비해서 재화와 용역의 수입은 17.2% (상품수입 15.2%) 증가함으로써 국제수지 악화는 물론 내수, 수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내실성장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구조조정 노력을 통한 제조업과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성장 도모가 요망되고 있다.

● 물 가

금년 상반기에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각각 3.3%, 7.4% 상승함으로써 지난 1981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경제의 안정기조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임금인상 및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와 농축산물 가격 및 서비스요금 상승, 통화증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정부도 하반기 경제운용 목표로 물가억제와 안정성장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 국제수지 및 환율

금년 들어 5월까지 수출은 국제수지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238억 4,060만 달러에 그친 데 비해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한 252억 5,05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무역수지 누계가 14억 99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로는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무너지면서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미환율은 5월말 현재 기간말 기준으로 전년말대비 4.6% 절하되어 완만한 절하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II. 雇 傭

1. 經濟活動人口, 就業者 및 失業 推移

● 노동력시장의 팽창 지속

총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금년 1/4분기에 17,38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의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의 연평균 증가율 3.9%에 이어 금년에도 노동력시장의 급속한 팽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금년 1/4분기에 56.8%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9%를 0.9%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2〉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경제활동인구	17,305 (2.6)	17,975 (3.9)	16,775 (3.6)	18,475 (4.1)	18,471 (3.6)	18,182 (4.2)	17,385 (3.6)
참 가 율	58.5	59.5	55.9	61.3	61.0	59.7	56.8
취 업 자	16,870 (3.2)	17,515 (3.8)	16,224 (3.5)	18,033 (3.4)	18,051 (3.7)	17,753 (4.1)	16,846 (3.8)
실 업 자	435 (-16.2)	459 (5.5)	548 (7.5)	442 (11.6)	420 (-1.6)	429 (5.4)	538 (-1.8)
실 업 륜	2.5 (-0.6%P)	2.6 (0.1%P)	3.3 (0.2%P)	2.4 (0.2%P)	2.3 (-0.1%P)	2.4 (0.1%P)	3.1 (-0.2%P)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실업률의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에서 작성.

또한 취업자수는 금년 1/4분기에 16,84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증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 증가율에 비해서는 0.3%포인트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금년 1/4분기중 취업자증가율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0.2%포인트 앞지르므로 하여 실업자는 53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8천명에 비해 1만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도 금년 1/4분기 3.1%로서 전년동기의 3.3%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금년 1/4분기의 노동력지표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살펴 보면 총노동력, 취업자, 실업률 모든 면에서 전전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경제활동인구 추이

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최근에 들어와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금년 1/4분기 8.0%가 감소하였는데¹⁾ 1989년에 들어와 3/4분기까지의 예외적인 상승세가 4/4분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금년 1/4분기에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 이는 지난해 상반기중의 예외적인 증가로 인해 약간 과대평가된 점도 있다. 그러나 이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4/4분기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진학률의 상승세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1/4분기중 감소 폭이 약간 증폭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89	1989				1990.1/4
			1/4	2/4	3/4	4/4	
15~19세	652 (-12.4)	663 (1.7)	689 (2.5)	699 (4.0)	660 (4.4)	605 (-4.4)	634 (-8.0)
20~24세	1,848 (-1.5)	1,896 (2.6)	1,823 (2.1)	1,912 (1.3)	1,928 (3.0)	1,920 (2.6)	1,934 (6.1)
25~54세	12,744 (3.5)	13,136 (3.0)	12,512 (3.5)	13,412 (3.5)	13,367 (2.5)	13,586 (2.6)	12,773 (2.1)
55세이상	2,060 (6.3)	2,280 (10.7)	1,747 (13.3)	2,453 (9.5)	2,515 (9.8)	2,404 (15.9)	2,045 (17.0)
계	17,305 (2.6)	17,975 (3.9)	16,775 (3.6)	18,475 (4.1)	18,471 (3.6)	18,182 (4.2)	17,385 (3.6)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각호에서 계산.

둘째,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1988년까지의 감소추세에서 지난해부터 증가추세로 반전되어 금년 1/4분기 6.1%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5~19세 인구의 진학률의 증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1980년대 초반의 15~19세 연령층의 인구들이 최근에 들어와 대학과 전문대 졸업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데 올해 1/4분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만이 증가, 17.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3.6%를 4배 이상 능가하는 것으로 최근 겪고 있는 인력난과 정년연장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노무직, 일반잡급직, 미숙련생산직종에서의 심한 인력난을 일단 노동시장에서 밀려났던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다시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다 하겠다. 이같은 경향의 한 징후로 이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9년중 대폭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예시할 수 있다.²⁾ 또한 정년연장추세

2) 55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남	여
1987	57.2	31.0
1988	58.9	30.9
1989	61.4	33.3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가 금년에 들어 확대되고 있는 경향도 이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취업자 추이

● 제조업취업자 감소, 서비스업·건설업취업자 증대

최근의 취업자 추이를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제조업취업자 감소와 서비스업 및 건설업취업자 증가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취업자의 산업별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3/4분기에 그 절대수가 감소한 이래 그 추세가 가속화되어 금년 1/4분기에는 4,71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감소하였다. 이같은 급격한 감소로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중도 28.0%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8%에 비해 1.8%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취업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금년 1/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가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은 최근의 건설경기 호황으로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1/4분기에 1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최근의 제조업취업자의 절대수 감소 및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취업자수 증대라는 현상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확대와 제조업의 성장 부진, 제조업에서의 고임금으로 인한 노동의 자본으로의 대체에 기인하는 일면과 노동력공급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임금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은 제조업의 취업을 기피하고 서비스업의 취업을

<표 4> 산업별 취업자수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제 조 업	4,667 (5.7)	4,841 (3.7)	4,841 (6.7)	4,869 (6.4)	4,867 (3.4)	4,797 (-1.2)	4,718 (-2.5)
서 비 스 업	7,556 (4.2)	8,022 (6.2)	7,835 (4.6)	7,983 (4.9)	8,067 (7.9)	8,202 (6.9)	8,364 (6.8)
건 설 업	1,024 (11.3)	1,140 (11.3)	969 (14.5)	1,169 (11.7)	1,187 (8.1)	1,234 (11.8)	1,150 (18.7)
제 조 업 취 업 자 비 중	27.7	27.6	29.8	27.0	27.0	27.0	28.0

주 : 1)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운수·창고, 금융·보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것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에서 계산.

선호하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의 장기지속은 제조업의 공도화현상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의 현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장차의 경제성장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보여 서비스업에서의 취업 증가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임금근로자(피고용자)의 비중 증대 지속

금년 1/4분기 취업자 추이를 임금근로자(피고용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살펴 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금년 1/4분기 임금근로자는 <표 5>에서와 같이 10,52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 증가하였으며 전체취업자에 대한 비중은 62.8%로서 지난해 1/4분기의 60.9%에 비해 약 2%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임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들 중 전근대적인 부문들이 근대적인 부문으로의 전환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고용안정률 저하 지속

임금근로자중 상시고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안정률은 최근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표 5>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및 고용안정률 추이

(단위: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임금근로자							
상시고	8,114 (5.9)	8,635 (6.4)	8,470 (6.5)	8,625 (6.4)	8,697 (7.7)	8,749 (5.1)	8,837 (4.3)
일고	1,496 (-2.1)	1,720 (14.9)	1,420 (1.5)	1,811 (13.0)	1,798 (21.5)	1,850 (23.1)	1,688 (18.8)
계	9,610 (4.6)	10,355 (7.7)	9,889 (5.8)	10,436 (7.5)	10,496 (9.9)	10,599 (7.9)	10,524 (0.8)
비임금근로자	7,260 (1.4)	7,160 (-1.4)	6,334 (0.2)	7,598 (-0.7)	7,555 (-3.7)	7,154 (-1.0)	6,232 (-1.6)
고용안정률	84.4	83.4	85.6	82.6	82.9	82.5	83.9

주: 1)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를 의미함.

2) 고용안정률은 상시고/ 임금근로자로 계산함.

3)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에서 작성.

〈표 5〉에서와 같이 금년 1/4분기 고용안정률은 83.9%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6%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고용안정률이 최근에 저하되는 것은 임금근로자중 일고의 증가율이 상시고의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일고형태의 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년 1/4분기에 18.8%가 증가하여 지난해 3/4분기 이후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상시고 증가율은 금년 1/4분기 4.3%에 불과하여 일고의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경기의 호조와 일고형태의 고용관행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고의 증가를 여자노동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라 하겠다.³⁾

●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서비스직취업자의 급속한 증대

금년 1/4분기 취업자수 추이를 직업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서비스직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판매직과 생산·운수직의 증가율은 낮다.

〈표 6〉에서와 같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취업자 추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년 1/4분기에 9.1%가 증가하여 최근의 높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첨단산업에의 투자증대, 정보·통신·지식산업 등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여자취업자의 증가율이 현저하다.⁴⁾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지난해 2/4분기까지 감소하던 추세가 3/4분기 이후 급속한 증대추세를 보여 금년 1/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의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것은 최근의 소득증대 및 과소비로 인한 서비스관련 수요증대와 과소비풍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매직과 생산·운수직의 취업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데 판매직은 금년 1/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증가하였으며, 생산·운수직은 금년 1/4분기 1.7% 증가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직종에의 취업자 증가율 둔화는 이들 직종의 수요 감소보다는 근로자들이 이들 직종에의 취업을 기피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최근의 이 직종에서의 구인난의 지속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생산직의 경우 지난해 2/4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3/4분기 이후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 하반기 이후 그 절대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금년 1/4분기 일고증가율을 성별로 살펴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남자는 12.8%, 여자는 24.8%가 증가하여 여자일고의 증가율이 남자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90. 5).

4) 금년 1/4분기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취업자의 증가는 남자가 3.0%, 여자가 21.9% 증가하여 여자취업자의 증가율이 남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90. 5).

〈표 6〉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운수직
1988	1,315(6.7)	2,032(7.7)	2,485(1.3)	1,815(1.9)	5,768(5.7)
1989	1,452(10.4)	2,180(7.3)	2,568(3.3)	1,883(3.7)	6,046(4.8)
1989. 1/4	1,381(7.2)	2,160(11.4)	2,571(3.3)	1,807(-3.0)	5,863(6.5)
2/4	1,445(9.4)	2,172(7.3)	2,571(4.1)	1,862(-1.9)	6,098(7.1)
3/4	1,487(13.4)	2,184(5.5)	2,550(3.6)	1,894(9.9)	6,108(4.7)
4/4	1,492(11.3)	2,205(5.3)	2,579(2.3)	1,968(10.9)	6,113(1.2)
1990. 1/4	1,507(9.1)	2,317(7.3)	2,586(0.6)	1,977(9.4)	5,964(1.7)

주: 1) 생산·운수직에는 단순노무자도 포함.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에서 작성.

● 불완전 취업자 감소

금년 1/4분기 취업자를 취업시간별로 살펴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매주 36시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수가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추세가 현저해지고 있으며, 1~35시간의 불완전 취업자와 일시 휴직자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어 파트타임과 임시직의 취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1/4분기에 1주일에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

〈표 7〉 취업시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1~17시간	168 (-14.7)	213 (26.8)	282 (-19.0)	151 (76.9)	223 (31.2)	197 (-8.7)	283 (0.0)
18~35시간	1,073 (-12.3)	1,150 (7.2)	1,454 (7.9)	872 (23.3)	1,151 (12.0)	1,122 (-7.3)	1,341 (-7.8)
36시간 이상	15,528 (4.7)	16,030 (3.2)	14,323 (2.2)	16,904 (2.4)	16,522 (2.9)	16,318 (5.1)	15,083 (5.3)
일시 휴직	101 (-6.5)	122 (20.7)	165 (58.6)	105 (75.9)	155 (4.5)	62 (-31.4)	139 (-15.8)

자료: 경제기획원.

체 취업자증가율 3.8%보다 훨씬 높은 5.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1989년도에 약간 둔화되었던 것이 지난 4/4분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1~35시간 근로하는 취업자수는 금년 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6.5%가 감소하여 불완전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일시 휴직자도 금년 1/4분기에 15.8% 감소하여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급속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15~19세 연령계층의 실업률 증대

금년 1/4분기 실업자수 538천명 실업률 3.1%를 연령계층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표 8>에서와 같이 5개의 연령계층에 따라 상이한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25~54세 연령계층의 실업자수는 300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4천명에 비해 24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실업률도 금년 1/4분기에 2.0%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하여 금년 1/4분기 실업자 및 실업률 감소를 이 연령계층에서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연령계층의 실업률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이 연령계층 여성인구의 취업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⁵⁾

20~24세 연령층의 실업자수는 금년 1/4분기에 14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7천명에 비해 오히려 7천명이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은 금년 1/4분기에 7.4%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금년 1/4분기에 이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표 8>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15~19세		20~24세		25~54세		55세이상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1988	54	8.3	125	6.8	245	1.9	11	0.6
1989	53	8.0	122	6.4	270	2.1	15	0.7
1989.1/4	68	9.9	137	7.5	324	2.6	18	1.0
2/4	54	7.7	124	6.5	250	1.9	13	0.5
3/4	44	6.7	112	5.8	250	1.9	14	0.6
4/4	44	7.3	114	5.9	256	1.9	15	0.6
1990.1/4	79	12.5	144	7.4	300	2.0	16	0.8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에서 작성.

5) 금년 1/4분기 이 연령계층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남자가 1.4%인데 비해 여자가 4.2% 증가하였다(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90.5).

이 6.1%에 달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시현한 데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높은 경제활동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이 6.2%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여 실업률이 저하되었다.

15~19세 연령층의 실업자는 금년 1/4분기에 7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천명에 비해 11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12.5%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9%에 비해 2.6%포인트 증가하였다. 금년 1/4분기에 이 연령계층의 실업자 및 실업률이 증가한 현상은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진학률의 증대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이 연령계층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이 연령계층을 수요하는 작업이 주로 단순노동으로서 근무조건과 임금수준이 낮고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당분간 기다리면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성격은 자발적이고 마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조정으로 인한 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주의 감소도 이 연령계층의 실업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⁶⁾

55세 이상 연령계층의 실업자는 금년 1/4 분기에 1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천명에 비해 2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실업률도 0.8%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하였다.

이 연령층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이 높아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이 연령계층은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반잡급직, 무기능 단순노무직 등에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활동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졸이상 학력자의 높은 실업률 지속

금년 1/4분기 실업자 및 실업률은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대졸이상의 높은 실업률과 중졸이하의 낮은 실업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졸학력자의 실업자는 금년 1/4분기 127천명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천명이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은 금년 1/4분기에 5.1%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실업자중에서 대졸학력자의 실업자비중은 금년 1/4분기에 23.6%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6%에 비해 1.0% 증가하여 대졸이상 학력자의 실업자수 및 전체 실업자에 대한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대졸이상 학력자의 실업문제는 이 학력자의 취업자 증가율이 금년 1/4분기 9.4%로서 다른 학력계층보다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 증대에 따른 고학력 경제활동인구

6) 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주의 감소추세는 <표 5>의 비임금근로자 추이를 참조.

〈표 9〉 학력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중졸이하							
실업자	114	114	152	92	94	118	134
실업률	(1.3)	(1.3)	(1.9)	(1.0)	(1.0)	(1.3)	(1.5)
고졸							
실업자	220	230	272	218	215	213	275
실업률	(3.6)	(3.5)	(4.2)	(3.3)	(3.2)	(3.2)	(4.1)
대졸이상							
실업자	101	116	124	131	110	98	127
실업률	(4.7)	(4.8)	(5.3)	(5.4)	(4.5)	(4.0)	(5.1)
대졸이상 실업자비중	(23.2)	(25.2)	(22.6)	(29.6)	(26.2)	(22.8)	(23.6)

자료: 경제기획원.

증가율이 높기⁷⁾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학정원 등의 조정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졸이상 학력자의 실업자수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졸이상 학력의 기술인력은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기업중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⁸⁾

이는 대졸학력의 노동력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수요와 어긋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졸이하 학력자의 실업자는 금년 1/4분기 27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은 272천명에 비해 3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4.1%로서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졸이하 학력자의 실업자는 금년 1/4분기 13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2천명에 비해 18천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도 금년 1/4분기 1.5%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하여 중졸이하 학력자의 실업자 및 실업률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이 학력의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생산직기능공 및 일용직·잡급직 등에서의 수요가 계속 증대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이 연령계층의 실업자 및 실업률의 감소추세가 지속

7) 금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를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대졸이상이 9.1%, 고졸이 43%, 중졸이하가 1.1%로서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다른 학력에 비해 현저히 높다(경제기획원).

8) 수출기업의 기술인력의 수급실태에 대한 무역협회의 최근조사에 의하면 인력확보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3.0%, 다소 어려운 편임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3.8%로 기술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업체가 전체의 66.8%를 차지하였다(한국무역협회, 『1990년도 수출산업실태조사보고』 1990. 6.).

될 것으로 보인다.

2. 常傭勤勞者 推移

● 상용근로자 감소추세 지속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동향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되었다.

〈표 10〉에서와 같이 금년 1/4분기의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는 3,2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감소하였다.

가. 성별·근로자종류별 상용근로자 추이

● 남자상용근로자 감소율 둔화

상용근로자 추이를 성별로 살펴 보면 금년 1/4분기에 남자근로자는 2,2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4%가 감소하였으며 지난 4/4분기에 비해서는 1.2%가 증가하여 남자상용근로자가 아직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상용근로자는 금년 1/4분기에 1,04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감소하였으며 지난 4/4분기에 비해서도 0.3%가 감소하여 여자상용근로자는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자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금년 1/4분기에 46.9%를 나타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9%에 비해 3.0%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러

〈표 10〉 성별 상용근로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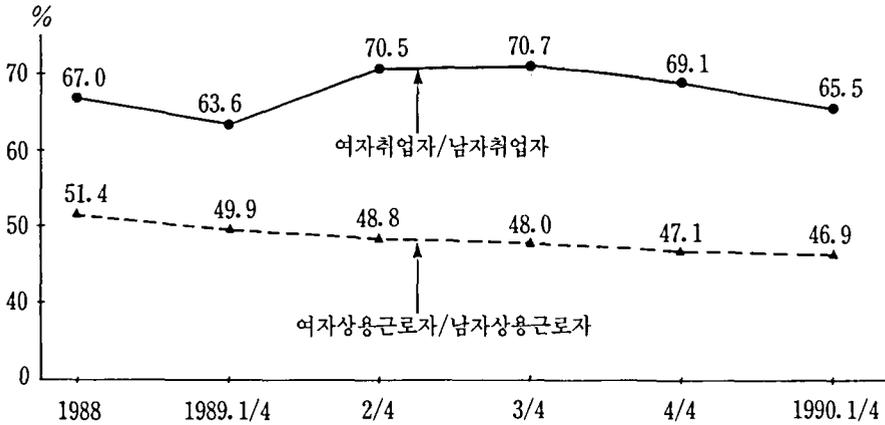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전 체	3,366 (1.1)	3,033 (-1.9)	3,343 (-1.2)	3,314 (-1.9)	3,293 (-2.0)	3,262 (-2.4)	3,262 (-2.4)
남 자	2,224 (2.1)	2,225 (0.0)	2,230 (0.5)	2,228 (-0.2)	2,225 (0.0)	2,218 (-0.3)	2,220 (-0.4)
여 자	1,142 (-0.9)	1,078 (-5.6)	1,113 (-4.4)	1,086 (-5.6)	1,068 (-6.0)	1,044 (-6.5)	1,041 (-6.5)
여자/남자	51.4	48.4	49.9	48.8	48.0	47.1	46.9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그림 1) 여자의 남자에 대한 비율



한 추세는 서비스업의 높은 성장으로 여자근로자들에게 비생산직 취업기회가 많아진 점과 여자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섬유봉제 등의 경공업부문에서의 고용팽창이 둔화되고 있는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은 여자취업자와 10인 이상 사업체의 여자상용근로자의 남자근로자에 대한 비중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여자근로자 비중이 남자상용근로자에 비해 감소하는 현상은 취업자 추이와는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여자취업자의 남자취업자에 대한 비중은 금년 1/4분기에 65.5%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5%에 비해 1.9% 증가하여 여자취업자의 증가율이 남자취업자에 비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년 1/4분기 여자취업자의 남자취업자에 대한 비율 65.5%는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여자상용근로자의 남자근로자에 대한 비중 46.9%에 비해 18.9%포인트 높다.

이러한 통계치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여자의 취업이 10인 이상 사업체보다는 10인 이하 사업체와 일용직으로 주로 취업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향이 최근 들어 더욱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인 이상 사업체가 비교적 근무조건이나 임금, 고용안정성 등이 양호하다고 볼 때 최근의 여자취업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용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하겠다. 한편 증가추세의 일용직을 주로 종전의 비경제활동인구군에 속해 있던 노동력이 일용직이라는 비교적 탄력적인 근로체제로 인하여 새롭게 충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자근로자들의 고용여건 약화라 할 수는 없겠다.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동일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는 최근의 인력난을 고려할 때 그리 흔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성장둔화와 서비스업 고용팽창이라는 최근의 경향과 서비스업에 10인 미만 사업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여자취업자들이 제조업에서 10인 미만 서비스사업체로 이동하고 있는 고용동향이 위와 같은 여자취업자의 급증추세 속의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여자상용근로자 감소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해석된다.

나. 근로자종류별 상용근로자 추이

● 생산직근로자 감소추세 심화

상용근로자 추이를 근로자종류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근로자종류별로 대조적인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무직근로자수는 견실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생산직근로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의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수는 1,532천명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하였으며 1989년 4/4분기에 비해서도 1.4%가 감소하여 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사무직근로자수는 금년 1/4분기에 1,72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1989년 4/4분기에 비해서는 1.2%가 증가하여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생산직근로자의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비율은 금년 1/4분기에 88.6%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97.9%에 비해 9.3%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직근로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우선 기준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1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의 모집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표본(sample)도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간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직 이탈 경향은 뚜렷한데 그 이유는 진학을 증대에 따른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소득 및 부의 증가로 인한 화이트칼라 직종의 선호, 최근에 상당부분 개선되긴 하였지만 사무직과의

〈표 11〉 근로자종류별 상용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전 체	3,366 (1.1)	3,033 (-1.9)	3,343 (-1.2)	3,314 (-1.9)	3,293 (-2.0)	3,262 (-2.4)	3,262 (-2.4)
생 산 직	1,710 (-1.5)	1,602 (-6.2)	1,654 (-6.4)	1,613 (-6.4)	1,588 (-6.5)	1,554 (-6.9)	1,532 (-7.4)
사 무 직	1,656 (6.8)	1,701 (2.7)	1,689 (2.8)	1,701 (2.8)	1,705 (2.6)	1,708 (2.2)	1,729 (2.4)
생산직/사무직	103.3	94.2	97.9	94.8	93.1	91.0	88.6

주: 여기서 사무직은 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근로자는 모두 사무직으로 분류되었다.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임금격차의 상존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생산직에의 취업기피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를 그 첫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생산직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도 산업구조 조정과 최근의 과소비로 인한 서비스부문의 고용확대에 따른 산업부문간 인력수요의 변화로 생산직 수요감퇴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급 측면의 애로가 더 심하여 생산직의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직근로자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영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직근로자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우리 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기업들은 생산직근로자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생산직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 및 부가급여, 근로조건 등을 향상시킬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직과의 임금격차가 감소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생산직근로자들의 노동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과 저임금 노동으로 대체하려고 할 것이다. 전자는 공장설비의 자동화투자로 나타날 것이고, 후자는 최근에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보이는, 여자근로자의 취업 증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이행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생산직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생산직근로자의 부족은 결국 제조업에의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며 기업은 이윤이 보장되는 서비스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때 이른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 산업별·제조업 업종별 상용근로자 추이

상용근로자 동향을 산업별로 살펴 보면 지난해까지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상용근로자수가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되고 있어 이 산업에서 10인 이상 사업체의 신·증설이 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업의 경우 금년 1/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가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제조업은 금년 1/4분기 4.9%가 감소하여 지난해 이후의 감소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감소 2.5%에 비해 그 감소의 정도가 훨씬 심해 1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은 금년 1/4분기 6.0%의 증가를 보여 지난해초부터 시작된 건설경기상승과 더불어 고용증대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금년 1/4분기의 건설업취업자 증가율이 18.0%임을 감안할 때 건설업 분야의 주된 인력이 상용근로자보다는 일고의 형태로 고용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금년 1/4분기 2.9%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산업의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상용근로자수는 감소하고 있어 최근의 과소비현상으로 인한 고용증대가 주로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일고형태의 고용이 팽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금융·보험업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는 금년 1/4분기 0.6%의 증가를 보여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증시침체로 증권회사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확장을 피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은행의 인력충원도 거의 끝난 것을 반영한다 하겠다.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추이를 업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 전업종에 걸쳐서 고용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의 경우 그간의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반전된 이외에는 노동집약산업의 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자본집약산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2/4분기 이후에는 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의 금년 1/4분기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 증가하여 지난해의 감소추세에서 금년에 들어와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

이는 최근의 음료시장의 확대, 가공 및 인스턴트식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낙관적 경기전망에 따라 시설투자를 확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과잉투자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업종으로서 과도한 투자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조정 분위기에 따라 지난해 2/4분기 이후

〈표 12〉 산업별 상용근로자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광업	65 (-8.5)	608 (-6.4)	62 (-8.1)	61 (-7.5)	60 (-5.7)	60 (-4.3)	59 (-5.9)
제조업	2,195 (0.7)	2,110 (-3.7)	2,160 (-2.7)	2,119 (-3.9)	2,097 (-4.1)	2,064 (-4.7)	2,054 (-4.9)
전기·가스	25 (2.5)	26 (3.8)	25 (4.6)	25 (4.2)	26 (2.2)	26 (4.2)	26 (3.9)
건설업	80 (-1.9)	83 (4.0)	81 (0.5)	83 (3.4)	84 (5.8)	85 (6.1)	86 (6.0)
도·소매	155 (4.2)	155 (0.1)	157 (3.0)	156 (1.0)	154 (-1.4)	153 (-2.0)	152 (-2.9)
운수·창고	344 (1.5)	347 (1.1)	346 (1.3)	347 (0.8)	348 (1.1)	349 (1.0)	349 (1.0)
금융·보험	235 (2.4)	246 (4.8)	241 (3.2)	246 (4.2)	249 (5.9)	249 (6.1)	257 (0.6)
사회및개인서비스	268 (3.9)	275 (2.4)	271 (2.7)	277 (2.6)	275 (2.1)	276 (2.3)	278 (2.5)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표 13〉 업종별 상용근로자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음 식 료	129 (-0.1)	126 (-2.0)	126 (-2.0)	127 (-1.5)	126 (-2.3)	125 (-2.0)	130 (3.0)
섬유·의복	597 (-2.9)	546 (-8.5)	572 (-7.7)	551 (-8.8)	539 (-8.9)	524 (-8.6)	523 (-8.6)
목재·가구	45 (4.7)	43 (-4.8)	44 (-3.9)	44 (-4.3)	43 (-4.7)	41 (-6.3)	41 (-6.1)
종이·인쇄	76 (0.8)	76 (0.2)	76 (0.3)	76 (0.7)	76 (0.5)	75 (-0.7)	75 (-1.8)
화학·석유	286 (1.6)	284 (-1.2)	288 (1.2)	281 (-2.2)	282 (-1.6)	284 (-2.2)	286 (-0.8)
비금속광물	88 (2.7)	88 (-0.1)	87 (-0.3)	88 (-0.5)	89 (0.1)	88 (0.4)	88 (1.3)
제1차 금속	57 (5.0)	57 (0.5)	58 (2.2)	57 (-0.1)	57 (0.1)	57 (-0.1)	57 (-1.0)
조립 금속	828 (3.5)	813 (-1.8)	828 (0.2)	818 (-1.3)	810 (-2.3)	797 (-3.8)	783 (-5.4)
기타제조업	88 (6.8)	77 (-13.2)	81 (-15.3)	78 (-12.6)	75 (-12.5)	73 (-12.1)	71 (-12.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금년 1/4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의 감소를 보였다.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경우 금년 1/4분기 5.4%의 감소를 보여 1988년까지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이는 특히 지난해 이후 전자·조립부문과 자동차부문이 내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급격한 둔화에 따른 투자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규모별 상용근로자 추이

상용근로자 동향을 규모별로 살펴 보면 근로자 증감률 추이는 지난해 이후 규모별·근로자종류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금년 1/4분기 10~29인의 경우 5.5% 감소한 데 비해 30~499인은 약 8%대의 감소율을 기록하였고 500인 이상은 6.9%의 감소를 보여 생산직근로자는 영세규모와 대규모에서의 감소보다는 중·소규모의 감소가 현저하다.

이러한 규모별 생산직근로자수의 양극화 현상은 전체적인 생산직근로자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표 14〉 규모별 상용근로자(생산직)

(단위: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10~29인	119 (-3.3)	116 (-2.2)	118 (-1.8)	116 (-1.9)	116 (-2.7)	114 (-2.4)	117 (-5.5)
30~99인	353 (-0.3)	325 (-7.9)	335 (-9.0)	329 (-8.0)	323 (-7.2)	315 (-7.2)	309 (-7.7)
100~299인	369 (-3.9)	341 (-7.6)	354 (-7.0)	342 (-8.2)	337 (-7.5)	330 (-7.7)	325 (-8.0)
300~499인	124 (-4.6)	113 (-8.5)	118 (-8.4)	114 (-8.9)	112 (-8.1)	109 (-8.4)	107 (-9.3)
500인 이상	746 (0.9)	707 (-5.2)	729 (-2.9)	712 (-5.1)	700 (-6.0)	686 (-6.8)	679 (-6.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표 15〉 규모별 상용근로자(사무직)

(단위: 천명,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10~29인	280 (4.1)	289 (3.3)	288 (4.6)	297 (3.0)	289 (3.0)	292 (2.6)	296 (2.6)
30~99인	481 (3.5)	292 (2.2)	488 (2.7)	493 (2.1)	493 (2.1)	494 (1.9)	501 (2.8)
100~299인	355 (3.3)	364 (2.4)	360 (2.6)	363 (2.2)	365 (2.5)	366 (2.3)	368 (2.1)
300~499인	146 (2.8)	151 (3.5)	150 (3.9)	151 (4.2)	152 (3.3)	152 (2.8)	154 (2.9)
500인 이상	394 (3.4)	405 (2.8)	403 (3.4)	408 (3.5)	406 (2.6)	404 (1.8)	409 (1.6)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하고 대기업은 그들의 양호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반면, 중·소규모업체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요의 감소까지 겹쳐 인력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10~29인의 영세사업장은 오히려 기능이 낮은 인력들을 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고용감소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직근로자의 경우는 10~499인 규모까지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반면 5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증가 둔화율이 현저한데 이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무자동화등으로 필요인원을 대체 하기가 용이하다는 점과 산업구조조정등에 따른 고부가가치생산 신규사업장일수록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경향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 1/4분기 500인 이상 규모사업장의 상용근로자는 1.6%가 증가하여 지난해 이후 증가율 둔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3. 勞動移動率 推移

가. 성별·근로자종류별 노동이동을 추이

● 신규채용률의 둔화

금년 1/4분기의 노동이동률은 <표 16>에서와 같이 신규학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결과 지난 4/4분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력의 이동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1/4분기 전체 상용근로자의 노동이동률은 7.01%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3%에 비해 0.32%포인트 감소하였다. 신규채용률 또한 금년 1/4분기 2.78%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6%에 비해 0.28%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16> 월평균 노동이동률 추이

(단위 :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전	체	7.40 (3.3)	6.24 (2.52)	7.33 (3.06)	6.37 (2.52)	5.51 (2.05)	5.75 (2.44)	7.01 (2.78)
남	자	6.50 (2.9)	5.57 (2.27)	6.39 (2.68)	5.71 (2.29)	5.14 (1.98)	5.06 (2.14)	6.16 (2.41)
여	자	8.9 (4.0)	7.61 (3.02)	9.21 (3.80)	7.74 (2.98)	6.25 (2.17)	7.18 (3.01)	8.81 (3.56)
생	산	9.8 (4.4)	7.85 (3.11)	8.97 (3.72)	8.04 (3.10)	7.03 (2.75)	7.3 (0.02)	8.64 (3.36)
사	무	4.8 (2.1)	4.71 (1.95)	5.7 (2.40)	4.78 (1.96)	4.08 (1.54)	4.3 (1.91)	5.55 (2.26)

주: 1) () 안의 수치는 신규채용률임.

2) 노동이동률은 입직률과 이직률의 합계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이러한 추세는 성별·근로자종류별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남자근로자의 경우 금년 1/4분기 이동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여자근로자는 0.40%포인트 감소하여 여자근로자의 노동이동이 더 빨리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금년 1/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사무직의 경우 0.15%포인트 감소하여 생산직근로자의 노동이동을 감소가 사무직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신규채용률에 있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같은 경향을 지니는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 감소추세가 현저하다.

나. 산업별 노동이동률 추이

● 제조업 노동이동률 감소 심화

노동이동을 산업별로 살펴 보면 <표 17>에서와 같이 생산직 중심의 제조업 노동이동률이 사무직 중심의 금융·보험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업의 노동이동률 감소가 급격하여 그 감소 폭만을 본다면 서비스산업의 노동이동률 감소 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금년 1/4분기 제조업 월평균 노동이동률은 7.89%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3%에 비해 0.54%포인트 감소하였다. 신규채용률 또한 금년 1/4분기 3.12%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9%에 비해 0.37%포인트 감소하였다.

금융·보험업의 금년 1/4분기 노동이동률은 6.10%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5%에 비해 0.05%포인트 증가하였다. 신규채용률은 2.08%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2%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신규채용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동률이 금년 1/4분기에 증가한

<표 17> 산업별 월평균 노동이동률 추이

(단위 :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제 조 업	7.4 (3.3)	7.2 (2.87)	8.43 (3.49)	7.37 (2.83)	6.34 (2.34)	6.65 (2.80)	7.89 (3.12)
금 융 · 보 험	4.3 (1.5)	4.82 (1.82)	6.05 (2.20)	4.78 (1.98)	4.30 (1.33)	4.2 (1.79)	6.10 (2.08)
서 비 스 업	3.9 (1.9)	3.74 (1.73)	5.11 (2.56)	3.78 (1.72)	3.25 (1.32)	2.89 (1.35)	5.0 (2.31)

주 : 1) () 안의 수치는 신규채용률임.

2) 노동이동률은 입직률과 이직률의 합계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것은 최근의 주가 하락에 대한 이 분야의 경기 불투명으로 인해 이직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금년 1/4분기 노동이동률은 5.0%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1%에 비해 0.11%포인트 감소하였다. 신규채용률 또한 2.31%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5%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노동이동률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와 노동자들의 이직감소에 기인한 것으로서 전자는 임금상승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데 따른 것이며, 후자는 노동조합활동의 활성화로 그 동안 이직을 통하여 표출하였던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제조업의 노동이동률 감소가 타산업에 비해 현저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이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과 제조업의 고용감소에 따른 전직기회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업규모별 노동이동률 추이

● 대규모기업의 노동이동률 감소추세 현저

〈표 18〉에서와 같이 노동이동률을 기업규모별로 살펴 보면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노동이동률 및 신규채용률이 낮으며 감소추세도 규모가 증가할수록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추세로서 대규모기업일수록 신규채용 감소가 현저하며 근무조건도 훨씬 양호해 이직자의 감소경향이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규모별 월평균 노동이동률 추이

(단위 :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10~29인	9.0 (4.1)	8.27 (3.70)	9.73 (4.30)	8.66 (3.87)	7.16 (3.13)	7.54 (3.51)	9.0 (3.83)
30~99인	9.1 (4.4)	8.06 (3.35)	8.98 (3.87)	8.3 (3.45)	7.24 (2.72)	7.73 (3.36)	8.55 (3.55)
100~299인	8.7 (4.0)	6.83 (2.72)	7.41 (3.08)	7.23 (2.71)	6.22 (2.32)	6.46 (2.76)	7.30 (2.88)
300~499인	5.8 (2.5)	4.98 (1.92)	6.07 (2.45)	4.92 (1.90)	4.62 (1.64)	4.31 (1.69)	5.86 (2.40)
500인 이상	5.0 (2.2)	4.09 (1.49)	5.51 (2.15)	3.95 (1.37)	3.38 (1.08)	3.49 (1.35)	5.21 (1.84)

주: 1) () 안의 수치는 신규채용률임.

2) 노동이동률은 입직률과 이직률의 합계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III. 賃 金

1. 非農家全産業 平均賃金 推移

● 금년 1/4분기 전산업(비농가) 임금상승률 23.0%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금년 1/4분기 비농가전산업의 명목임금은 579천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0% 상승하였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은 금년 1/4분기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6.6%라는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464천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 상승하였다.

반면 금년 1/4분기 노동생산성 증가율은(물적 노동생산성, 상용종업원 기준) 12.9%를 기록하여 지난해 1/4분기 증가율 3.7%를 크게 상회하였다.

금년 들어 타결임금인상률이 한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 데도 명목임금 상승이 20% 이상의 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인상 시점을 3~4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4분기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전체 평균임금상승률보다 약 5% 정도 낮았던

<표 19> 전산업(비농가) 임금 및 노동생산성 상승률 추이

(단위: 천원,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명 목 임 금	446 (15.5)	541 (21.1)	470 (16.2)	515 (22.5)	583 (22.3)	596 (23.0)	579 (23.0)
실 질 임 금	394 (7.8)	451 (14.5)	402 (10.1)	431 (15.8)	482 (15.6)	487 (16.2)	464 (15.4)
부가가치노동생산성 (불변가격)	12.6	9.1	6.2	10.6	8.3	10.9	-
물 적 노 동 생 산 성 (상용종업원)	12.2	6.7	3.7	8.1	7.6	7.1	12.9

주: 1) 실질임금은 1985년을 100.0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지수』,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에서 작성.

이유는 1988년 임금상승률이 1989년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금년 1/4분기중의 임금상승률은 1989년의 평균 임금상승률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지 1990년중의 임금교섭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금년 봄의 한 자리수 타겟임금인상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2/4분기 이후에는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 성별·근로자종류별 임금추이

● 성별 임금격차 축소지속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금년 1/4분기의 임금 추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남자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680천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5% 상승하였으며, 여자근로자의 경우 364천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2%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근로자에 비해 여자근로자의 높은 임금상승률이 금년에 들어와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 결과 여자/남자 임금비율이 금년 1/4분기 53.6%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4%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남자근로자에 비해 여자근로자의 높은 임금 상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추세가 늘어가는 일면,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여자의 주된 취업이 생산직 및 제조업인 까닭에 이들 직종 및 업종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데 기인하는 면이 크다.

그러나 여자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학력·경력·근속년수 등에서 남자근로자들에 비해 뒤지기 때문에 평균임금비율은 아직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 생산직·사무직간 임금격차 축소지속

금년 1/4분기 임금추이를 근로자종류별로 살펴 보면 사무직근로자에 비해 생산직근로자의 높

〈표 20〉 성별 임금추이

(단위: 천원, %)

		1988	1989	1989				1990.1/4
				1/4	2/4	3/4	4/4	
남	자	535 (14.4)	640 (19.6)	559 (14.5)	610 (21.0)	686 (20.8)	704 (21.6)	680 (21.5)
여	자	275 (17.4)	337 (22.6)	293 (18.6)	321 (25.3)	371 (23.7)	366 (23.9)	364 (24.2)
여 자 / 남 자		51.4	52.7	52.4	52.7	54.0	51.9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표 21〉 근로자종류별 임금추이

(단위: 천원, %)

	1988	1989	1989				1990.1/4
			1/4	2/4	3/4	4/4	
생 산 직	348 (21.2)	438 (26.0)	365 (19.7)	421 (28.7)	481 (27.9)	490 (27.4)	468 (28.5)
사 무 직	549 (11.0)	638 (16.2)	575 (12.3)	604 (16.8)	679 (17.0)	692 (18.2)	677 (17.8)
생 산 직 / 사 무 직	63.4	68.7	63.4	69.7	70.9	70.8	69.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작성.

은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금년 1/4분기 생산직근로자임금은 46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5천원에 비해 28.5%가 상승하였으며, 사무직근로자의 임금은 677천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은 575천원에 비해 17.8%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 생산직과 사무직 임금비율은 금년 1/4분기 69.2%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4%에 비해 5.8%포인트 증가하여 사무직에 대한 임금격차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임금의 높은 상승은 지난 198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 동안 상대적으로 사무직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생산직근로자들이 노동조합활동의 활성화로 임금인상요구가 강해진 면과 생산직 구인난이 임금인상을 촉진하는 경향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의 이러한 생산직임금의 고율상승결과 동일연령에서 부분적으로는 생산직임금과 사무직임금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생산직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사무직에 비해 길 뿐 아니라, 생애에 있어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사무직에 비해 짧기 때문에 노동강도와 생애임금 등에서 생산직근로자들이 사무직에 비해 아직 열악한 위치로 인해 생산직임금의 고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직근로의 기피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나. 산업별·업종별 임금추이

● 건설업 임금상승 급진전

금년 1/4분기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임금을 산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임금상승률이 타산업에 비해 높으며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부문의 임금 상승이 낮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 2〉 산업별 임금추이

(단위: 원, %)

	1988	1989	1989				1990.1/4
			1/4	2/4	3/4	4/4	
전 산 업	446,370 (15.5)	540,611 (21.1)	470,486 (16.2)	514,911 (22.5)	583,188 (22.3)	595,633 (23.0)	578,743 (23.0)
광 업	446,861 (16.1)	530,103 (18.6)	463,842 (7.1)	515,370 (17.5)	548,124 (20.0)	596,171 (29.5)	553,092 (19.3)
제 조 업	393,056 (19.6)	491,632 (25.0)	410,335 (19.5)	471,663 (27.8)	538,498 (26.8)	549,696 (25.9)	521,480 (27.1)
전 기 · 가 스	747,308 (5.9)	815,994 (9.2)	737,029 (-9.6)	772,258 (9.6)	862,896 (18.2)	888,862 (20.0)	989,169 (34.2)
진 설 업	503,843 (11.2)	593,717 (17.8)	528,752 (13.9)	564,394 (17.4)	608,502 (12.1)	669,752 (26.8)	658,476 (24.5)
도 · 소 매	481,112 (7.6)	558,434 (16.1)	484,835 (12.6)	545,659 (18.7)	584,176 (15.1)	621,148 (18.2)	580,428 (19.7)
운 수 창 고	460,907 (12.3)	522,270 (13.3)	478,649 (9.9)	494,997 (12.8)	560,618 (16.7)	554,278 (14.7)	544,717 (13.8)
금 용 · 보 험	661,086 (7.9)	737,546 (11.6)	705,495 (8.9)	655,593 (8.3)	801,850 (13.3)	784,717 (14.8)	807,948 (14.5)
서 비 스 업	611,715 (9.7)	715,512 (17.0)	684,351 (15.7)	691,815 (18.3)	728,650 (14.0)	756,665 (19.9)	776,504 (13.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작성.

건설업의 경우 금년 1/4분기 임금은 658천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5% 상승하였다. 건설업의 임금 상승은 지난해 1/4분기까지 전산업의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으나 지난해 2/4분기 이후 건설업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건설업의 임금 상승이 높게 이루어져 지난 4/4분기에는 26.8%의 상승률을 보여 제조업 임금상승률 25.9%를 상회하였다.

그런데 건설업의 고용형태가 주로 일용노동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10인 이하 사업체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의 건설업 임금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⁹⁾

제조업의 금년 1/4분기 임금은 52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0천원에 비해 27.1%가 상승하였다. 제조업의 높은 상승률은 198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는 제조업임금이 타산업에 비해 낮은 것과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구성이 생산직근로자 비중이

9) 건설업 취업자중 일용직 및 10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취업자의 92.6%에 달하며 지난해 상반기의 건설업 일용직 임금상승률은 37.5%이다(노동부, 「옥외근로자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1989.).

높은 것¹⁰⁾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중화학업종의 높은 임금상승률

금년 1/4분기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첨단산업관련업종과 최근 인스턴트 식품, 음료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음·식료업의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립금속업의 1/4분기 임금은 56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4% 상승하여 제조업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업종은 자동차, 전자조립업 등 최근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업종들이다.

비금속광물업의 1/4분기 임금은 60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0% 상승하였다.

〈표 23〉 제조업 업종별 임금추이

(단위 : 원, %)

	1988	1989	1989				1990.1/4
			1/4	2/4	3/4	4/4	
제 조 업 계	393,056 (19.6)	491,632 (25.0)	410,335 (19.5)	471,663 (27.8)	538,498 (26.8)	549,696 (25.9)	521,480 (27.1)
음 식 료	426,565 (14.8)	505,041 (18.4)	425,204 (14.3)	490,194 (20.3)	547,410 (18.9)	558,137 (19.7)	544,595 (28.1)
섬 유 · 의 복	298,865 (18.5)	365,483 (22.3)	322,289 (32.4)	347,287 (23.2)	407,126 (24.1)	389,053 (23.4)	396,204 (22.9)
나 무 · 목 재	379,962 (21.7)	459,885 (21.0)	397,106 (14.3)	441,785 (23.2)	512,931 (22.3)	489,946 (24.0)	495,912 (24.9)
종 이 · 인 쇄	468,931 (17.7)	572,400 (22.1)	513,515 (25.4)	527,902 (25.3)	604,376 (17.3)	644,727 (21.7)	621,170 (21.0)
화 학 · 석 유	442,811 (22.8)	538,273 (21.6)	447,009 (14.3)	522,711 (24.8)	595,154 (25.5)	590,482 (21.5)	552,569 (23.6)
비 금 속 광 물	445,940 (14.3)	560,150 (25.6)	470,706 (18.4)	535,508 (22.8)	597,499 (28.0)	635,037 (31.7)	607,038 (29.0)
1 차 금 속	579,420 (18.7)	733,190 (26.5)	626,456 (37.4)	713,934 (26.4)	730,946 (17.2)	862,835 (28.4)	740,140 (18.1)
조 립 금 속	424,260 (19.0)	540,857 (27.4)	436,009 (19.5)	519,983 (30.4)	592,594 (30.2)	618,519 (28.0)	568,822 (30.4)
기 타	298,566 (23.6)	355,349 (19.0)	309,180 (14.9)	345,042 (22.3)	404,386 (23.7)	367,280 (14.4)	385,472 (24.7)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작성.

10)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중 생산직근로자 비중은 금년 1/4분기 71.2%이다(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90. 3.).

1차금속산업은 금년 1/4분기 740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1% 상승하였다.

이 업종은 제조업중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철강산업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 1/4분기의 임금상승률이 18.1%로서 낮은 것은 지난해 1/4분기의 임금상승률이 37.4%로서 지나치게 높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업의 금년 1/4분기 임금은 54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1% 상승하였다. 음식료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높는데 이는 최근의 소득증가로 인한 인스턴트식품, 음료 등의 수요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규모별 임금 및 임금상승률 추이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지속

기업규모별 임금상승률의 차이로 인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10~29인 규모의 금년 1/4분기 임금은 513천원으로 20.1%, 30~99인 규모의 임금은 530천원으로 19.7%, 100~299인 규모의 임금은 542천원으로 21.8%, 300~499인 규모의 임금은 622천원으로 21.9%,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은 653천원으로 27.2%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하였다.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이 중·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이는 현상은 198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지불능력, 노조의 교섭력 등이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24〉 규모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원, %)

	1988	1989	1989				1990.1/4
			1/4	2/4	3/4	4/4	
10~29인	396,347 (10.1)	460,656 (16.2)	426,811 (13.8)	426,192 (15.4)	501,991 (23.8)	487,567 (17.2)	512,604 (20.1)
30~99인	407,815 (9.2)	484,610 (18.8)	442,792 (14.6)	455,458 (19.8)	521,792 (22.7)	519,287 (22.0)	530,050 (19.7)
100~299인	423,282 (14.3)	508,008 (20.0)	444,658 (13.5)	479,975 (19.5)	555,558 (28.0)	553,518 (23.4)	541,675 (21.8)
300~499인	479,431 (18.8)	584,440 (21.9)	510,228 (18.2)	566,702 (25.7)	631,115 (31.3)	641,479 (21.1)	621,895 (21.9)
500인 이상	498,924 (21.2)	621,007 (24.5)	513,137 (19.1)	602,553 (27.9)	664,123 (29.5)	708,228 (26.0)	652,889 (27.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동향조사보고서」에서 작성.

그런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에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규모기업에
서는 최근의 일반적인 인력난 속에서도 더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력난에 의한 임금
상승 압박도 금년 중에는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어 규모별 임금격차 폭은 감소할 수도 있겠
다.¹¹⁾

IV. 勤勞時間

● 근로시간단축 지속

금년에 들어와서도 근로시간의 단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점차 가
속되고 있다.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금년 1/4분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표 25>
에서와 같이 204.0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시간 감소하였다. 이 감소 시간을 정
상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정상근로시간이 금년 1/4분기 177.5시간으로 7.0
시간, 초과근로시간이 금년 1/4분기 26.5시간으로 1.7시간씩 감소하였다.

<표 25>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비농가전산업)

(단위: 시간,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총근로시간	221.8 (-3.6)	213.7 (-8.1)	212.7 (-4.1)	219.4 (-2.8)	209.6 (-12.0)	213.1 (-13.1)	204.0 (-8.7)
정 상	190.6 (-0.9)	185.2 (-5.4)	184.5 (-1.2)	190.6 (-0.1)	180.9 (-9.6)	184.8 (-10.7)	177.5 (-7.0)
초 과	31.2 (-2.7)	28.5 (-2.7)	28.2 (-3.2)	28.8 (-2.7)	28.7 (-2.4)	28.2 (-2.3)	26.5 (-1.7)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주당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7÷30.4로 계산하면 된다.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1) 금년 상반기 타결임금인상률은 100~299인 11.0%, 300~499인 10.3%, 500~999인 9.4%, 1,000인 이상 7.1%
로 금년에 들어와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인상률이 높아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축소될 전망이다(노동부).

가. 성별, 근로자종류별 근로시간 추이

근로시간 추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지난해까지 여자근로시간의 단축이 현저하였으나 금년에 들어와 남자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이 더 크다.

금년 1/4분기 남자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표 26>에서와 같이 203.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3.3시간에 비해 9.4시간 감소하였다. 반면 여자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금년 1/4분기 204.2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1.5시간에 비해 7.3시간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1/4분기에는 남자근로시간이 여자근로시간에 비해 길었으나 금년 1/4분기에는 여자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표 26> 성별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전 체	221.8 (-3.6)	213.7 (-8.1)	212.7 (-4.4)	219.4 (-2.8)	209.6 (-12.0)	213.1 (-13.1)	204.0 (-8.7)
남 자	221.5 (-2.2)	213.7 (-7.8)	213.3 (-4.2)	218.8 (-2.2)	209.7 (-12.0)	212.9 (-12.7)	203.9 (-9.4)
여 자	222.3 (-6.1)	213.6 (-8.7)	211.5 (-4.9)	220.5 (-4.0)	209.2 (-12.1)	213.3 (-14.0)	204.2 (-7.3)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주당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7÷30.4로 계산하면 된다.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표 27> 근로자 종류별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전 체	221.8 (-3.6)	213.7 (-8.1)	212.7 (-4.4)	219.4 (-2.8)	209.6 (-12.0)	213.1 (-13.1)	204.0 (-8.7)
생 산 직	232.3 (-6.4)	224.0 (-8.3)	222.0 (-5.0)	230.1 (-3.5)	219.1 (-11.8)	224.8 (-13.0)	214.2 (-7.8)
사 무 직	210.9 (-0.1)	203.9 (-7.0)	203.5 (-3.0)	209.2 (-1.1)	200.7 (-11.4)	202.3 (-12.3)	194.9 (-8.6)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주당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7÷30.4로 계산함.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사무직 근로시간단축 현저

근로시간 추이를 근로자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지금까지의 근로시간단축을 생산직근로자들이 주도하였으나 점차 사무직근로자들의 근로시간단축이 현저하게 나타나 금년 1/4분기에는 사무직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이 생산직근로자들의 근로시간단축을 상회하였다.

금년 1/4분기 생산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14.2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2.0시간에 비해 7.8시간 감소하였으며, 사무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94.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3.5시간에 비해 8.6시간이 감소하였다.

나. 산업별 업종별 월평균근로시간 추이

● 건설업 근로시간단축 현저

금년 1/4분기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을 산업별로 살펴 보면 건설업

〈표 28〉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

	1988	1989	1989				1990.1/4
			1/4	2/4	3/4	4/4	
전 산 업	221.8 (-3.6)	213.7 (-8.1)	212.7 (-4.4)	219.4 (-2.8)	209.6 (-12.0)	213.1 (-13.1)	204.0 (-8.7)
광 업	171.2 (0.6)	164.6 (-6.6)	167.1 (-7.0)	170.4 (1.8)	160.6 (-8.9)	160.3 (-12.3)	150.7 (-16.4)
제 조 업	228.6 (-6.0)	220.0 (-8.6)	218.4 (-4.7)	226.4 (-3.6)	214.8 (-12.7)	220.3 (-13.6)	210.0 (-8.4)
전기·가스	221.2 (-4.0)	209.2 (-12.0)	207.8 (-10.3)	212.0 (-8.5)	201.7 (-19.2)	215.0 (-10.4)	198.8 (-9.0)
건 설	208.0 (-0.9)	202.3 (-5.7)	199.8 (-4.0)	208.3 (-1.3)	200.9 (-9.8)	200.4 (-7.5)	188.4 (-11.4)
도·소매	215.2 (0.4)	208.3 (-6.9)	207.3 (-4.1)	211.9 (-2.6)	206.3 (-9.4)	207.6 (-11.7)	200.5 (-6.8)
운수·창고	224.2 (-0.9)	218.4 (-5.8)	218.3 (-3.4)	221.1 (-1.7)	217.0 (-8.9)	216.2 (-10.1)	208.6 (-9.7)
금융·보험	199.5 (2.6)	195.4 (-7.0)	192.7 (-2.5)	198.1 (0.7)	191.8 (-9.8)	190.2 (-13.6)	185.4 (-7.3)
서비스업	202.4 (2.2)	195.4 (-7.0)	195.3 (-3.1)	200.1 (-1.0)	192.3 (-12.3)	193.9 (-11.3)	189.2 (-6.1)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7÷30.4로 계산함.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과 광업·운수·창고업의 근로시간단축이 현저한 반면 제조업의 근로시간단축은 전체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제조업의 금년 1/4분기 월평균근로시간은 210.0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8.4시간에 비해 8.4시간 감소하여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단축 8.7시간을 하회하였다.

산업합리화과정을 겪고 있는 광업의 경우 금년 1/4분기 150.7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7.1시간에 비해 16.4시간이 감소하여 근로시간단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건설업의 금년 1/4분기 근로시간은 188.4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9.8시간에 비해 11.4시간이 감소하였는데 최근의 건설업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단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29〉 제조업 업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전 체 평 균	221.8 (-5.2)	220.0 (-8.6)	218.4 (-4.7)	226.4 (-3.6)	214.8 (-12.7)	220.3 (-13.6)	210.0 (-8.4)
음 식 료	223.4 (5.2)	218.3 (-5.1)	216.5 (-1.3)	224.8 (0.7)	215.0 (-9.4)	216.8 (-10.6)	205.9 (-10.6)
섬유·의복	231.8 (-15.2)	225.1 (-6.7)	221.1 (-0.9)	233.2 (-2.7)	220.6 (-8.9)	225.4 (-11.4)	215.1 (-6.0)
나무·목재	232.9 (-14.6)	229.5 (-3.4)	225.8 (-2.6)	238.2 (0.7)	222.7 (-5.5)	231.4 (-6.2)	217.9 (-7.9)
종이·인쇄	227.0 (-0.3)	222.3 (-4.7)	217.8 (-4.7)	227.4 (-0.1)	220.4 (-7.6)	223.5 (-6.4)	214.1 (-3.7)
화학·석유	231.6 (0.2)	221.6 (-10.0)	218.6 (-5.5)	230.6 (-3.9)	214.9 (-13.1)	222.5 (-17.2)	212.3 (-6.3)
비금속광물	224.9 (-18.2)	222.9 (-2.0)	216.2 (-6.5)	230.9 (-1.0)	220.8 (-4.1)	223.6 (3.6)	214.8 (-1.4)
제1차금속	234.3 (-7.8)	224.6 (-9.7)	223.5 (-7.0)	228.8 (-3.8)	222.3 (-14.4)	223.8 (-13.6)	217.3 (-6.2)
조립금속	225.9 (-6.0)	215.2 (-10.7)	216.8 (-4.5)	219.5 (-4.8)	209.1 (-16.6)	215.5 (-16.7)	204.7 (-12.1)
기 타	228.9 (-1.9)	216.1 (-12.8)	213.9 (-9.3)	223.5 (-6.8)	209.6 (-18.9)	217.4 (-16.8)	208.4 (-5.5)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7÷30.4로 계산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조립금속업의 근로시간단축 현저

금년 1/4분기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시간을 살펴 보면 조립금속업과 음·식료업의 근로시간단축이 현저하고 비금속광물, 종이·인쇄업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이 적다.

조립금속업의 금년 1/4분기 근로시간은 204.7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6.8시간에 비해 12.1시간 단축되었으며, 음·식료업의 경우 금년 1/4분기 205.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6.5시간에 비해 10.6시간이 단축되었다.

반면 비금속광물업은 금년 1/4분기 1.4시간, 종이·인쇄업은 3.7시간이 단축되어 제조업 중에서 가장 짧은 근로시간단축을 시현하였다.

다. 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금년 1/4분기 근로시간 추이를 규모별로 살펴 보면 대기업의 근로시간단축이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종업원 5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금년 1/4분기 205.3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시간 감소하였으며 300~499인 규모는 7.7시간, 100~299인 규모는 8.6시간, 30~99인 규모는 8.5시간, 10~29인 규모 8.0시간이 감소하여 300~499인 규모를 예외로 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의 단축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규모가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의 단축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기업일수록 임금상승이 높아 초과근무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대규모기업일수록 금년 10월로 예정된 주 44시간제를 앞당겨 실시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0〉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비농가전산업)

(단위 : 시간, %)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10~29인	210.8 (-2.0)	205.1 (-5.7)	203.1 (-1.9)	211.0 (-0.8)	202.5 (-9.3)	203.8 (-10.9)	195.1 (-8.0)
30~99인	220.6 (-2.4)	213.0 (-7.6)	211.4 (-4.5)	219.3 (-2.3)	208.8 (-12.2)	212.2 (-11.7)	202.9 (-8.5)
100~299인	224.7 (-5.3)	216.6 (-8.1)	215.5 (-4.0)	223.3 (-3.0)	212.9 (-10.5)	214.7 (-14.9)	206.9 (-8.6)
300~499인	223.9 (-4.9)	216.9 (-7.0)	215.6 (-4.6)	222.9 (0.9)	212.3 (-11.7)	216.5 (-11.2)	207.9 (-7.7)
500인 이상	224.0 (-3.6)	214.7 (-9.3)	214.5 (-5.4)	219.2 (-4.0)	209.9 (-13.8)	215.3 (-14.0)	205.3 (-9.2)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7÷30.4로 계산함.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國內勞使關係動向 및 展望

▷ 주요 목차 ◁

- I. 勞動組合
- II. 賃金交渉
- III. 勞使紛糾

I. 勞動組合

1. 勞動組合의 組織現況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노동부가 보고받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노동조합에 관한 자료 중 노총과 산별연맹,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조합, 각 항목 해당사항이 불분명한 조합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한 노동조합의 통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가. 산업별 조직현황

A. 산업별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비율

1989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산업별 조직현황을 살펴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단위노조수와 조합원수에서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단위노조수의 경우는 제조업(40.9%), 운수·창고·통신업(28.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1.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별 조합원수의 비율도 단위노조수의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B. 산업별 조직률

한편, 산업별 피용자수(상용고용원+임시 및 일일고용원)를 이용한 산업별 조직률을 추정하여 보면 1989년말 현재 전기·가스·수도업이 70.9%로 가장 높고, 운수·창고·통신업

〈표 1〉 산업별·제조업증별 노동조합 조직률

(단위: 개소, 명, %)

산업 및 업종 (1)	조합원수(비율) (2)	노조수(비율) (3)	조직률 (4)	사업체조직 (5)
농·림·수산업	32,549(1.8)	41(0.6)	-	-
광업	64,539(3.5)	205(2.8)	67.5	7.4
제조업	880,487(47.5)	2,979(40.9)	25.0	1.2
31	50,492(2.7)	115(1.6)	18.7	0.3
32	149,494(8.1)	479(6.6)	15.5	0.7
33	23,813(1.3)	59(0.8)	25.6	0.4
34	36,987(2.0)	260(3.6)	20.9	1.5
35	136,031(7.3)	406(5.6)	35.9	3.5
36	30,989(1.7)	145(2.0)	22.7	2.0
37	57,037(3.1)	120(1.6)	57.9	4.7
38	262,973(14.2)	891(12.2)	20.7	1.8
39	132,671(7.2)	504(6.9)	74.2	1.9
전기·가스·수도업	32,810(1.8)	53(0.7)	70.9	4.4
건설업	28,947(1.6)	101(1.4)	5.0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4,543(1.9)	255(3.5)	2.8	0.0
운수·창고·통신업	365,427(19.7)	2,042(28.0)	69.2	6.5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25,751(12.2)	864(11.9)	35.1	0.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68,894(9.1)	621(8.5)	15.6	0.1
분류 불능 산업	20,550(1.1)	121(1.7)	-	-
소 계	1,854,497(100)	7,282(100)		
산업미상	44,690	216	-	-
전 체	1,899,187(2)	7,498(3)	24.6	0.4

주: 1) (1)은 경제기획원, 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제조업증 분류는 각 해당번호 기업.

(2), (3) 1989년말 현재 단위노조수는 7,883개소, 조합원수는 1,932천명이나 분석이 불가능한 조합이 있어 수치가 차이가 있음.

(4), (5)는 총사업체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 1981과 1986에서 각 산업의 종업원수와 사업체수의 연평균증가율을 구하여 1989년으로 연장시킨 종업원수와 사업체수를 각각 (2)와 (3)을 나누어 구한 수치임. 이같은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1989년말 현재에 산업별 종업원수와 사업체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4)와 (5)의 조직률은 정확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음. 이 표는 산업별·업종별로 개략적인 조직률의 분포를 보기 위하여 작성된 통계표임을 밝혀 둠.

(5)는 조직사업체수/총사업체수×100으로서 전체사업장 중 노조가 결성된 비율을 말함.

2) 농림수산업의 조직률은 통계상의 불일치로 계산이 불가능함.

69.2%, 광업 67.5%,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35.1%, 제조업 25.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6%, 건설업 5.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업종별 조직률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해당업종의 고용구조와 규모별 분포도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예컨대 평균조직률 24.6%에 훨씬 못미치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건설업,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특성을 살펴 보면, 건설업의 경우처럼 조직화가 힘든 일용직, 임시직 형태의 고용이 유난히 많거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처럼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유난히 많은 특징이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체 조직률이 무시할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조합설립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기업별 조합체제에서 영세사업장 중심의 산업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힘들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최저임금제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서비스업·도소매업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전체 조합수의 약 50%, 전체 단위노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업종별 조직률은 기타제조업(39) 74.2%, 제1차 금속산업(37) 57.9%,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35) 35.9%,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 포함(33) 25.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36) 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제조업 업종별 조직률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비교적 많은 경공업분야에서보다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중화학분야에서 조직화가 보다 활발했던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나. 종업원 규모별 조직현황²⁾

A. 종업원 규모별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비율

종업원 규모별 조합원수의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의 3/4(76.2%)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노조수의 비율은 종업원 100~299인 사업장이 33.9%, 50~99인 사업장이 24.4%, 10~49인이 22.2%, 300인 이상이 19.2%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B. 종업원 규모별 조직률

규모별 조직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규모별 피용자에 대한 조합원수의 비율이 높아져 종업원 300인 이상 규모별 사업체의 경우 조직률이 60%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규모별 총사업체에 대한 노동조합조직 사업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업체조직률의 경우도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1) 기타제조업의 조직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조업의 업종분류를 노동조합에서 보고 받은 데로 분류를 하였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측에서 볼 때 업종분류가 어려운 것은 모두 기타제조업으로 기입한 결과이므로 실제 기타제조업의 조직률은 이보다는 낮으며 타제조업업종의 조직률은 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조합원규모별 단위노조비율은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2권 제4호, 1989, 12, p. 41 참조.

〈표 2〉 종업원 규모별 노동조합조직률

(단위: 개소, 명, %)

	조합원수 (1)	노조수 (2)	조직률 (3)	사업체조직 (4)
9인 이하	119(0.0)	22(0.3)	0.0	0.0
10~49인	33,324(1.9)	1,633(22.2)	1.7	1.5
50~99인	84,731(4.9)	1,794(24.4)	9.5	13.6
100~299인	292,878(17.0)	2,495(33.9)	26.3	36.5
300인 이상	1,314,229(76.2)	1,409(19.2)	60.0	55.4
소 계	1,725,281(100)	7,353(100)		
파악 불능	173,906	145	-	-
합 계	1,899,187	7,498	24.6	0.4

주: <표 1>의 주를 참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1989년말 시점에 있어 우리나라 300인 이상 대기업을의 경우 55.4%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한편 종업원 10인 미만 규모의 조직률과 사업체조직률은 모두 무시할 만큼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0인 미만 사업체수와 그에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타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데 기인하며, 이에 따라 전사업체조직률도 0.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專任者數

가.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말 현재 분석 가능한 7,414개 조합중 5,287개소(71.3%)에 전임자 또는 반전임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임자만이 있는 조합은 4,376개소로 전체의 59.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표 5>에서 보듯이 단위노조당 평균 1명(1.09명)이 있으며, 반전임자까지 포함하면 단위노조당 1.41명의 전임 또는 반전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전임자가 있는 조합의 경우만 살펴 보면 단위노조당 평균 1.85명의 전임자가 있으며, 반전임자까지 포함하면 단위노조당 1.97명의 전임 또는 반전임자가 있다.

3) 이 수치는 전산업의 전수조사의 결과로 이 책의 앞 호인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3권 제1호, 1990. 3. p. 46의 제조업 표본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표 3〉 조합원 규모별 전임자 유무

(단위: 개, %)

	있 음	없 음	계
49인 이하	821(28.1)	2,098(71.9)	2,919(100.0)
50~99인	1,038(63.1)	608(36.9)	1,646(100.0)
100~299인	1,570(84.8)	281(15.2)	1,851(100.0)
300~499인	380(94.3)	23(5.7)	403(100.0)
500~999인	296(95.2)	15(4.8)	311(100.0)
1,000~4,999인	236(96.3)	9(3.7)	245(100.0)
5,000인 이상	35(89.7)	4(10.3)	39(100.0)
전 체	4,376(59.0)	3,038(41.0)	7,414(100.0)

주: ()안은 구성비임.

〈표 4〉 조합원 규모별 (반)전임자 유무

(단위: 개, %)

	전임자 또는 반전임자 있음	전임자 또는 반전임자 없음	계
49인 이하	1,339(45.9)	1,580(54.1)	2,919(100.0)
50~99인	1,314(79.8)	332(20.2)	1,646(100.0)
100~299인	1,678(90.7)	173(10.3)	1,851(100.0)
300~499인	383(89.1)	20(5.0)	403(100.0)
500~999인	298(95.8)	13(4.2)	311(100.0)
1,000~4,999인	238(97.1)	7(2.9)	245(100.0)
5,000인 이상	37(94.9)	2(5.1)	39(100.0)
전 체	5,287(71.3)	2,127(28.7)	7,414(100.0)

주: ()안은 구성비임.

〈표 6〉에서 보듯이 전임자당 평균조합원수는 전체조합의 경우 조합원 220명당 전임자 1명이 있으며, 전임자가 있는 조합의 경우만 보면 조합원 191명당 전임자 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전임자 또는 반전임자가 있는 경우로 계산하여 보면 전체조합은 조합원 171명당 전임자 또는 반전임자가 1명, 전임자 또는 반전임자가 있는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158명당 전임자 또는 반전임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조합원 규모별 조합당 (반)전임자수

(단위 : 명)

	전 체 조 합			(반)전임자가 있는 조합의 경우		
	전임자	반전임자	전임+반전임자	전임자	반전임자	전임+반전임자
49인 이하	0.31	0.26	0.57	1.11	1.30	1.24
50~99인	0.76	0.30	1.06	1.21	1.35	1.33
100~299인	1.23	0.23	1.46	1.45	1.60	1.61
300~499인	2.04	0.28	2.33	2.17	2.05	2.45
500~999인	2.80	0.44	3.27	2.94	3.02	3.42
1,000~4,999인	4.65	0.66	5.33	4.83	3.98	5.49
5,000인 이상	21.67	4.47	26.82	24.14	18.27	28.27
전 체	1.09	0.31	1.41	1.85	1.68	1.97

〈표 6〉 조합원 규모별 (반)전임자당 조합원수

(단위 : 명)

	전 체 조 합			(반)전임자가 있는 조합의 경우		
	전임자	반전임자	전임+반전임자	전임자	반전임자	전임+반전임자
49인 이하	79	96	43	26	21	23
50~99인	93	236	66	60	51	53
100~299인	136	726	115	117	105	105
300~499인	187	1,381	164	176	182	155
500~999인	245	1,549	209	234	235	201
1,000~4,999인	397	2,816	346	383	465	339
5,000인 이상	553	2,687	447	488	718	419
전 체	220	824	171	192	158	158

나. 외국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수를 외국과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구의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체계를 가지고 있어 노조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의 지급체계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노조간부 1인에 대한 평균조합원수의 비교는 매우 힘든 문제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는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체계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노조간부수의 비교가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미국등 서구의 경우는 노조 형태가

산별 형태이므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겠다.⁴⁾

먼저 미국의 경우는 각 산업별조합(industrial unions)의 경우 조합원 800~1,000명당 노조 직원(full time union officer) 1명이 존재하나, 직종별조합(craft unions)들은 노조직원 1인당 조합원수가 이보다 적다. 이를 평균하여 보면 조합원 300명당 노조직원 1명이 존재하고 있다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는 조합원 300명당 1명의 노조전임(專從役員: full time union officer)이 있으며 전임이 없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경우는 평균 500~600명당 1명의 노조전임이 있다.

〈표 7〉 각국의 조합간부 1인당 조합원수

	조합간부 1인당 조합원수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조합의 경우 조합원 220명 ·전임자가 있는 조합의 경우 191명 ·반전임자까지 포함하면 조합원 171명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은 조합원 300명 ·노조전임이 없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우 조합원 500~600명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별은 800~1,000명 ·직종별 조합 포함의 경우 300명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0~2,000명(1962년) ·775~900명(1962년)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의 금속, 철도, 섬유, 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명(1976년)

주: 전임자수에 대한 국제비교는 두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별 평균노조간부수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산별노조와 사업장별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의 2원적 조직으로 되어 있는 유럽제도와 기업별노조라는 1원적 조직의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자료: 白井泰四郎·花見忠·神代和欣 著, 「労働組合讀本」 第2版, 東洋經濟新報社, 1986. pp149~151에서 작성.
 한국은 〈표 6〉에서 작성.

4) 일본 노조전임의 정의, 보수체계 등 자세한 내용은 박덕재·박기성, 「한국의 노동조합(II)-단위노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990년 7월(발간 예정)을 참조 바람.

3. 유니온숍⁵⁾

1989년말 현재 분석 가능한 7,771개 노동조합중 유니온숍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은 1,567개소로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유니온숍의 비율을 조합원 규모별로 보면 <표 8>에서처럼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비율이 높아져 조합원이 5,000인 이상인 곳에서는 40%가 유니온숍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철도, 전력, 담배인삼, 체신노조는 모두 조합원 규모가 5,000인 이상인데 유니온숍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의 종업원에 대한 조합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가입률도 조합원 규모 500~990인의 예외는 있으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비율이 높아져, 전규모의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의 10명 중 7(0.6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표 8> 조합원 규모별 유니온숍

(단위 : 개, %)

	유니온숍	가입률	비유니온숍	계
49인 이하	302(10.3)	41.6	2,631(89.7)	2,933(100.0)
50~99인	397(24.0)	61.0	1,257(76.0)	1,654(100.0)
100~299인	520(27.9)	68.4	1,344(72.1)	1,864(100.0)
300~499인	126(30.4)	69.3	289(69.6)	415(100.0)
500~999인	111(33.3)	66.8	222(66.7)	333(100.0)
1,000~4,999인	89(35.0)	70.9	165(65.0)	254(100.0)
5,000인 이상	18(40.0)	80.4	27(60.0)	45(100.0)
조합원규모미상	4(1.5)	-	269(98.5)	273(100.0)
전 체	1,567(20.2)	69.1	6,204(79.8)	7,771(100.0)

주 : () 안은 구성비임.

5)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금지조항) 제2항(1987년 11월 28일 개정)을 보면 다음의 경우 유니온숍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 필자주).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4. 組合設立年度에 대한 規模別 勞動組合 分布

1989년말 현재 분석 가능한 7,458개 노동조합의 설립년도별 분포를 살펴 보면, <표 9>에서와 같이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된 곳은 전체의 11.1%, 1980~86년에는 19.8%, 1987년 17.4%, 1988년 25.6%, 1989년 26.1%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절반 이상(51.7%)이 1988년 이후에 설립된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9>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1,0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조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1960년대에는 300~999인 규모 기업의 조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19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는 100~299인 규모 기업의 조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987년 이후는 100인 미만의 소기업에 설립된 조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최근에 올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에 노동조합이 많이 설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조합설립년도에 대한 종업원 규모 분포

	1947~59	1960~69	1970~79	1980~86	1987	1988	1989	합 계
99인 이하	4	16	133	590	534	1,007	1,239	3,523
100~299인	5	59	217	661	437	593	543	2,515
300~999인	4	65	154	168	237	248	132	1,007
1000인 이상	5	60	98	61	93	66	29	413
합 계 (비율)	18 (0.3)	200 (2.7)	602 (8.1)	1,480 (19.8)	1,301 (17.4)	1,914 (25.6)	1,943 (26.1)	7,458 (100)
99인 이하	22.2	8.0	22.1	39.9	41.0	52.6	63.8	47.2
100~299인	27.8	29.5	36.0	44.7	33.6	31.0	27.9	33.7
300~999인	22.2	32.5	25.6	11.4	18.2	13.0	6.8	13.5
1000인 이상	27.8	30.0	16.3	4.1	7.1	3.4	1.5	5.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I. 賃金交渉

1. 賃金交渉妥結 進度率

한국노총의 17.3~20.5%, 재야노동단체인 전노협의 23.3%의 임금인상요구율과 경단협의 7.0%의 임금인상제시율로 출발했던 1990년의 임금교섭은 정부의 한 자리수 임금정책과 주택가 양등 및 물가고 속에서 근로자의 실질생활향상을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6월말 현재 진도율이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61.7%에 이르고 있다.

2. 妥結賃金引上率

1990년 6월말 현재 평균 타결임금인상률은 전년동기보다 10%포인트 낮은 8.7%에 머물고 있다. 1987년 이후 두 자리수에 있던 타결임금인상률은 1990년 들어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표 10〉 월별 임금교섭 타결현황(매월말 누계치)

(단위: 개소, %)

	대상(A)	계획(B)	타결(C)	B/A	진도율	
					C/A	C/B
1990.3	6,780	4,031	372	59.5	5.7	8.7
1989.3	6,801	3,828	323	56.3	4.7	8.4
1990.4	6,780	4,784	1,042	70.6	15.4	21.8
1989.4	6,801	4,687	1,067	68.9	15.7	22.8
1990.5	6,780	5,151	2,915	76.0	43.0	56.6
1989.5	6,801	5,115	2,884	75.2	42.4	56.4
1990.6	6,780	5,657	4,182	83.4	61.7	73.9
1989.6	6,801	5,702	4,203	83.8	61.8	73.7

자료: 노동부 자료에서 작성.

〈표 11〉 사무직과 생산직의 타결현황

(단위 : %)

	평균타결임금인상률	사 무 직	생 산 직
1990.3	7.9	6.3	10.8
1989.3	15.8	13.3	17.6
1990.4	8.2	7.4	8.8
1989.4	16.3	14.4	17.8
1990.5	8.8	7.3	10.2
1989.5	17.8	15.7	19.5
1990.6	8.7	7.2	10.1
1989.6	18.7	16.7	20.2

자료 : 노동부 자료에서 작성.

1990년에는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임금인상이 있었다는 지적과 명목 임금의 상승만으로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자각으로 임금상승률 자체보다는 주거문제의 해결 등 근로자 복지에 중심이 두어지는 임금교섭이 행해지고 있고, 실제의 임금협약에도 주거문제에 관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1990년 들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서 나타나는 노동조합측의 주택관련 요구사항은 주택수당의 지급, 주택자금융자, 사원주택건설, 사원주택조합건설, 주택기금조성, 주택부지확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자금융자, 주택수당의 지급, 주택기금의 조성, 사원주택의 건설 등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 12〉에서와 같이 타결임금인상률과 실제 총명목임금상승률과의 격차가 1988년에는 2.0%포인트, 1989년에는 3.7%포인트였으나 올해는 타결임금인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비용의 보조와 채수당의 신설과 인상 그리고 시장적 요인에 의한 임금압박 등을 고려하면 타결 임금인상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의 격차는 전년보다도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표 12〉 타결임금인상률과 명목임금상승률

	타결임금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
1988	13.5%	15.5%
1989	17.4%	21.1%

자료 : 「분기별노동동향분석」 각호.

3. 企業規模別 妥結現況

1990년 5월말 현재 기업규모별 타결임금인상률은 전년동기와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년동기에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타결임금인상률이 높았으나, 올 들어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낮은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기업일수록 주거비 보조 또는 근로자주택 건설 등 다양한 근로자 복지증진 방안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지불능력차뿐 아니라 임대주택 건축 등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임금인상 이외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실질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동안 지속되어온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가중되는 인력난을 임금인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중소기업의 타결임금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기업의 노무비증가율이 타결임금인상률 8.7%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4. 産業別・製造業 業種別 妥結賃金引上率

산업별 타결임금인상률을 보면 산업별로 별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없고 작년의 절반수준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전년도에 타결임금인상률이 낮았던 광업의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난해 인상률이 비교적 낮았다는 점과 광업에서 인력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도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고임산업으로 지목되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과 금융·보험업에서의 인상률은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기업규모별 타결현황

(단위 : %)

	타 결 률		인 상 률	
	1989.6	1990.6	1989.6	1990.6
100~299인	59.7	61.3	17.6	11.0
300~499인	61.9	64.0	18.2	10.3
500~999인	67.5	58.1	18.8	9.4
1,000인 이상	78.1	66.7	19.3	7.1

자료 : 노동부 자료에서 작성.

〈표 14〉 산업별 타결현황

(단위 : %)

	1989.1 ~6		1990.1~ 6	
	인 상 률	진 도 율	인 상 률	진 도 율
광 업	15.6	37.0	9.2	25.6
제 조 업	19.3	76.3	9.4	70.2
전 기 · 가 스 및 수 도 업	15.3	19.1	6.8	26.3
건 설 업	17.7	58.4	7.5	46.7
도 · 소 매 및 음 식 · 숙 박 업	17.4	54.6	8.5	47.3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14.7	23.1	6.8	47.1
금 융 · 보 험 ·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업	20.3	47.3	6.2	50.7
사 회 및 개 인 서 비 스 업	16.7	52.9	8.2	56.2
기 타	20.2	4.0	8.0	12.0

자료 : 노동부 자료에서 작성.

제조업 업종별 인상률을 보면 중소기업이 많은 경공업분야의 인상률이 중화학분야의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편이어서 규모별 타결임금인상률 격차상의 특징이 업종별 인상률 격차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제조업 업종별 타결임금인상률(1990년 6월말 현재)

(단위 : %)

	진 도 율	인 상 률
음 식 료 및 담 배 제 조 업	68.5	8.6
섬 유 의 복 및 가 죽 산 업 제 조 업	77.5	10.7
목 제 품 및 나 무 제 품 제 조 업	98.6	10.9
종 이 및 종 이 제 품 제 조 업 인 쇄 및 출 판 업	53.1	9.1
화 합 물 석 유 · 석 탄 · 고 무 및 플 라 스틱 제 품 제 조 업	80.3	9.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석 유 · 석 탄 제 외	56.2	9.8
제 1 차 금 속 산 업	74.6	5.3
조 립 금 속 제 품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69.2	9.5
기 타 제 조 업	50.8	10.7

자료 : 노동부.

III. 勞使紛糾

1. 勞使紛糾의 推移

1990년 5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15건이고, 해결건수는 179건으로 36건이 진행중에 있다. 발생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하면 78.6%가 감소하였으며, 해결률은 83.3%로 전년동기의 92.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990년의 노사분규가 발생건수면에서 전년에 비해 5배 정도 줄어들었으나 해결률이 낮은 이유는 분규의 발생 자체가 적어 진행중인 분규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16〉에서 1~3월에 해결률이 100%가 넘는 이유는 이 시기에 해결된 분규건수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분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0년 들어 4월말까지 월별 분규건수는 50건 이하로 1987년 하반기 이후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나 현대중공업과 KBS사태후 5월 들어 104건으로 증가하고, 〈표 17〉에서와 같이 1990년 5월의 1일평균 분규발생건수가 3.4건으로 1일평균 해결건수 2.4건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1]에서와 같이 1988~89년의 분규추이가 본격적인 임금교섭시기인 5월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5월을 정점으로 분규건수는 다시 감소추세로 반전되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올해의 임금교섭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대규모 노사분규

〈표 16〉 월별 노사분규 발생현황(매월말 누계치)

(단위: 건, %)

	발 생		해 결		해 결률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월말	74	24	86	30	116.2	125.0
2월말	180	43	168	47	93.3	109.3
3월말	326	67	300	81	92.0	120.9
4월말	587	111	483	104	82.3	93.7
5월말	1,003	215	930	179	92.7	83.3

주: 1) 여기에 사용한 통계는 노동부 자료에서 재집계한 통계이므로 노동부 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노동부 자료와의 차이 발생은 노동부가 보고받은 시점의 차이(늦게 보고되는 분규도 있음)이므로 연간 분규 총건수의 차이는 없으나 월별 통계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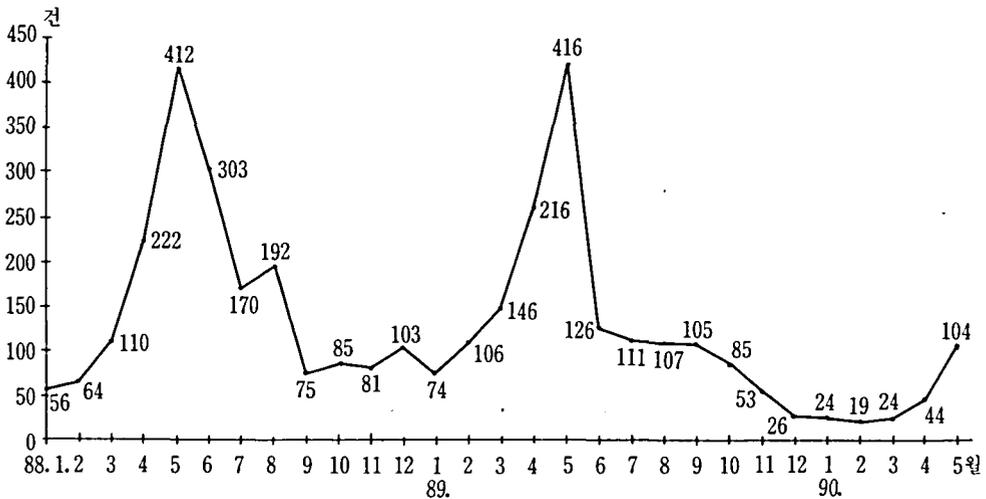
〈표 17〉 월별 분류발생건수 및 해결건수

(단위: 건, %)

	발 생		해 결		1일평균 발생건수		1일평균 해결건수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월	74	24	86	30	2.4	0.8	2.8	1.0
2월	106	19	82	17	3.8	0.7	2.9	0.6
3월	146	24	132	34	4.7	0.8	4.3	1.1
4월	261	44	183	23	8.7	1.5	6.1	7.7
5월	416	104	447	75	13.4	3.4	14.4	2.4

주: 〈표 16〉의 주를 참조.

〔그림 1〕 1988.1~90.5월별 분류발생건수



를 유발할 별다른 쟁점사항이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 사회정치상에 커다란 변동이 없다면 연간 총분규건수는 전년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2. 勞使紛糾의 強度

가. 分규지속일수

1990년 5월말 현재 분규지속일수는 23.4일로 전년동기 14.7일에 비해 8.5일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들어 분규발생은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분규지속일수가 1989년 5월에 비해 길어진 이유는 〈표 18〉에서와 같이 1990년은 1989년에 비해 5일 이하의 단기분규의 비율이

〈표 18〉 분규지속일수 빈도

(단위: 건, %)

	1989. 1~5		1990. 1~5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5일 이하	235	25.3	61	34.1
6~10일	377	40.5	41	22.9
11~20일	143	15.4	26	14.5
21~50일	120	12.9	24	13.4
51일 이상	55	5.9	27	15.1
계	930	100.0	179	100.0

높아지긴 했지만 50일 이상의 장기분규 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의 분규는 전년도에 비해 단기분규와 장기분규가 구분되어지는 양극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1989년에는 서울지역택시노조의 연대분규(지속일수 8일) 232건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분규지속일수를 상대적으로 짧게 만든 반면, 1990년에는 1989년에서 이월된 F.코아 코리아, 아세아스와니, 한국수미다, 크라운전자 등의 장기분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⁶⁾

나. 분규참가자수

1990년 1~5월 발생한 분규사업장의 평균분규참가 근로자수는 전년동기보다 100여 명 많은 339명으로 분규사업장 근로자의 38%가 분규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동기의 55%

〈표 19〉 분규참가자수

(단위: 건, %)

	1989. 1~5	1990. 1~5
분규사업장 평균근로자수(A)	429	886
분규사업장 평균분규참가자수(B)	236	339
분규사업장 평균조합원수(C)	-	738
B / A	0.55	0.38
B / C	-	0.46

6) 분규지속일수를 발생시점기준 즉, 1989년과 199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각각 발생하여 종료된 분규를 대상으로 계산 하여 보면 1989년 1~5월중에는 878건이 평균 12.5일 지속되었으며, 1990년 1~5월중에는 155건이 평균 13.8일 지속되어 역시 1990년이 1989년보다 1.3일 정도 길어졌다.

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분규전수의 감소와 함께 분규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0년에는 분규사업장의 조합원 중에서도 절반 정도 (46%)가 분규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노동손실일수

분규전수, 분규지속일수, 분규사업장 근로자수를 모두 포괄하여 노사분규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되는 노동손실일수를 보면 1990년 5월 현재 2,882천일로 계산되어 전년동기 8,298일에 비하여 65.2% 감소하였다.

1990년의 분규는 분규지속일수와 분규참가자수는 늘어났지만 분규전수의 절대적인 감소로 노동손실일수가 줄어들어 분규의 강도는 전년도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20〉 노동손실일수의 추이

(단위 : 천일)

	발생 당시 분규참가자기준 노동손실일수	분규사업장 총근로자기준 노동손실일수
1989년 1~5월	3,554	8,278
1990년 1~5월	1,156	2,882

〈표 21〉 산업별 노동손실일수 추이 (분규사업장 총근로자기준)

(단위 : 천일, %)

	1989. 1~5		1990. 1~5	
	일 수	비 율	일 수	비 율
농 립 어 업	65	0.7	-	-
광 업	251	3.0	31	1.1
제 조 업	6,723	81.2	2,270	78.8
전기·가스 및 수도업	1	0.0	1	0.0
건 설 업	266	3.2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9	0.6	2	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2	6.1	21	0.7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87	2.3	503	17.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32	2.8	55	2.0
계	8,278	100.0	2,882	100.0

한편 업종별 노동손실일수를 살펴 보면 1990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제조업부문에 노동손실일수의 80%가 집중되어 있으며, 운수업의 노동손실일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사업서비스업의 손실일수 비율이 증가하였다.

3. 勞使紛糾의 諸特徵

가. 원인별 노사분규현황

1990년 5월말 현재의 노사분규를 원인별로 살펴 보면 <표 22>에서와 같이 임금인상이 46.5%, 단체협약이 21.4%, 기타 19.0%의 순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임금인상에 관한 분규의 비율이 줄고, 기타 항목의 분규비율이 증가하여 분규원인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처리상 분규의 원인은 주된 원인 하나로만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쟁의의 발생은 여러 가지 쟁점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은 통계상의 수치보다 훨씬 더 다양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임금인상이 쟁점이 되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택문제, 상여금 인상이나 이익분배방식 도입에 대한 문제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단체협약관련 분규에서는 전임자의 문제, 유니온숍의 여부,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문제, 인사·징계위원회의 조합참여 여부, 편집권 독립, 종업원지주제, 조합원의 가입범위, 주 44시간 근무 및 그에 따른 임금보전, 주 5일

<표 22>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현황

(단위:건, %)

	1989. 1~5		1990. 1~5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임 금 체 불	25	2.5	9	4.2
임 금 인 상	576	57.4	100	46.5
휴폐업 및 조업단축	14	1.4	6	2.8
근로조건개선	20	2.0	1	0.5
단 체 협 약	224	22.3	46	21.4
해 고	47	4.7	10	4.7
사 납 금	2	0.2	1	0.5
부당노동행위	11	1.1	-	-
기 타	84	8.4	42	19.0
계	1,003	100.0	215	100.0

주: <표 1>의 주를 참조.

근무, 퇴직금 누진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타 원인으로 분류된 분류내용을 살펴 보면 감원, 공장이전 및 매각, 경영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보장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사·경영사항에 관한 문제, 구속자 석방, 고소·고발취하, 타사업장 분류에 대한 동정파업, 특별상여금지급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고자의 임금문제와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분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규모별 노사분규현황

1990년 5월말 노사분규의 발생건수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표 23>에서와 같이 30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분규의 65.1%, 300~999인의 중기업이 19.1%, 1,000인 이상 대기업이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보면 올 들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분규의 발생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년에 비해 대기업의 노사분규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전년에 비해 노동조합운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대기업노조들은 「7대 대기업노조 협의체」(노동조합운동탄압 비상대책회의 1990. 2. 26. 결성),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원회」(노활추, 1990. 4. 20. 결성) 등을 통하여 공동 대응활동을 강화해 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규모별 노사분규를 원인에 따라 살펴 보면, <표 24>에서와 같이 기업규모에 따른 별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없으나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임금인상이 원인이 된 분류비율은 적으나 기타사항(구속자석방, 고소·고발취하, 연대동정파업)의 분류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

다. 산업별 노사분규

노사분규의 발생비율을 산업별로 보면 <표 25>에서와 같이 1990년 5월말 현재 제조업 77.2%, 운수·창고·통신업 7.4%의 순이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운수업의 분규건수와 비율이 대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에서의 분규비율이 높고 분규의 강도도 높은 편이어서 제조업부분에 분규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된다.

<표 23> 기업규모별 노사분규 발생현황

(단위: 건, %)

	1989. 1~5		1990. 1~5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300인 미만	769	76.7	140	65.1
300~999인	140	14.0	41	19.1
1,000인 이상	94	9.4	34	15.8
계	1,003	100.0	215	100.0

<표 24> 규모별·원인별 노사분규 발생현황

(단위:건, %)

	300인 미만		300~999인		1,000인 이상		합 계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임 금 체 불	18 (2.3)	7 (5.0)	7 (5.0)	1 (2.4)	-	1 (2.9)	25 (2.5)	9 (4.2)
임 금 인 상	450 (58.5)	63 (45.0)	76 (54.3)	25 (61.0)	50 (53.2)	12 (35.3)	576 (57.4)	100 (46.5)
휴 폐업 및 조업 단축	13 (1.7)	6 (4.3)	1 (0.7)	-	-	-	14 (1.4)	6 (2.8)
근 로 조 건 개 선	13 (1.7)	1 (0.7)	1 (0.7)	-	6 (6.4)	-	20 (2.0)	1 (0.5)
단 체 협 약	177 (23.0)	32 (22.9)	27 (19.3)	8 (19.5)	20 (21.3)	6 (17.6)	224 (22.3)	46 (21.4)
해 고	39 (5.1)	5 (3.6)	8 (5.7)	3 (7.3)	-	2 (5.9)	47 (4.7)	10 (4.7)
사 납 금	1 (0.1)	1 (0.7)	1 (0.7)	-	-	-	2 (0.2)	1 (0.5)
부 당 노 동 행 위	7 (0.9)	-	3 (2.1)	-	1 (1.1)	-	11 (1.1)	0
기 타	51 (6.6)	25 (17.9)	16 (11.4)	4 (9.8)	17 (18.1)	13 (38.2)	84 (8.4)	42 (19.5)
계	769 (100)	140 (100)	140 (100)	41 (100)	94 (100)	34 (100)	1003 (100)	215 (100)

라. 노조유무별 분류현황

조합유무별 노사분규 발생비율을 살펴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분류가 전체분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월말 현재 93.5%로 전년동기와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분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분류원인은 임금 인상과 임금체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조직 사업장의 분류지속일수는 평균 5일로 조직 사업장보다 짧다.

〈표 25〉 산업별 노사분규 발생현황

(단위: 건, %)

	1989. 1~5		1990. 1~5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농 립 어 업	1	0.1	-	-
광 업	44	4.4	9	4.2
제 조 업	568	56.6	166	77.2
전기·가스 및 수도업	3	0.3	1	0.5
건 설 업	7	0.7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	1.2	5	2.3
운수·창고 및 통신업	287	28.6	16	7.4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30	3.0	7	3.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1	5.1	11	5.1
계	1,003	100.0	215	100.0

〈표 26〉 조합설립 시기별 분규비율

(단위: %)

	1986년 이전설립	1987년 이후설립	계
전 체 조 합	30.9	69.1	100.0
분 규 조 합	16.9	83.1	100.0

마. 조합설립시기별 분규현황

1990년 5월까지의 분규를 조합설립시기에 따라 살펴 보면 1987년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전체분규의 83.1%를 차지하고 있어 1987년 이후 설립된 조합이 전체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율 69.1%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海外勞動動向

▷ 주요 목차 ◁

I. 싱가포르

II. 臺 灣

I. 싱가포르

1. 經濟一般

1985~86년의 불황 이후 수출의 호조로 다시 호황국면으로 전환된 싱가포르 경제는 실질경제 성장률(GDP)이 1987년 9.4%, 1988년 11.1%, 1989년 9.2%로 높은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1989년의 GDP 성장률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9.9%, 도·소매업 8.3%, 운수·통신업 9.4%, 금융·사무서비스업 14.6% 등으로 거의 전산업부문이 고루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활발한 외수와 민간소비지출 및 민간설비투자의 증대에 따른 내수신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GDP에 대한 지출내역별 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지출이 7.9%, 민간부문 총고정자본형성이 28%를 기록하였으며, 싱가포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관광산업도 관광객들의 지출기준으로 10.5% 성장하여 높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수출과 수입은 1988년의 31%, 29% 성장에서 1989년에는 각각 10% 성장함으로써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경상수지 흑자 폭은 1988년 26억 2,800만S\$에서 1989년에는 45억 6,000만S\$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산업구조를 1989년의 GDP 구성비로 살펴 보면 지리적 조건으로 농업 및 어업은 0.3%에 불과한 반면, 운수·통신 13.5%, 도·소매업 17.6%, 제조업 29.7%, 금융·사무서비스업 29.7%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제3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 勞勤市場

가. 노동력공급 동향

1989년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130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는데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79만 2,563명(전년대비 0.7% 증가), 여자는 51만 2,805명(전년대비 3.7% 증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15세 이상인구)의 63.1%로 전년(62.9%)대비 0.2%포인트 상승하였는데 남자는 78.6%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한 데 비하여 여자는 48.4%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를 전체적인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자 특히 35세 이상의 기혼여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현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정년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55~59세층의 경제활동참가율(42.2%)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89년의 신규노동시장 참가자수는 6만 5,600명으로 이중 2/3가 25세 이하, 반 이상(55.9%)이 여자,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63.6%로 점차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신규참가자들이 취업하는 산업부문은 제조업, 서비스업, 상업 순이지만 서비스업이나 상업부문의 취업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취업구조

1989년 현재 전체 취업자수는 127만 7,254명인데 이를 종사상 지위별 비율로 보면 사용자, 피고용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5.5%, 85.6%, 7.5%,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고용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노동력 추이

(단위: 천명,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경제활동인구	1,207.4	1,204.1	1,228.6	1,251.7	1,281.4	1,305.4
취업자	1,174.8	1,154.3	1,149.0	1,192.9	1,238.5	1,277.3
실업자	32.5	49.8	79.5	58.8	42.9	28.1
실업률	2.7	4.1	6.5	4.7	3.3	2.2
경제활동참가율	63.4	62.2	62.3	62.7	62.9	63.1

주: 매년 6월 조사.

자료: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Ministry of Labor, *Report on The Labor Force Survey of Singapore*, 1989.

〈표 2〉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천명, %)

	1986		1987		1988		1989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전 산 업	1,149.0	100.0	1,192.9	100.0	1,238.5	100.0	1,277.3	100.0
제 조 업	290.1	25.2	318.9	26.7	352.6	28.5	369.9	29.0
전 설 업	99.5	8.7	91.5	7.7	83.3	6.7	84.5	6.6
도 · 소 매 업	265.7	23.1	279.4	23.4	283.6	22.9	291.5	22.8
운수 · 통 신 업	114.1	9.9	120.9	10.1	120.2	9.7	126.2	9.9
금융 · 보 험 업	99.9	8.7	105.7	8.9	111.4	9.0	117.1	9.2
서 비 스 업	259.2	22.6	256.7	21.5	271.6	21.9	273.5	21.4
기 타	20.5	1.8	19.8	1.7	15.8	1.3	14.6	1.1

자료: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Ministry of Labor,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각년도.

한편 산업별 취업구성을 보면 제조업 29.0%, 건설업 6.6%, 도·소매업 22.8%, 운수·통신업 9.9%, 금융·보험업 9.2%, 서비스업 21.4%, 기타 1.1%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취업자 증가의 44.5%가 제조업에 취업하였다.

그리고 직종별 취업구성을 보면 생산직 35.8%, 전문직 19.6%, 사무직 15.1%, 서비스직종사자 13.3%, 판매종사자 12.0%의 순인데 1989년의 경우 전문직이 전년대비 9.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체 취업자 증가의 5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전문직의 급속한 증가는 전체 취업자중 전문직의 비중 증대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표 3〉 직종별 취업자수

(단위: 천명, %)

	1986		1987		1988		1989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전 문 직	126.4	11.0	133.6	11.2	142.8	11.5	152.5	11.9
관 리 직	68.1	5.9	71.9	6.0	86.3	7.0	97.7	7.6
사 무 직	180.6	15.7	184.8	15.5	190.7	15.4	193.5	15.1
판 매 종 사 자	155.6	13.5	170.5	14.3	152.2	12.3	153.6	12.0
서 비 스 종 사 자	136.5	11.9	138.9	11.6	163.8	13.2	170.2	13.3
농림수산종사자	12.8	1.1	14.3	1.2	8.9	0.7	90.8	7.1
생 산 직	411.0	35.8	422.8	35.4	437.2	35.3	447.7	35.0
기 타	57.9	5.0	56.2	4.7	56.6	4.6	53.0	4.1
계	1,149.0	100.0	1,192.9	100.0	1,238.5	100.0	1,277.3	100.0

자료: 〈표 2〉와 동일.

전체 취업자중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의 13.6%에서 1989년에는 19.6%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판매, 생산직 등 다른 직종의 구성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하이테크산업육성등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더욱 숙련되고 학력수준이 높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대라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다. 실업

싱가포르의 실업률은 1980~84년 사이에 3% 전후의 비교적 낮은 추세를 보이다가 1985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영향으로 실업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1986년에는 6.5%를 기록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경제의 회복과 이에 따른 왕성한 노동수요에 힘입어 1988년 3.3%에 이어 1989년에는 2.2%를 기록함으로써 완전고용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자산업등 일부 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실업기간(중위수)도 1988년의 12.2주에서 1989년에는 7.8주로 단축되었다.

실업자중 남자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여자의 1.9%에 비해서 남자가 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실업기간(중위수)도 여자가 6.4주인데 비해서 남자는 8.8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등교육 이상 수료자들의 실업률이 1.9%인데 비하여 중등교육 미만의 실업률은 2.4%로 저학력 소지자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구인배율도 1988년의 4.11에서 1989년에는 7.8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전문·기술직, 판매직, 생산직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력 공급을 원활히하기 위해 파트타임노동의 촉진에 의한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향상(50%를 목표) 및 정년연장 등에 의한 고령노동력 활용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라. 임금인상 동향

싱가פור는 1972년 이후 노·사·정 3자구성의 국가임금심의회(NWC: National Wage Council)가 매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NWC의 임금인상권고는 법률상의 강제력은 없지만 임금인상률 추세를 보면 NWC의 권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불황기였던 1985년에 정부는 불황원인의 하나로 생산성향상을 크게 상회하는 임금인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를 들고 1986~87년 2년간 임금인상을 동결하는 임금억제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1986년과 1987년의 전산업 평균월 임금상승률은 각각 1.0%와 1.7%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보다 탄력적으로 임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경제의 급격한 회복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다시 임금인상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연도별·산업별 월임금 추이

(단위: S\$, %)

	198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전 산 업	692 (13.1)	991 (8.9)	1,083 (93.3)	1,191 (10.0)	1,210 (1.0)	1,231 (1.7)	1,295 (5.2)	1,427 (10.2)
제 조 업	575 (13.0)	821 (10.9)	907 (10.5)	980 (8.0)	989 (0.9)	1,025 (6.9)	1,095 (6.9)	1,225 (11.9)
전 설 업	687 (15.1)	861 (-2.3)	891 (3.5)	1,250 (40.3)	1,208 (-3.4)	1,240 (2.6)	1,378 (11.1)	1,556 (12.9)
도·소매업	674 (16.8)	946 (7.9)	1,017 (7.5)	1,055 (3.7)	1,072 (1.6)	1,057 (-1.4)	1,124 (6.3)	1,239 (10.2)
운수·통신업	778 (11.8)	1,109 (11.1)	1,196 (7.8)	1,309 (9.4)	1,354 (3.4)	1,422 (5.0)	1,422 (0.0)	1,517 (6.7)
금융·보험업	927 (11.7)	1,283 (10.2)	1,422 (10.8)	1,418 (-0.3)	1,421 (0.2)	1,458 (2.6)	1,551 (6.4)	1,737 (12.0)
서 비 스 업	788 (11.9)	1,188 (9.0)	1,337 (12.5)	1,422 (6.4)	1,469 (3.3)	1,483 (1.0)	1,551 (4.6)	1,678 (8.2)
기 타	815 (15.1)	1,181 (3.9)	1,345 (13.9)	1,317 (-2.1)	1,312 (-2.1)	1,339 (2.1)	1,412 (5.5)	1,551 (9.8)

주: 1) 1985년 이전은 10인 이상 전사업체, 1985년 이후는 CPF 가입자 25인 이상의 전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2) () 안은 전년대비 상승률.

자료: 〈표 2〉와 동일.

〈표 5〉 연도별·직종별 월임금 추이

(단위: S\$, %)

	198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전문·관리직	1,619 (10.5)	2,228 (7.7)	2,419 (8.6)	2,296 (-5.1)	2,322 (1.1)	2,339 (0.7)	2,421 (3.5)	2,610 (7.8)
사무·판매·서비스직	561 (12.2)	774 (7.1)	808 (8.6)	853 (5.6)	872 (2.2)	890 (2.11)	917 (3.0)	987 (7.6)
생산·운수·기타직	473 (14.3)	668 (9.0)	729 (9.1)	790 (8.4)	783 (-0.9)	817 (4.3)	866 (6.0)	941 (8.7)

자료: 〈표 2〉와 동일.

1989년의 명목임금상승률(전산업 월당임금)은 1988년의 높은 경제성장률(11%)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2% 상승하였는데 이는 1986년부터의 임금억제정책이 전환되어 생산성 상승범위 내의 임금인상이 용인되었고 또한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이 현재화되어 임금 상승 압력이 높

〈표 6〉 월수입 계층별 취업자 분포 구성비(1989년)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총 수	100.0	100.0	100.0
400S\$ 미만	12.4	9.5	16.9
400 ~ 599S\$	21.6	16.4	29.7
600 ~ 799S\$	19.5	19.7	19.2
800 ~ 999S\$	11.7	13.4	9.1
1,000~ 1,499S\$	15.9	18.0	12.5
1,500~19,999S\$	6.3	7.2	5.0
2,000~ 2,499S\$	4.5	5.2	3.3
2,500~ 2,999S\$	1.9	2.2	1.4
3,000S\$이상	6.2	8.4	2.9

자료: 〈표 2〉와 동일.

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임금인상 추세를 보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이 12.9% 상승한 외에 금융·보험업 12.0%, 제조업 11.9%, 도·소매업 10.2% 등 전산업부문에서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직종별로도 노동력 부족이 현저하여 이직·전직이 많은 생산·운수·육체노동자가 8.7%의 높은 임금인상률을 나타내었다.

마. 임금수준

1989년 현재 월임금수준을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1,737S\$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1,678S\$, 건설업 1,556S\$ 순이고 가장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인 제조업은 1,225S\$이다.

그리고 임금수준은 직종별로 보면 가장 높은 직종이 전문·관리직으로 2,610S\$이고 다음이 사무·판매·서비스직으로 987S\$이며 가장 낮은 직종은 생산·운수·단순노무직의 941S\$ 순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운수·단순노무직의 임금인상률이 타직종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직종간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를 월수입 계층별로 보면 월400~599S\$ 계층이 전체의 21.6%로 가장 많으며 1,000S\$ 미만이 전체의 65%를 점하고 있다.

1989년의 전산업 월평균임금이 1,427S\$이므로 취업자의 70% 이상이 평균임금미만 계층에 분포하고 있다.

바. 노동비용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미국달러기준)은 1988년 8.9% 상승에 이어 1989년에는 8.7% 상승하였다. 그러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NICs국가에 비하여 싱가포르의 상대적 경쟁

<표 7>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변화 추이(미국달러기준)

(단위: %)

	1986	1987	1988	1989
싱가포르	-13.9	-2.5	8.9	8.7
대만	6.8	21.7	17.2	13.2
한국	-2.2	12.4	26.0	43.3
홍콩	0.5	-1.3	4.4	9.5

자료: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1989.

<표 8> 산업별·구성요소별 근로자 1인당 연평균 노동비용(민간부문: 1988년)

(단위: S\$)

	전산업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	금융
총평균노동비용 1)	18,030	12,507	17,848	16,110	14,740	18,092	19,141	29,360
총소득 2)	13,522	9,769	14,355	12,312	11,314	13,403	14,568	20,790
기본소득 3)	11,461	9,351	12,481	9,907	9,977	11,601	12,105	19,225
초과근로소득 4)	1,154	281	1,782	1,523	1,127	497	1,545	619
기타소득 5)	907	137	91	882	209	1,305	918	946
보너스·AWS 6)	1,772	902	1,316	1,342	803	1,826	2,024	4,233
CPF 7)	1,522	1,111	1,472	1,323	933	1,662	1,690	2,497
SDF·FWL 8)	212	159	253	259	1,104	41	47	30
의료비 9)	157	98	216	121	89	193	186	288
훈련비 10)	179	18	0	190	41	158	122	317
기타 11)	665	450	236	563	456	808	504	1,205

주: 1) = (2) + + (11)

2) = (3) + (4) + (5)

3) 기본급과 호봉승급이나 승진 또는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조정 등에 따른 임금인상분 포함.

5) 교대수당, 통근수당, 생산성계고수당, 커미션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모든 현금급여.

6) 보너스를 포함한 가변적 급여와 연간임금보조금(AWS: Annual Wage Supplements).

7) 사용자의 중앙적립기금(CPF) 분담금.

8) 기술개발기금(SDF; Skill Development Fund) 출연금과 외국인 고용등록세(Foreign Workers' Levy).

9) 모집비용과 기타 부가급여 그리고 현금급여를 포함한 기타 종업원복지비용.

력은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경쟁국들의 임금인상이 싱가포르에 비해 더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1988년의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노동비용을 산업별·구성요소별로 보면 <표 8>과 같다. 이에 따르면 총노동비용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비용(2)+(6)의 비율은 전산업과 제조업이 84.8%, 금융업이 85.2%를 차지하고 있다.

사. 노동생산성

싱가포르는 1985년 불황 이후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3~4% 향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이보다 높은 생산성향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1989년에도 1988년의 4.6%보다 조금 높은 4.8%를 기록함으로써 견실한 노동생산성향상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1984년 이후 계속하여 경제 전체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동생산성향상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비하여 제조업은 향상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생산성향상을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향상은 1988년에 2.5%에 그침으로써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향상률 4.8%에 비해 훨씬 낮은 향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1988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둔화되었는데 이는 한계생산력은 둔화된 데 반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산출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

	198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제 조 업	-0.7 (0.3)	9.1 (8.0)	7.2 (7.8)	-1.5 (1.2)	13.6 (11.0)	3.7 (2.2)	2.0 (4.1)	3.9 (1.3)
건 설 업	4.2 (1.8)	10.1 (10.1)	9.0 (5.6)	5.7 (8.0)	-4.3 (-2.3)	0.8 (1.8)	1.6 (4.2)	-0.1 (-3.9)
도 · 소 매 업	1.2 (1.4)	2.1 (2.3)	4.5 (5.4)	0.4 (0.9)	4.9 (5.8)	6.3 (6.5)	10.9 (13.4)	4.1 (3.6)
운수 · 통신업	8.0 (9.3)	8.8 (9.4)	11.9 (13.9)	5.2 (7.2)	10.7 (9.1)	6.3 (5.9)	6.6 (7.4)	4.8 -
금융 · 사무서비스업	-0.1 (0.6)	4.3 (4.8)	7.7 (7.7)	12.0 (12.0)	1.4 (0.5)	17.7 (17.9)	6.0 (4.6)	7.0 (6.2)
전 체	1.6 (2.0)	5.3 (4.9)	6.9 (6.9)	3.1 (5.3)	6.3 (5.2)	4.8 (3.9)	4.6 (4.4)	4.8 (2.5)

주: () 안은 근로시간당, () 밖은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
 자료: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각년도.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표 10〉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198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전 산 업	45.9	45.6	45.6	44.6	45.1	45.5	45.6	46.6
제 조 업	48.0	48.1	47.8	46.5	47.7	48.4	47.4	48.6
건 설 업	48.1	50.5	52.2	51.0	50.0	49.5	48.2	50.0
도 · 소 매 업	44.1	43.9	43.5	43.3	42.9	42.8	41.7	42.0
운수 · 통신업	47.1	46.5	46.0	45.1	45.8	46.0	45.6	47.8
금융 · 보험업	43.6	43.3	43.3	43.3	43.7	43.6	44.2	44.6
서 비 스 업	42.0	39.9	39.4	39.2	39.8	40.8	41.7	41.4
기 타	47.5	47.6	47.1	46.6	46.8	46.3	46.4	47.2

자료 : 〈표 2〉와 동일.

아. 근로시간

싱가포르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이며, 초과근로시에도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다. 그리고 초과근로는 월 7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초과근로는 50%,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주휴 및 공휴때 근로할 시에는 10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산업별 총실근로시간은 〈표 10〉과 같다.

이에 따르면 1989년 전산업의 주당 총실근로시간은 46.6시간이며 산업별로는 건설업 50.0시간, 제조업 48.6시간, 운수·통신 47.8시간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부문에서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법정으로 개근시 7일의 연차휴가에 근속 1년마다 하루씩 연차휴가가 가산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산업별·직종별 연차휴가 취득상황을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연차휴가일수별 비율

(단위 : %)

	전산업	제조업
전문·관리직		
14일 미만	39.1	47.8
15~21일	43.0	44.3
22일 이상	17.9	7.9
전 체	100.0	100.0
사무·판매·서비스직		
14일 미만	74.2	73.0
15~21일	22.5	24.1
22일 이상	3.3	2.9
전 체	100.0	100.0
생산·운수·기타		
14일 미만	84.3	86.1
15~21일	14.6	13.2
22일 이상	1.1	0.7
전 체	100.0	100.0

자료 : 〈표 2〉와 동일.

3. 勞使關係

가. 노동운동 연혁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던 싱가포르는 일본의 패전에 따라 다시 영국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1946년 마라야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싱가포르노동조합연맹(SFTU)이 최초로 결성되었다. 동 연맹은 독립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였으나 1948년의 비상사태전에 따라 공산당이 비합법화되면서 지도력을 상실하였다. 1951년에는 싱가포르노동조합회의(STUC)가 결성되었는데 이 조직에는 반공세력과 친공세력이 공존하였다. 그 후 노동조합관계의 변호사였던 리관유 현수상과 친공적인 싱가포르 공장·상점노동조합(SFSWU)의 서기장이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을 결성하였는데 PAP는 노동조합의 지원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1959년에는 리관유를 수상으로 하는 PAP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 PAP로부터 좌파계 지도자가 분열되면서 STUC로부터도 좌파계가 탈퇴

하여 싱가포르노동조합협회(SATU)를 결성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리관유 수상에 가까운 세력들은 동년에 전국노동조합회의(NTUC)를 결성하였다.

1963년에는 SATU가 산하 7개 노동조합의 등록취소에 항의하여 총파업을 주도하였으나 실패하면서 조직자체가 비합법화되었고 이에 따라 NTUC가 유일한 전국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싱가포르의 노동조합운동은 정부 및 여당(PAP)과 NTUC가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NTUC가 여당인 PAP의 지지기반일 뿐만 아니라 NTUC 서기장이 제2 부수상 및 PAP 당수를 겸임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나. 조직 및 분류현황

1989년말 현재 노동조합수는 86개, 조합원수는 21만 2,874명으로 전체 피용자의 19.5%를 점하고 있으며 NTUC에는 전체 조합원의 98%를 구성하는 70개의 노동조합이 가맹하고 있다. NTUC를 구성하는 노동조합은 거의가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각 기업단위의 조직은 이들 산업별 조합의 지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1984년 NTUC 대표자대회에서 기업별조합 지지동의가 가결되어 기업별 조합에로의 전환방침이 승인되었다. 한편 사용자단체로서 최대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 단체는 싱가포르전국사용자연맹(SNEF)으로 전국임금심의회를 위시한 각종의 노·사·정 3자구성위원회에 사용자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임금결정은 노·사·정 3자구성심의회인 NWC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인상을 행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과 각종의 3자구성기관을 통해 형성된 노·사·정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1973년부터 1977년 사이에 발생했던 37건의 파업이 1978년 이후에는 1986년의 1건 발생에, 손실일수 0.122일이라는 극히 안정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표 12〉 조직 및 분류 추이

(단위: 개, 명, 건,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노동조합수	90	86	84	83	83	83	86
조합원수	205,155	192,394	201,132	200,613	205,717	210,918	212,874
파업건수	0	0	0	1	0	0	0
추정조직률	20.8	19.4	20.6	20.7	20.5	19.9	19.5

주: 조직률=노동조합원수/피용자수×100.

자료:〈표 2〉와 동일. 노동조합원수는 매년말시점, 피용자수는 6월시점 수치임.

II. 臺 灣

1. 經濟一般

1986~87년중 두자리수의 높은 경제성장률(실질 GNP기준)을 기록하였던 대만 경제는 1988년과 1989년중에 각각 7.8%, 7.2%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특히 1989년중 대만 경제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 해외부문의 개선과 임금상승에 의한 민간 소비의 증대,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 및 설비현대화 등 투자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7.2%의 성장에 그쳤다. 한편 1990년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세를 반영하여 수출입 모두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상승의 가속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저하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勞動市場

가. 노동력수급 동향

대만은 그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유희노동력의 고갈과 교육기회의 증대에 따른 젊은 노동력의 점진적인 감소 등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성장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1989년에 경제활동인구는 8,390천명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8,258천명으로 1.9% 증가하였으나, 실업자는 132천명으로 5.0%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나 실업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60%, 남자 75%, 여자 45%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 기회의 증가와 이에 따른 늦어진 노동시장 참가로 15~24세 계층의 취업자구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최근에 급속히 성장하여 제3차산업 취업자가 1988년 이후 제2차산업¹⁾ 취업자를 능가하고 있다.

즉, 취업구조는 경제의 재편과 더불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사업체조사로서²⁾ 좀더 자

1) 제2차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그리고 건설업을 지칭하며 1989년의 제2차산업 취업자수는 3,48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2) 대만의 사업체조사는 한국의 「매월노동동태조사보고서」와는 달리 비농부문의 1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피용자(상용 및 일용임시)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세히 살펴 보자.

첫째, 피용자의 산업별 구성이 변화하여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사업체의 피용자수는 증가하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2차산업 피용자는 감소하는데 비하여 제3차산업 피용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 보면 광업에서는 광물자원의 점진적인 고갈과 정부에 의한 광부의 전직프로그램의 성공으로 1987년 이후 피용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제조업 기피현상 및 조업의 자동화 등으로 1988년 이후 피용자수가 줄곧 감소하여 1989년에는 전년에 비해 5.0%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급상으로 건설업의 피용자는 전년에 비해 1.8%나 증가하고 특히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흑자로 1989년에는 전년에 비해 8.6%로 증가하여 산업대분류로 볼 때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피용자의 노동이동률은 업종에 대한 피용자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데 1989년중 이직률이 이직률보다 높은 산업은 광업, 제조업 그리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으로 특히 제조업의 경우 최근의 고용감소를 반영하여 이직률이 3.31%인데 비하여 이직률은 3.81%에 달하고 있다. 한편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이직률이 2.18%인데 비해 이직률은 1.44%에 불과하여 최근의 급격한 고용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직률이 높는데 1988년중 이직사유중 자진사퇴가 8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결혼 4.5%, 출산 및 자녀양육 2.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최근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노동운동의 출현으로 대만의 임금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1989년 비농림산업의 임금은 21,176NT\$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상승은 주로 비정액급여에서 발생하고 있다.³⁾ 비록 비정액급여가 전체 현금급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89년 현재 16.0%이나 점차 그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 비정액급여의 인상률이 정액급여의 인상률을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로 임금증가율을 살펴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22.7%로 가장 높고, 광업이 8.9%로 가장 낮다.

한편 제조업의 1989년 임금수준은 19,537NT\$로 전년대비 14.6% 증가로 상당히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를 임금형태, 성,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 보면 비정액급여(25.1%)가 정액급여(12.7%)보다 남자(15.1%)가 여자(12.8%)보다 그리고 5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19.5%)가 30~499인 중규모사업체(13.6%), 29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체(10.1%)보다 각각 임금인상률이 높다. 비록 소비자물가는 지가상승에 따른 주거비, 식료 및 의류가격의 상승으로 1989년에는 예년에 비해 높은 4.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명목임금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

3) 대만의 임금 즉 현금급여는 크게 정액급여(경상성신자) 및 비정액급여(비경상성신자)로 양분된다. 여기서 비정액급여는 대체로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로 구성된다.

비농전산업의 실질임금은 5.8%나 증가하였다.

한편 1989년의 노동생산성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전체에서는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 살펴 보면 광업 1.5%, 제조업 10.6%, 전기·가스 및 수도업 6.3%이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9년 비농전산업의 월근로시간은 199.66(주당 46.0)시간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이 근로시간중 정상근로시간은 189.73(주당 43.7)시간이고, 초과근로시간은 9.93(주당 2.3)시간이나 사업체규모에 따라 정상 및 초과근로시간이 상이하다. 즉, 정상근로시간은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로시간은 사업체규모가 작

〈표 13〉 대만의 주요노동시장 지표의 추이

(단위 : 천명, %, 시간)

	1985	1986	1987	1988	1989
생 산 가 능 인 구	12,860	13,161	13,432	13,696	13,955
경 제 활 동 인 구	7,651	7,945	8,183	8,247	8,390
취 업 자	7,428	7,733	8,022	8,108	8,258
실 업 자	222	212	161	139	132
경 제 활 동 참 가 율	59.5	60.4	60.9	60.2	60.1
실 업 륜	2.9	2.7	2.0	1.7	1.6
구 인 배 율	0.9	1.7	2.7	2.9	2.9
명 목 임 금 증 가 율					
비 농 전 산 업	4.5	8.2	8.9	11.6	15.4
제 조 업	4.3	10.1	9.9	10.9	14.6
소 비 자 물 가 증 가 율	-0.2	0.7	0.5	1.3	4.4
노 동 생 산 성 증 가 율					
공 업 ¹⁾	2.5	6.8	7.9	7.8	10.7
제 조 업	2.1	7.1	7.9	7.5	10.6
노 동 시 간					
비 농 전 산 업	204.3	205.2	204.9	202.5	199.7
제 조 업	205.6	209.0	209.1	206.5	203.6

주 : 공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며 노동생산성은 인/시간당 물적 노동생산성임.

자료 : 대만 행정원 주계처, 「薪資與生產力統計月報」 각호.

대만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自由中國之工業」 각호.

4) 대만의 노동생산성은 인/시간당 물적 및 부가가치노동생산성으로 양분된다. 위의 자료는 물적 노동생산성에 관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 1989년에 전산업은 전년대비 6.6%,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그리고 건설업 등의 제2차산업은 4.7%이다. 또한 대만에서 발표하는 단위노동비용지수는 임금지수를 산출량지수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정의와 차이가 나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을수록 노동시간이 짧다. 그리고 제조업에 있어서도 1989년 월근로시간은 203.60(주당 46.9) 시간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정상 및 초과근로시간이 모두 감소하고 사업체규모별 특성도 비농전산업의 그것과 동일하다.

대만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여건은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임금은 급격히 상승하나 소비자물가의 안정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생산성의 증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 勞使關係

대만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노사분규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주요한 사회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고도성장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향상 및 1984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각종 권리를 실현하려는 욕구등 근로자들의 의식변화가 발생하여 집권국민당이 1986년에 입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은 의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정부는 1987년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포함하는 14개 항의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행정원에 노공위원회(勞工委員會)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 계엄령을 해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1987년 계엄령 해제와 1984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볼 수 있다. 우선 1987년 계엄령의 해제는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결성 및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정부가 부여하리라는 기대를 야기시켰으며 다음으로 1984년 근로기준법의 제정은 단체교섭에 있어서 각종 근로조건에 법정 최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교섭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거의 모든 쟁의행위는 현행 노동관계법 규정에 의하면 기술적으로는 불법이나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7년 이후에는 파업이나 태업 등이 대규모의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는 노사분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988년에 6개의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쟁의조정법도 개정하였다. 그러나 노사분규는 줄어 들지 않고 있으며 비록 노사분규의 일부가 쟁의행위로 발전하나 그 강도가 참가자수나 손실일수로 보면 노사분규의 강도가 보다 커지고 있다.⁵⁾

대만 노사분규의 특징을 시기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198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1980년 이전에는 해고에 기인한 노사분규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1984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또는 해고수당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규가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고 끝으로, 비생산직근로자들은 임금인상 이외에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가요구에 따른 노사분규도 발생하고 있다.

5) 대만의 노사분규(勞資爭議; labor dispute)는 爭議行爲(industrial actions)를 수반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대만의 노사분규의 극히 일부분이 각국간 비교의 준거로 보다 적합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그 동안 정부에 의해 비록 그 조직이 신장되었으나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즉 노동조합은 행정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고유한 기능인 단체협약의 체결 및 관리 그리고 고충처리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예로 1988년 3월에 약 15만개 기업체에 불과 278개의 단체협약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노동관계법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엄령의 해제, 야당의 출현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활성화되어 노동조합위원장은 집권국민당의 지명이 아닌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노조지도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상당히 투쟁적이다.

그러나 계엄령 해제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이 노동조합의 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민주화의 분위기 및 노동력 부족현상에 기인한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가 노동운동을 태동시키고 있다.

〈표 14〉 대만의 최근 노사관계 주요지표의 추이

	1985	1986	1987	1988	1989
노 사 분 규					
발생건수	1,443	1,485	1,609	1,314	1,943
참가자수	15,486	11,307	15,654	24,237	n, a
손실일수	0	0	1,614	8,967	n, a
노 동 조 합					
노동조합수	2,103	2,260	2,471	3,166	3,562
조합원수(천명)	1,549	1,724	1,875	2,187	2,530
조 직 륜 ¹⁾	32.5	34.5	35.0	40.2	45.4

주: 1) 조직률은 조합원수를 전체 피용자수로 나눈 수치임.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처, 「勞工統計年鑑」, 각년도. 「人力資源統計年報」, 각호.

우리나라 勞動組合의 現況과 發展課題*

朴德濟 · 朴基性**

I.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1987년 6·29선언 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추세에 힘입어 크게 활성화되었다. 노동조합수는 1987년 6월 30일의 2,725개에서 1989년 12월 31일의 7,883개로 189.3% 증가했고 노동조합원수는 같은 기간에 1,050천명에서 1,932천명으로 84.0% 증가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조직률(피용자 기준)은 같은 기간에 11.7%에서 18.7%로 7.0%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같은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기업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1987년 6·29선언 이후 근로자들의 증대된 요구수준은 빈번한 노사분규로 표출되었고 노사간의 상호불신이라는 골이 심화되는 등의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露呈했다.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산업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대등한 파트너로 간주하는 사용자측의 인식전환도 필요하지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의 새로운 요구와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역할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 구조, 운영, 활동 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문제의 이해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차적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와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그리고 총연합체인 한국노총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韓國의 勞動組合(I)-上級團體를 中心으로』라는 보고서로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단위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2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단위노동조합의 조직, 구조, 운영, 활동, 상급단체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위노동조합의 역할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本稿는 『韓國의 勞動組合(II)』(1990년 7월발간)의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임.

** 박덕제-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박기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II. 研究의 方法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먼저 서울 및 서울근교의 25개 단위노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조사(pilot survey)를 실시했다.¹⁾ 이 시험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문항을 확정하여 우편설문 조사를 위한 「노동조합실태조사표」를 완성하였다. 한국노총이 198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노총조직현황」에 수록된 단위노동조합의 주소록과 몇몇 산별노련에서 입수한 주소록을 이용해 전국의 5,471개의 단위노동조합에 「노동조합실태조사표」를 1989년 8월 5일 발송하였다. 자동차노련산하 노동조합은 주소록을 입수할 수 없어서 자동차노련과 노련산하 각 지부에 「노동조합실태조사표」를 우송해서 단위노동조합의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1989년 8월에 925개 노조가 응답을 보내왔고 9월에 172개 노조가 그리고 10월에 68개 노조가 응답을 보내와서 총 1,165개 노조에서 응답을 보내왔다.²⁾ 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하거나 단위노조의 지부인 28개를 제외하고, 직접 방문하여 응답을 받은 49개의 단위노조의 응답을 추가하였다.³⁾ 따라서 표본조사수는 1,186개가 되었는데 이것은 1989년 6월 30일 현재 7,358개인 전체 단위노동조합수의 16.1%이다.

본 표본조사는 우편조사이기 때문에 몇몇 항목에 대한 응답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자명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 후 분석하였다. 그러나 우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상당히 좋은 기초자료를 제공받았다.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이외에 50여 개의 단위노조를 직접 방문해서 얻은 각 노조의 규약, 사업보고서, 회의자료, 노보, 예·결산서 등의 자료를 보조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원의 자체 조사로 全數調查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전체 노조를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설문을 단위노조에 보내 응답케 함으로써 응답을 보낸 노조와 응답을 보내지 않은 노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와 같은 標本選定偏差(selectivity bias)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을 할 수 없었고 다만 명확한 편차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1) 시험조사대상 노조의 연맹별 분포를 보면 섬유노련산하 노조 4개, 광산노련산하 노조 1개, 통신노련산하 노조 1개, 금융노련산하 노조 1개, 화학노련산하 노조 8개, 금속노련산하 노조 7개, 연합노련산하 노조 1개, 사무·금융노련산하 노조 2개이다.

2) 105개가 반송되었다.

3)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 단위노조는 서울, 인천, 성남, 안산, 의정부, 광명, 부산, 마산, 창원, 울산, 포항, 여천, 광주, 대구, 구미 등에 위치하고 있다.

III. 韓國 勞動組合의 現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단위노동조합의 주요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조합원 규모면에서 보면 영세노조가 많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89년 6월말 현재 전체 단위노조 가운데 조합원 100인 미만이 62.8%, 100~299인이 24.5%, 300~999이 9.0%, 1,000~4,999인이 3.3%, 5,000인 이상이 0.5%로서 300인 미만인 조합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본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 노조의 경우는 소규모 조합의 응답비율이 약간 낮았기 때문에 조합원 100인 미만 조합이 43.7%, 100~299인 규모가 29.8%로서 300인 미만인 조합이 전체의 73.5%로서 노동부 조사에서 나타난 비율인 87.5%보다 12%포인트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 (2)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신규노조가 많다. 전체 조합에 대해서 보면 1989년 6월 30일 현재 노동부에 보고된 우리나라 단위노동조합 7,159개 가운데 1987년 6월말 이전에 설립된 노조는 34.4%인 2,461개, 7월 이후에 설립된 노조는 65.6%인 4,698개이다. 본조사에 응답한 노조의 경우를 보면 1987년 6월말 이전에 설립된 노조는 38.6%, 7월 이후에 설립된 노조는 61.4%였다. 이처럼 활동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한 신규노조가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다는 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경험이 없는 노동조합과 조합간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규노조가 운동경험을 쌓고, 합리적 노동운동이 정착되며 노사관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 (3) 조합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연령이나 근속년수가 짧다. 본조사에서 대상으로 한 노조조합원의 평균연령은 남자가 34.1세, 여자가 30.1세이며,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가 4.9년, 여자가 3.4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젊고 근속년수가 짧은 노동자로 구성된 것은 80년대 후반기 이후 3저 호황에 힘입어 많은 사업장이 신·증설되고 신규인력이 근대적 산업부문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4) 제조업 노조의 경우 생산직 중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유니온숍 적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무직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노조는 금속노련이 37.0%, 섬유노련이 43.7%, 화학·고무노련이 32.1%, 광산노련이 48.3%였다. 또 단체협약에 의해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는 노조를 살펴 보면 생산직근로자에 있어서는 금속노련은 31.6%, 섬유노련은 46.3%, 화학·고무노련은 21.0%, 광산노련은 51.9%에 이르지만 사무직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10.8%, 9.0%, 9.7%, 25.0%로서 매우 낮다. 이는 상용근로자 전체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가 99.8%이며, 직종 구분없이 68.7%의 노조가 유니온숍을 실시하는 일본 제조업 노동조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된다.

- (5) 제조업 노조 조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직근로자를 중심으로 보면 유니온숍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고, 조합원의 가입률도 상당히 높다. 가입 가능한 근로자 가운데서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낸 가입률은 금속노련이 89.8%, 섬유노련이 90.4%, 화학·고무노련이 85.9%, 광산노련이 94.1%로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입률이 90% 정도로 높다는 것은 회사내 가입 가능한 근로자 중에서 비조합원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1989년 6월 30일 현재 7,159개의 분석 가능한 노조중 55.1%의 노조에서 회사의 종업원이면서 노동조합 업무만을 보는 專任者를 1명 이상 두고 있다. 조합당 평균전임자수는 전체노조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0.98명, 전임자가 있는 노조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1.79명이다. 전임자당 평균조합원수는 전자의 경우가 238명, 후자의 경우가 197명이다. 일본의 경우 전임자(在籍專從)가 있는 노조가 전체의 13.0%밖에 안 되며, 노조당 평균전임자(在籍專從+離籍專從)수가 0.5명인 사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조는 매우 많은 전임자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7) 노조위원장의 인적 속성을 보면 평균연령 37세로서 연령이 20대인 노조가 13.4%, 30대가 55.5%, 40대가 24.2%, 50대가 6.9%를 차지하며 평균근속년수는 7.4년이다. 위원장의 학력은 고졸이 68%로서 가장 많으며 특히 금속, 섬유, 화학·고무 등의 제조업노련산하 노조는 75~79% 정도가 고졸의 학력 소지자이다. 현 노조위원장 취임전 노조내 지위를 보면 평조합원이었던 경우가 35.7%로서, 임원이었던 경우의 비율 34.4%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노조의 경우 위원장 취임전의 회사내 직위를 보면 생산직사원이었던 비율이 섬유노련 43.9%, 화학·고무노련 59.0%, 금속노련 69.9%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8) 회사의 현직 위원장에 대한 대우를 보면, 77.5%의 노조가 위원장 취임전 직위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계장·대리·과장 등 회사의 간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노조도 22.5%나 된다. 그리고 위원장 재임중에 회사에서 승진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3%, 전임위원장이 회사에 복귀할 때 승진 복귀한 경우가 전체복귀자(관련기업 근무나 퇴사 등은 제외)의 19.3%에 달하고 있었다.
- (9) 노조위원장 선거는 총회에서 직선하는 비율이 82.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간선에 의한 선거는 13.8%밖에 안 된다. 위원장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영향이 큰 순서대로 보면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시각차이, 이전 집행부 참여·불참여의 차이, 연령이나 근속년수 차이, 출신지역 차이, 근무부서 차이 등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 (10) 전임위원장이 있었던 노조에 대해서 전임위원장의 재임기간 분포를 보면 1년 미만인 노조가 32.1%, 1~2년인 노조가 27.1%, 2~3년 미만인 노조가 10.3%이며, 대부분의 노조가 규약상의 위원장 임기로 규정하고 있는 3년을 채운 노조는 30.5%밖에 안 된다. 전임위원장의 사퇴 이유는 임기전 자진사퇴가 45.6%, 불신임 19.7%, 임기만료 30.0%, 기

타 4.7%로서 자진사퇴나 불신임에 의한 사퇴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처럼 노조 집행부가 불안정하고 빈번하게 교체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앞에서 서술한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차이, 노조 집행부와 반집행부의 견해차이, 연령에 따른 세대간 인식차이 등의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조합원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나 퇴진압력으로 쉽게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1) 전임위원장의 현재 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원직급 복귀가 43.4%로서 가장 높고, 그밖에 퇴사 32.1%, 승진 복귀 10.4%, 외부노동단체 파견 4.1%, 관련기업 근무 2.9%, 기타 7.0%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퇴사자의 비율이 32.1%로서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전임위원장의 사퇴 이유가 불신임이나 임기전 사퇴 등으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난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되며, 따라서 현재의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반영한다.
- (12) 노동조합의 조합비 징수제도는 정률제가 86.8%로서 가장 높다. 조합비의 부과기준은 기본급기준이 49.5%로 가장 높고, 그 밖에 월급여 총액기준이 30.2%, 통상임금 14.1%이다. 조합비 징수비율은 1% 징수가 39.1%로서 가장 많고, 1.1~1.5% 징수가 30.5%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한다.
- (13)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조합원 1인당 평균조합비는 1989년 5월 현재 월평균 3,189원이며, 평균조합비는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낮다. 3,189원은 1989년 5월의 월평균 임금(월급여 총액기준) 47만 2,148원의 0.68%로 법에 허용된 상한선인 2%에 비해 훨씬 낮다. 1989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조합원이 약 180만명이므로, 이들이 조합원 1인당 월 3,189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면 한 달의 전체 조합비는 약 57억 4천만원, 연간 조합비 총액은 688억 8천만원에 달한다.
- (14)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체크오프(check-off) 실시 비율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일괄징수되는 비율이 90.0%, 협약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실시되는 노조가 7.6%로서, 합계 97.6%에 달한다.
- (15) 노동조합 가운데 어떤 명목이전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조는 50.8%, 적립하는 기금이 없다는 노조는 34.3%, 무응답인 노조는 14.8%이다. 기금을 적립하는 노조 중에서 기금 종류별 분포를 보면 파업·쟁의기금을 적립하는 노조가 53.4%, 후생기금 41.6%, 기타 목적의 기금이 31.0%이다. 노조당의 연간 기금적립액은 100만원~1,000만원 미만이 50.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100만원 미만의 45.2%이다.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액을 보면 100만원~1,000만원 미만이 50.9%, 100만원 미만이 40.2%이다.
- (16) 1988년의 경우 노동조합은 평균 3.4회의 총회와 5.7회의 대의원대회, 12.8회의 상무집행위원회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성안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로서 대의원대회를 뽑는 조합이 24.6%, 그 다음이 총회와 상무집행위원회로서 각각 19.6%와 17.2%이다. 이처럼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등의 대중집회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이 주로

성안된다는 것은 임금인상 요구안 작성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조합원에 대한 의견조사 등의 방법에 의거하여 요구안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 (17) 1988년에 노동조합이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을 보면 전혀 실시하지 않은 노조가 8.6%, 1회 실시가 16.5%, 2회 실시가 22.8%, 3회 실시가 15.6%, 4회 실시가 10.1%, 5회 실시가 5.8%, 6회 이상 실시가 20.5%로서 교육활동은 매우 활발함을 보이고 있다. 자체교육시 교육담당자는 해당노조의 간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78.0%, 연맹 간부가 29.5%, 인근 노조의 간부가 17.1%로 노조간부에 의한 교육이 주류를 이룬다.
- (18) 1988년의 경우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따로 한 경우는 79.0%, 같이한 경우는 21.0%로서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분리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섭에 참가하는 노동조합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임금교섭 형태는 기업별교섭 57.2%, 지역·업종별 공동교섭 27.8%, 공장·사업부별 교섭 15.0%로서 기업별교섭이 주종을 이룬다. 지역·업종별 공동교섭의 비중이 27.8%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택시노련, 자동차노련의 지역지부별 공동교섭 때문이다.
- (19) 노사간의 단체교섭에는 교섭위원이 선정되어 참여한다. 교섭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45.4%로 가장 많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경우가 28.8%, 상집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가 18.9%, 기타 회의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6.9%이다. 일반적으로 교섭위원은 의장단과(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장, 임금인상 요구안을 성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조합간부(주로 기획실장 또는 조사통계부장), 영향력이 큰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등이 선출된다.
- (20) 1988년까지 설립된 노조 974개를 대상으로 1988년의 파업여부를 알아 본 결과 24.0%인 234개 노조에서 파업이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파업성향을 보면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경남에 위치한 노조가 여타 지역보다, 1987년 7월 이후에 설립된 신규노조가 그 이전에 있었던 노조보다, 위원장이 미혼인 노조가 기혼인 노조보다, 재야노동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노조가 그렇지 않은 노조보다, 임금교섭 회수가 많은 노조가 적은 노조보다 파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1) 파업이 있는 노조의 파업발생 회수는 83.6%가 1회이며, 2회가 12.8%, 3회 이상이었던 노조도 3.5%가 된다. 파업의 지속기간은 5일 이하가 40.5%이며, 6~10일 이하 18.5%, 11일 이상이 40.9%, 31일 이상이 19.4%, 60일 이상의 장기파업을 경험한 노조도 4.3% (10개) 있었다. 파업지속기간은 대규모노조가 소규모노조보다, 재야노동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노조가 그렇지 않은 노조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 (22) 교섭위원이 합의한 임금교섭 결과에 대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인준투표를 하는가에 관해 알아 본 결과, 노조의 규약에 의해 찬반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노조가 18.1%,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에 찬반투표를 한 노조가 20.3%,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노

- 조가 61.7%였다. 찬반투표를 하는 비율은 재야노동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노조와 방위산업체 노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3) 위원장을 포함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전액 지불하는 경우가 83.4%이며, 회사는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노조가 일부 수당을 보충하는 경우가 8.1%, 기타 8.4%로서 전임자에 대한 급료는 사실상 회사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장등 노조전임자는 현장근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근무자가 받는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수당등 定額의 수당지급 형식이 38.3%, 초과근무시간 월 1~30시간 인정이 8.3%, 월 31~60시간의 초과근무 인정이 8.4%, 월 61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시간 인정이 6.1%에 이르며, 회사가 위원장의 초과근무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38.9%이다. 이는 종업원으로서 노조의 업무만을 보는 在籍專從者에 대한 임금을 조합에서 지급하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점이다.
- (24) 대부분의 노조는 사무실, 구내전화, 사무실내 집기, 게시판 등의 시설을 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노조 전용의 직통전화가 있는 경우 그 설치비용과 전화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39.1%에 달하고 있었다. 또 회사와의 사전 합의가 있으면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총회, 대의원대회, 상집회의, 각종 교육 등)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외부노동단체에 교육을 위해 출장가는 조합원의 출장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도 9.1%나 있을 만큼 노조는 회사로부터 많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었다.
- (25) 산업별 연맹에 의무금을 납부하는 노조는 88.6%,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조는 11.4%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납부비율은 조사대상 노조가 평균적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연맹에 대한 의무금 납부율은 이처럼 높게 나타나지만, 연맹지방조직에 대한 의무금 납부율은 66.2%, 노총의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의무금 납부율은 63.0%로서 이보다 낮다.
- (26) 재야노동단체에 대해 회비를 납부하는 노조는 84개로서 응답 노조의 7.3%이다. 재야노동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노조 중에서 연맹 또는 노총의 지방조직의무금과 재야노동단체 회비를 모두 납부하는 노조가 과반수인 52개(4.5%)이며, 오직 재야노동단체에만 회비를 납부하는 노조는 32개(2.8%)이다. 재야노동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노조의 비율은 규모가 작고 재야노동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일부 공단지역에 소재하며, 위원장이 미혼인 노조가 기혼인 노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7) 단위노동조합이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임금·상여금 인상활동(61.3%), 기업내 후생복지문제(52.2%), 교육·선전활동(35.1%), 노동조합 조직확대(32.9%), 근로시간 단축(32.2%),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문제(30.6%), 퇴직금·연금문제(23.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노조와 비교하면 한국의 단위노동조합은 기업내 후생복지문제(2위), 교육·선전활동(3위), 조직확대(4위) 등에 보다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하여 일본의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단축(2위), 퇴직금·연금문제(3위), 정년제 문

제(4위) 등에 보다 큰 중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 (28) 노조의 장래 중점활동사항으로 단위노동조합이 들고 있는 것은 임금·상여금 인상활동(47.9%), 퇴직금·연금문제(41.2%), 기업내 후생복지문제(39.1%), 근로시간 단축(36.8%), 경영참가 문제(35.4%), 주택·교육 등에 대한 회사의 지원요구(29.9%) 등의 순이다. 현재의 중점활동사항에 비해 퇴직금·연금문제, 경영참가 문제, 주택·교육 등에 대한 회사의 지원요구 등을 앞으로 중시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29)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대해 기대하는 주요 활동은 노동법등의 개정활동(55.3%), 노조의 조직·운영 지원활동(38.4%), 단체교섭 지원 및 노사대책활동(38.2%),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정책건의활동(37.4%) 등의 순이다.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활동과 노조운영, 사용자와의 교섭활동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상급단체에 대한 주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IV. 勞動組合의 發展을 위한 課題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앞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과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노총과 각 산업별 연맹에서 주장하듯이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로 전환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길게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왕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전제로, 연구에서 밝혀진 현상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노동조합이 발전해 가려면 對內的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對外的으로 活動 立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내적인 역량의 축적을 위해서는 ①조직내 민주주의 확립 ②집행부의 지도력 확립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인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③생산성향상에 대한 기여 ④합리적 절차와 건설적 해결을 지향하는 단체행동 ⑤노동조합의 자립성 확보 ⑥상급 노동조합과의 연대강화 ⑦국가 경제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 강화 ⑧시민운동으로부터의 노조에 대한 이해와 협조증진 등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직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절차를 존중하며,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평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상시 조합지도부와 평조합원과의 잦은 대화와 접촉을 통한 평조합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경우 1987년 이후 많은 조합에서 조합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채택하였으며,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빈번히 개최하는 등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치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조합간부 선거,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

니므로 일상적인 조합운영에서 집행부와 평조합원이 보다 긴밀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충처리활동의 확대, 평조합원에 대한 상담활동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조합 지도자와 집행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지도력 확립이란 면에서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조합원간의 운동노선을 둘러싼 대립, 세대간의 인식차, 출신지역에 따른 갈등 등이 혼재되어 걸핏하면 집행부를 어용으로 매도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이 발전하여 일부 조합원이 反執行部 組織을 조직하고 기존 집행부에 퇴진압력을 넣거나 불신임을 추진하기도 한다. 1987년 이후 많은 노조에서 집행부가 임기중에 교체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노조 내부의 갈등과 지도력 부재현상을 반영한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이처럼 자주 교체되어서는 노동조합의 운동역량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의 여론을 악화시키게 된다. 노동조합이 자신이 뽑은 지도자를 불신하며, 조합활동가가 서로 상대방을 어용이나 급진세력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일반 여론은 결국 조합활동가 전체를 매도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의 지도력 확립과 합리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조합원의 극단적 의견 확산을 억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견 종업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직사원과 하급 간부사원이 노조에 가입하고, 이들이 회사와 조합을 모두 고려하는 적극적인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조합은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협조하고 나아가 기업의 운영과 발전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종업원과 산업내 취업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기업이 몰락하거나 산업이 쇠퇴하면 노동조합도 몰락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당장의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조합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에도 기여하도록 활동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기업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조합 사무실과 집기의 제공, 전임자의 급료,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등은 기업이 명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많은 잠재적 비용이 따른다. 노동조합은 기업에 대해 노동조합의 존재가 이러한 비용부담을 능가할 만큼 생산에 대한 기여가 있음을 구체적 활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만 노동조합운동의 장기적인 발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미국의 노동조합도 파업등의 노사대립적 투쟁을 지양하고 노조간부가 職場生活向上運動(quality of working life : QWL) 등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 전환을 보이고 있다.⁴⁾ 그리고 대다수의 일본 사용자들이 노

4) Heckscher, C.C., "The New Unionism," *Basic Books, Inc., Chap. 6, Inc., 1988* 참조.

동조합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일본 노동조합이 노사협의제도, 직장간담회, 소집단 활동 등 기업과의 협조적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⁵⁾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넷째, 합리적인 운동방법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단체행동 관행을 정착시켜 가야 한다. 활동의 경험이 日淺하고 1987년 이후의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지만, 많은 노동조합이 制度化에 입각한 합리적인 목표 성취보다는 大衆動員戰略(mass mobilization strategy)에 입각한 勢誇示의 파업에 보다 중점을 두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중에 사업장 점거, 회사의 기물파괴 등의 파괴적 행위가 따르는 예도 흔하다. 이러한 불상사는 사업장내에서 파업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규정의 맹점에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파업을 결행한 노조집행부가 조합원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태로 보인다. 조합원의 저조한 참여와 파업이탈을 억지로 막기 위해서 사업장 점거가 이루어지며, 사업장 점거와 업무방해에 따른 노사간의 감정대립이 회사의 기물파괴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은 최후의 위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결코 敵에 대한 戰爭처럼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또 노동조합이 주장하듯이 회사의 기물은 사용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전체 종업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재산이다. 따라서 이를 파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선진국의 노동운동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파괴적 罷業은 사용자에 대해서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무모하게 이를 추진한 노조집행부의 퇴진과 구속, 노조에 대한 여론의 악화, 조합원의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의 증가로 노조와 그 간부에 대해서도 매우 큰 타격을 준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절제되고 합리적인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보다 성숙된 자세를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동조합은 물질적·정신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이 생산성향상 등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을 위한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과 협조해 가더라도, 언제나 기업의 요구에 종속되어 기업의 일개 노무관리부서와 같이 행동해서는 곤란하다. 노조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존립기반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운동역량을 견지하려면 기업과는 다른 물질적 기반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1차적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전임자에 대한 급료와 각종 개인적 우대조치를 점차 삭감시켜 나가고, 나아가서 일본의 在籍專從者처럼 노조간부는 재임기간중 기업에서는 휴직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떳떳할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소득저하에 대한 염려로 교섭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파업기금 등 각종 기금의 적립을 늘리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전임자제도와 이들에 대한 회사의 우대조치는 조합의 운영비 지출을 절약하고, 조합

5) 이에 대해서는 日本 労働省, 「勞使コミュニケーション調査報告」, 1984 참조.

간부의 활동을 지원케 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임자제도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기업경영을 압박할 만큼 과다한 전임자 요구,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 전임간부와 조합원의 불신 확대와 勞組간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인건비 지원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합비 지출이 절약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노동조합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관행으로서 노동조합의 입지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절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금적립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현재의 기업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업별조합은 기업의 노동조합조직과 연대를 강화하고 운동방향을 통일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산업별 연맹을 중심으로 한 연대와 지역별 노동조합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산업별 연맹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활동으로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대외통상마찰에 대한 노조측 대응방안의 마련,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 확대,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기업별노조 수준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지역단위 조직의 주요활동으로는 지역단위 레크리에이션 활동, 조합원의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 失職 조합원에 대한 지원과 직업훈련,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단위 활동도 단위노조 수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특히 조합의 활동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활동이 조합의 역량 신장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단위활동의 강화는 임기만료된 전임간부의 지속적인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 단위조합은 이러한 산업별 연맹과 지역단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노동조합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제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한 이상 국민경제 전반의 시각에서 참여·발언하며, 책임질 줄 아는 사회의 기간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오늘날의 근로자생활은 단지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수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주택·물가·교통 등에 대한 정부정책의 합리성 여하에 따라서도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부의 사회보장 확충과 각종 합리적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참여·발언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위노조 수준에서는 수행하기 곤란하고 각 산업별 연맹과 중앙조직인 한국노총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단위노동조합의 활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일부 단위노조가 연맹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한국노총과 그에 소속된 산업별 연맹에 비판적인 全勞協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분열·약화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낮은 맹비납부율로 상급단체들이 자금난과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상급단체를 통한 정책 참여와 정부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확보해 나가며, 나아가 勞·使·政간의 협조적 협의형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며 노동조합도 고용의 안정과 확대, 산업의 발전, 임금격차의 축소,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의 신장 등을 위한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가진 단위조합은 물가안정과 고용의 확보, 사회보장의 확충이라는 巨視的 정책요구만 제시할 뿐 이를 위해 필요한 노조측의 조치는 도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의 수행은 일종의 公共財이다. 公共財의 공급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협조와 양보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각 단위노조에서는 기업이 도산 위기에 빠지지 않는 한 협조와 양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으로서 노조나 그 간부만을 탓할 수만은 없다. 노조간부 중에서 이러한 고려에 따라 요구수준을 누그러뜨리려는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단위노조 수준에서는 그는 ‘御用’ 간부로 당장 타도의 대상이 될 지경이다.⁶⁾

따라서 앞으로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巨視的인 면에서 본 노조측의 합리적 행동(협조와 양보)이, 微視的인 단위노조 수준에서는 어용적 행동으로 매도되는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경제의 발전 없이는 노동조합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는 산업별 연맹과 한국노총의 역할과 지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이러한 방향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고, 여타 사회운동—예컨대 여성운동, 환경보호운동, 지식인 운동 등—을 위한 조직과 연대하여 시민운동의 한 부분으로 위치를 잡아 나가야 한다.

오늘날에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어 단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만으로 근로자생활의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생활의 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어, 처음으로 노동운동이 형성되던 19세기말~20세기 초반의 경우와는 달리, 유일한 진보적 사회운동이라는 노동운동의 의의는 많이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화 시대에 노동운동이 발전해 가려면 노동조합은 이러한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고 필요에 따라 통일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활동해 감으로써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의 광범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건실한 운동역량을 쌓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운동과 미래를 전망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重厚長大한 제품위주에서 輕薄短小한 제품의 생산을 위주로 하는 산업구조 변화, 사무전문직과 서비스직 등 비생산직근로자의 증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경제환경 변

6) 대우조선 노조의 전위원장이었던 양동생씨가 노조위원장을 사퇴하면서 “그동안 노조위원장 일을 해오며 노조간부는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동아일보』, 1989년 12월 28일자)고 말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인상을 주된 목표로 하고, 파업을 주된 무기로 하는 과거의 노동운동에서 노사간 협조와 경영참여, 고용의 안정과 조합원의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운동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아직 파업을 무기로 한 임금인상활동에 매달리는 전통적 노동운동에 집착해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사간의 교섭력이 대등해 질 때까지는 파업을 무기로 한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이러한 노동운동은 발전한 선진국 경제도 침체시킬 만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이러한 방향전환, 나아가 보다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와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식과 행동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7) Heckscher, C.C., 앞의 책, 참조.

우리나라 勞使紛糾의 産業別 發生性向과 持續期間의 特徵*

金 兌 基**

I. 序 論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약 3년 전 대규모 노사분규를 겪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짧은 기간 동안에 농업중심 사회에서 공업중심 사회로 전환되어 왔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나 노사분규에 관련된 통계나 관련 연구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미흡한 데서 반영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산업별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자료를 토대로 노사분규의 발생원인이나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제2장에서 1988년과 1989년에 발생한 전체 노사분규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별 발생건수, 발생빈도, 지속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 노사분규 발생정도의 산업별 차이에 대한 이유를 계량분석 결과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출판예정인 윤봉준과 김태기의 「勞使紛糾研究」에 나오는 통계와 연구결과를 이 글의 취지에 맞게 부분적으로 요약하였다는 것을 밝혀 둔다.

**김태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II. 1988~89년도 勞使紛糾의 産業別 發生頻度와 平均 持續期間

1. 連帶勞使紛糾

〈표 1〉에서 보듯이 1988년도에는 1,873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24건의 연대노사분규에 참가한 528개 업체를 제외한 1,345건은 단일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1989년에 1,616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11건의 연대노사분규에 311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대노사분규는 공동교섭을 하고 있는 운수업에서 발생하였다. 연대노사분규와 단일사업장에서 발생한 단일노사분규를 전부 합한 전체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은 1988년에는 14.0일 이었다가 1989년에는 19.9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대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은 1988년에는 20.5일, 1989년에는 24.8일이었는데 반해 단일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은 각각 13.0일과 19.0일로 연대노사분규가 단일노사분규의 지속기간보다 길었다.

연대노사분규가 단일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의 지속기간보다 긴 이유는 노사분규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이해관계가 내부적으로 쉽게 조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일단 발생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대표가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 産業別 勞使紛糾 發生頻度

단일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1989년 12월말 기준의 산업별 노동조합 숫자로

〈표 1〉 1988~89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지속기간

(단위: 개, 일)

	1988		1989	
	발생업체수	평균지속기간	발생업체수	평균지속기간
단일노사분규	1,345	13.0	1,305	19.0
연대노사분규	528(24건)	20.5	298(11건)	24.8
전 체	1,873	14.0	1,616	19.9

〈표 2〉 산업별 노사분규 발생빈도(1988년) - 단일 노사분규

(단위: 건)

	1988					1989				
	노조유무별 건수			발생빈도		노조유무별 건수			발생빈도	
	없음	있음	계	(A) ¹⁾	(B) ²⁾	없음	있음	계	(A) ¹⁾	(B) ²⁾
농림어업	2	0	2	0	0.1	0	2	2	4.9	0.1
광업	14	29	43	14.1	3.6	14	54	68	26.3	6.7
제조업	223	579	802	19.4	1.5	74	832	906	27.9	1.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	1	1	0.2	0.3	0	4	4	7.5	1.2
건설업	3	5	8	5.0	0.2	4	7	11	6.9	0.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	12	18	4.7	0.1	4	15	19	5.9	0.1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	290	308	14.2	4.7	3	146	149	7.1	2.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7	56	63	6.4	0.5	0	62	62	7.2	0.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	91	100	14.7	0.9	5	79	84	12.7	0.7
전체	282	1,063	1,345	14.2	1.2	104	1,201	1,305	16.0	1.1

주: 1) A=분규건수/노동조합수

2) B=분규건수/사업체수

여기서 노동조합 숫자는 1989년 12월말 기준이며 사업체 숫자는 1988년과 1989년 모두 4월말 기준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조직현황 기초통계」,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나는 노사분규 발생빈도는(표 2의 A에 해당됨) 1988년도와 1989년도 모두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광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운수업의 순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노동조합의 설립 유무에 관계없이 각 산업에 속하는 5인 이상의 사업체수로 나누었을 때 발생빈도는(표 2의 B에 해당됨) 광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과 운수업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A와 B의 결과를 비교하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일단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사분규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産業別 勞使紛糾 持續期間

〈표 3〉에서 보듯이, 1988년에는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한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이 평균 17.7일로 가장 길었고 건설업이 4.4일로 가장 짧았다. 1989년에도 1988년과 마찬가지로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29.4일로 가장 길었고 광업이 10.7일로 가장 짧았다. 반면에 노사분규의 발생빈도가 높은 제조업의 노사분규 지속기

〈표 3〉 1988~89년의 산업별 노사분규 평균지속기간

(단위 : 일)

	1988	1989
농 립 어 업	9.5(2)	20.5(2)
광 업	17.7(43)	10.7(68)
제 조 업	13.0(802)	19.9(906)
전 기 · 가 스 및 수 도 사 업	3.0(1)	27.8(4)
건 설 업	4.4(8)	22.2(11)
도 소 매 및 음 식 숙 박 업	12.6(18)	21.9(19)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16.0(308)	21.5(149)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7.7(63)	29.4(62)
사 회 및 개 인 서 비 스 업	15.6(100)	17.0(84)
전 체	13.0(1,345)	19.0(1,305)

주 : () 안의 숫자는 노사분규건수.

간은 전체 노사분규의 평균지속기간과 비슷했다.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사무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직근로자의 노사분규의 성향은 발생빈도는 많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4. 製造業 業種別 勞使紛糾 發生頻度

노사분규를 발생건수와 발생빈도로 볼 때 제조업의 경우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표 4〉에서 보듯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383)에서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156건과 215건을 기록하여 가장 많았다. 조립금속제조업(381)이 각각 112건과 121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운수장비제조업(384)이 각각 81건과 85건으로 세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기계제조업(382)이 각각 78건과 60건, 섬유제조업(321)이 각각 52건과 59건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장류제조업(312), 음료품제조업(313), 담배제조업(314), 석유정제업(353)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354), 도기·자기 및 토기제품제조업(361)은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1988년과 1989년 모두 몇 건에 지나지 않았다.

노사분규의 발생건수를 각 업종에 속하는 5인 이상 사업체 숫자를 가지고 나누었을 때 노사분규 발생빈도는 1988년의 경우 운수장비제조업(38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철강산업(371),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362),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383)의 순으로 나타났다. 1989년의 경우에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36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철강산업(371), 운수장비제조업(384),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383)으로 나타났다. 1988년과 1989년 모두 노

〈표 4〉 1988~89년도 제조업 업종별·노조유무별 노사분규

	1988				1989			
	발생건수			발생빈도	발생건수			발생빈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311. 식료품	6	21	27	1.12	1	18	19	0.75
312. 장 류	0	1	1	—	0	2	2	—
313. 음료품	1	1	2	0.48	1	1	2	0.51
314. 담 배	0	2	2	0.48	1	0	1	3.57
321. 섬 유	21	31	52	0.69	8	51	59	0.77
322. 의 복	6	19	25	0.43	7	26	33	0.61
323.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3	8	11	0.87	1	3	4	0.31
324. 신 발	15	2	17	1.84	3	23	26	2.90
331. 나무 및 콜크제품	4	6	10	0.64	2	2	4	0.24
332. 가구 및 장치물	3	10	13	1.88	1	8	9	1.05
341. 종이 및 종이제품	3	9	12	0.84	1	11	12	0.79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3	18	21	0.75	1	33	34	1.08
351. 산업용 화학물	4	12	16	1.67	0	10	10	1.24
352. 기타 화학제품	5	15	20	1.81	3	35	38	3.02
353. 석유정제	—	—	—	—	0	1	1	1.33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1	3	4	1.33	1	0	1	0.32
355. 고무제품	3	8	11	1.24	1	10	11	1.24
356. 플라스틱제품	5	5	10	0.32	3	16	19	0.54
361. 도기·자기 및 토기	1	2	3	1.40	1	8	9	3.35
362. 유리 및 유리제품	1	8	9	3.61	2	12	14	5.19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6	28	34	2.13	2	17	19	1.00
371. 철 강	3	13	16	4.07	4	18	22	5.05
372. 비철금속	4	5	9	2.16	2	10	12	2.73
381. 조립금속제품	29	84	113	1.92	11	110	121	1.79
382. 기 계	22	56	78	1.41	5	55	60	0.91
383. 전기 및 전자기기	39	117	156	3.02	6	209	215	3.63
384. 운수장비	14	67	81	4.75	3	82	85	4.88
385.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비	6	7	13	1.73	0	22	22	2.63
390. 기 타	15	21	36	1.42	3	38	41	1.49
전 체	223	579	802		74	832	906	

주: 발생빈도=분규건수/사업체수.

〈표 5〉 1988~1989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지속기간

(단위: 일, 개)

	1988		1989	
	평균지속기간	해당업체수	평균지속기간	해당업체수
311. 식료품	10.11	27	12.68	19
312. 장 류	14.00	1	5.50	2
313. 음료품	2.50	2	3.50	2
314. 담 배	21.50	2	49.00	1
321. 섬 유	10.28	50	16.45	56
322. 의 복	10.68	25	15.70	33
323.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16.64	11	6.00	4
324. 신 발	6.94	17	22.16	26
331. 나무 및 콜크제품	5.20	10	5.75	4
332. 가구 및 장치물	11.54	13	35.88	9
341. 종이 및 종이제품	8.17	12	24.17	12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13.43	21	29.32	34
351. 산업용 화학물	12.06	16	32.10	10
352. 기타 화학제품	17.30	20	18.19	37
353. 석유정제	—	—	5.00	1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4.25	4	6.00	1
355. 고무제품	14.45	11	18.00	11
356. 플라스틱제품	9.30	10	8.37	19
361. 도기·자기 및 토기	23.33	3	20.11	9
362. 유리 및 유리제품	7.56	9	6.71	14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9.88	34	15.05	19
371. 철 강	10.19	16	12.91	22
372. 비철금속	10.38	8	17.58	12
381. 조립금속제품	13.52	112	17.12	121
382. 기 계	16.13	78	23.08	60
383. 전기 및 전자기기	14.51	156	25.73	121
384. 운수장비	12.04	81	13.54	85
385.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비	32.54	13	22.36	22
390. 기 타	11.67	36	22.00	40
전 체		806		906

사분규 발생빈도가 낮은 산업으로는 노사분규의 발생건수가 몇 건에 지나지 않는 장류제조업(312), 음료품제조업(313), 담배제조업(314), 석유정제업(353),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354), 이외에 의복제조업(322),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331)을 들 수 있다.

5. 製造業 業種別 勞使紛糾 持續期間

1988년과 1989년에 발생한 제조업내 각 업종별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1988년의 경우 의료·광학·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385)의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도기·자기·토기제조업(361), 담배제조업(314) 순이었다. 1989년의 경우 담배제조업(314)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332),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351) 순이었다.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이 가장 짧았던 산업은 1988년의 경우 음료품제조업이었고 그 다음으로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331),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354), 신발제조업(324) 순이었다. 1989년의 경우에도 음료품제조업(313)이 가장 짧았고, 그 다음으로 석유정제제조업(353), 장류제조업(312),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313)이었다.

<표 4>, <표 5>를 이용한 노사분규 지속기간과 노사분규 발생빈도 사이의 관계를 결론짓기는 힘들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도 많고 발생빈도도 높은 전기·전자기기제조업(383), 기계제조업(382)은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이 비교적 길지만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362)은 반대로 비교적 짧다. 또한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발생빈도가 낮은 담배제조업(314)과 음료품제조업(313)의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전자는 상당히 길지만 후자는 짧다.

III. 製造業 勞使紛糾의 發生頻度와 持續期間 決定要因에 대한 計量分析 結果

1. 發生頻度

제조업내 각 업종별로 노사분규 발생빈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時系列·橫斷面(time-series and cross section) 模型을 가지고 계량분석하였다. 1988년과 1989년도 노사분규의 발생빈도를 알 수 있는 3단위로 분류된 제조업 업종은 28개였고 이 중에서 독립변수들의 통계를 구할 수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標本(sample)이 되는 업종의 수는 26개가 된다. 각 표본에 대해서 2년 동안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觀測數(observation)는 52개에 달하게 되었다.

업종별 노사분규 발생빈도를 종속변수로 놓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기준은 단체교섭을 경

험한 업체 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통계가 없고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3단위 산업분류로 파악한 통계도 없기 때문에 각 업종별 5인 이상의 사업체수를 잡았다. 노사분규의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로서는 생산기술의 특징을 보여 주는 기계장치 의존도, 기업간의 경쟁도를 보여 주는 시장집중도, 생산물시장에서 경기상태를 보여 주는 매출액 증가율, 나이가 많은 年長勤勞者가 차지하는 비중, 산업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제조업 평균과 비교한 임금수준, 재고 및 출하 변동률을 잡았다.¹⁾

각 독립변수들의 통계와 그 출처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증가율은 당기매출 총매출액을 전체 총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숫자는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變數로 사용되었다. 기계장치 의존도는 기계장치금액을 노무비로 나눈 숫자에 해당한다. 매출액, 기계장치금액, 노무비통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고변동률은 월별 재고지수의 표준편차를 평균 재고지수로 나눈 값을 월별 생산지수의 표준편차를 평균생산지수로 나눈 값으로 나눈 숫자이다. 출하변동률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했는데 재고변동률이나 출하변동률을 생산액 변동률로 다시 나눈 이유는 1988년과 1989년도 재고와 출하지수가 노사분규의 영향을 받아 변화폭이 커지게 되었으므로 노사분규가 재고와 출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고지수, 월별 출하지수, 월별 생산지수는 경제기획원의 『한국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年長勤勞者의 비율은 40~49세 근로자의 수가 총근로자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규모별 임금격차는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총액을 10~29인 기업의 임금총액으로 나눈 것에 해당한다. 상대적 임금수준은 산업간 임금격차를 보여 주고 있는데 어떤 산업의 평균임금을 제조업 전체 평균임금으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근로자수와 임금에 관한 통계는 『한국통계연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이 노사분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비용에서 기계등 고정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노사분규 손실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조건이라면 기계장치금액이 높은 산업일수록 노사분규 행위는 약하게 된다.

둘째, 생산물시장이 경쟁적일수록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을 경쟁기업이 메꾸기 쉽기 때문에 분규업체는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일조건이라면 시장집중도가 낮은 산업에서 노사분규 행위는 약하게 된다.

셋째, 어떤 산업의 경기가 나쁠수록 매출액 신장은 어렵게 되고 이때 노동조합은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이러한 조건하에 사용자가 가지는 기업정보는 쉽게 근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노동조합은 노사분규를 일으켜서 얻을 수 있는 實益이 작아진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매출액 증가율이 작은 산업에서 노사분규 행위는 약하게 나타난다.

1) 이러한 변수들은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성향에 대한 일반적 특징, 노사분규에 대한 제이론들과 외국의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택되었다. 노사분규에 대한 제이론들은 『紛爭調整의 經濟學』(김태기)에 소개되어 있음.

넷째, 한 산업 내에 근속년수가 긴 근로자들일수록 기업의 경영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고 사용자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처한 여건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 또한 근속년수가 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부터 얻는 만족도가 근속년수가 짧은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年長勤勞者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분쟁의 소지가 줄고 노사분규는 약하게 된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비교가 되는 다른 기업이나 산업의 임금수준이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산업 내에서 존재하는 사업체들 사이에서 임금격차가 작고 임금수준이 서로 비슷할 때 노사분규의 소지는 작아지게 된다.

여섯째, 여러 산업들 사이에서 한 산업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부터 얻는 만족도는 커지게 되고 반면에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산업은 수익성도 낮으므로 사용자들의 지불능력은 떨어져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평균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일수록 노사분규가 많아지게 된다.

일곱째, 어떤 산업이 在庫를 쉽게 조절할 수 있을 때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을 줄일 수 있으며 반대로 출하량의 변동이 작아 생산의 흐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때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쉽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재고 변동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출하변동률이 낮은 산업일수록 노사분규는 강하게 나타난다.

〈표 7〉의 A는 산업별 노사분규 발생빈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각 변수들의 파라미터(parameter)에 대한 추정치를 정리하고 있다.

〈표 7〉 노사분규 발생기간과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추정

변 수	발생빈도 추정치(A)	지속기간 추정치(B)
截片	-3.75(0.36)	3.74(0.38)
기계장치의존도	-0.12(0.31)	-0.009(0.32)
시장집중도	1.19(2.01)	0.27(2.65)
매출액증가율	0.05(0.06)	0.25(0.11)
상대적 임금수준	-0.61(1.49)	-1.03(0.51)*
규모별 임금격차	0.61(0.30)*	0.38(0.21)*
年長근로자 비율	-0.16(0.05)*	0.11(0.009)
재고변동률	-0.33(0.22)	-0.009(0.23)
출하변동률	0.30(0.21)	0.10(0.21)
R ²	0.34	0.30

주: 1) () 안은 t 값임.

2) *은 5% 수준의 유의도를 만족함.

표본(sample) 숫자에 비교하여 관측수(observation)가 작기 때문에 R^2 값은 높지 않으며 8개 중에서 2개 변수를 제외하고는 파라미터의 추정치에 대한 통계적 신뢰도(significance level)도 크지는 않다. 그러나 8개 중에서 2개 변수를 제외하고는 추정치의 부호는 예상했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年長勤勞者가 차지하는 비율과 산업내 기업규모별 賃金隔差가 다른 설명변수보다 뚜렷하게 노사분규 발생빈도의 산업별 격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의 예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특이성을 말해 주는 결과로써 勤勞者 사이의 의식이 상당히 다르고 인구분포상 연소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과 정부의 지원을 대기업에 집중시킨 산업정책이 기업규모별 수익성의 격차를 확대시켜 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를 설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²⁾

기계장치 의존도, 매출액 증가율, 시장집중도, 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산업별 노사분규 성향의 차이에 예상했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의 노사분규 성향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재고변동률과 출하변동률은 예상했던 것과 반대방향으로 노사분규의 발생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재고변동률과 출하변동률 변수의 통계상의 문제이고 둘째, 1988년과 1989년에 노사관계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기업이 생산결정에서 합리성을 살리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셋째,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이 노사분규에 대비한 생산조절의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持續期間

<표 7>의 B는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제조업내 각 업종별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의 차이는 노사분규의 발생빈도를 설명하는 변수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적 유의도는 낮지만, 노사분규 발생빈도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연장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것은 임금수준이 높은 연장근로자들은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이 연소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이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일반적으로 노사분규의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은 경기에 대해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일단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노사분규가 길어지는 데 따른 추가비용이 경기가 나쁠 때는 작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커지기 때문이었다. 통계상의 유의도가 낮기 때문에 관측수가 많아지면 다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경기가 좋을 때 길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나라 노사분규 성향의 또 다른 특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2) 산업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은 「勞使關係와 政府」(김태기) 참조.

建設勞動市場의 現況과 諸問題點*

李 泰 憲**

신도시건설 계획과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 작년 중반 이후 건설경기의 활황에 따라 건설업은 1989년 15.4%, 1990년 1/4분기 39.1%라는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업 호황에 힘입어 건설업부문의 취업과 고용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建設物量으로 인하여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한 건설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높은 賃金上昇, 不實工事, 工期遲延, 産災增加 등 각종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I. 建設業 就業 및 雇傭의 堅實한 增加

건설부문의 취업 및 고용시장 동향을 나타내는 통계지수로는 경제기획원의 『경제활동인구연보』와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그리고 기타 『고용전망조사보고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지수상으로 볼 때 1989년, 1990년 1/4분기중 건설업의 취업·고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경제기획원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의 산업별 취업자수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1989년과 1990년 1/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2.5% 감소하여 작년 4/4분기 이후 취업자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하여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동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11.3%, 18.7%씩 증가함으로써 그 증가세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의 건설업부문 취업 증가를 직종별로 살펴 보면 기능공 및 단순노무자가 12.0%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전체취업 증가의 88%를 차지하였고, 전문·기술, 행정, 관리, 사무,

*본고의 작성에 훌륭한 조언을 해주신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영기 연구위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표 1〉 건설업 상용고용과 노동이동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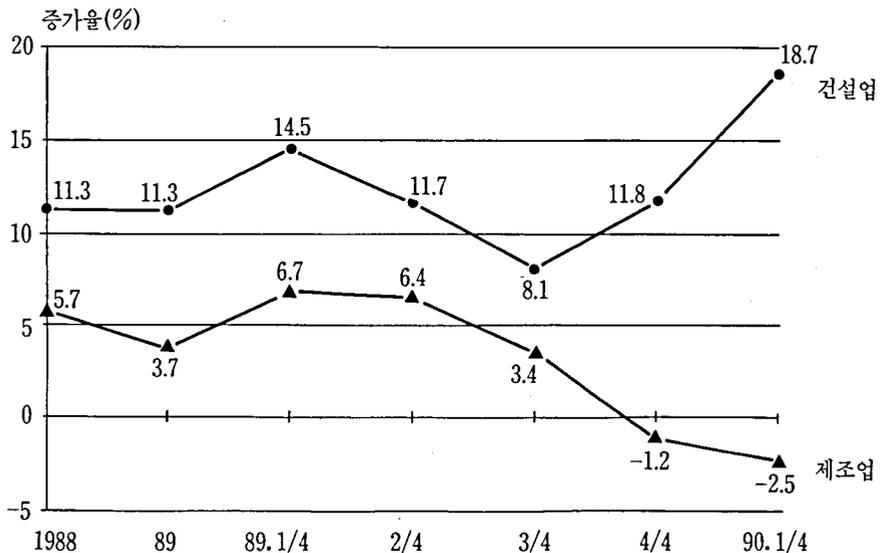
	1988	1989	1989				1990 1/4
			1/4	2/4	3/4	4/4	
상용고용자 (증가율)	80,171 (-1.9)	83,335 (3.9)	81,094 (0.5)	83,256 (3.4)	84,096 (5.8)	84,894 (5.9)	85,934 (6.0)
입직률	2.8	3.31	3.89	3.54	3.03	2.82	4.03
이직률	2.8	2.89	3.16	3.22	2.65	2.53	3.32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기타직은 8.3% 증가하였으나 전체취업 증가의 1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취업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이 전체취업 증가의 70%를 차지하여 젊은층 신규노동력의 증가보다는 퇴장했던 건설노동력이나 또는 단순기능의 중·장년 및 여자노동력이 취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취업 증가추세는 상용고용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상용고용 추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1989년과 1990년 1/4분기 제조업의 상용고용이 각각 3.9%, 4.9% 감소한 데 비하여 건설업은 동기에 각각 3.9%, 6.0% 증가함으로써 198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림 1) 건설업취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구」, 각년도.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상황을 보여 주는 입·이직률 현황을 보아도 1988년 이후 타업종에 비해 이직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1989년에는 입직률 3.31, 이직률 2.89를 기록함으로써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입직률이 이직률을 초과하였고 1990년 1/4분기에도 입직률 4.03, 이직률 3.32를 기록하여 호황에 따른 지속적인 고용증가세를 반영하고 있다.

II. 技能人力 不足의 深化

국토개발연구원이 추계한 건설업 노동력 수급전망을 보면 1990년에는 전직종에서 약 1만명(기능직 9천명), 1992년에는 약 127천명(기능직 103천명), 1996년에는 약 434천명(기능직 349천명)의 건설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기능직 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부에서 매년 3월말 기준으로 상용고용 10인 이상 표본 사업체를 조사한 「고용전망조사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직종의 인원 부족률은 1988년 1.39%에서 1989년에는 2.07%로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생산직(기능직) 관련 근로자의 부족률이 현저하여 1988년 3.40%, 1989년 4.3%를 나타내었다.

특히 이들 생산직 관련 근로자들을 기능 정도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미숙련근로자의 부족률이 12.2%나 되어 신규노동력의 건설업종취업 기피현상의 심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나 일용근로자들까지 포함한다면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인원 부족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 需給不一致로 인한 賃金 急上昇

상용고용 10인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상의 업종별 상용근로자 월 임금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1989년과 199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29.0%, 27.1% 상승한 데 비하여 건설업은 동기에 각각 17.8%, 24.5% 상승하여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업의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

〈표 2〉 건설업의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원, 일, 시간)

		일 당 임 금 액		월 평 균 근로일수	일 평 균 실근로시간	임금격차 토공=100.0
평 균		21,582	(37.5)	20.1	9.3	-
일 반 직 종	토 공	19,372	(38.4)	21.3	9.1	100.0
	중 작 업 원	19,073	(43.4)	21.2	8.9	98.5
	경 작 업 원 (남)	15,288	(28.3)	20.0	9.4	78.9
	경 작 업 원 (여)	10,506	(27.9)	20.7	9.3	54.2
기 능 직	큰 크 리 트 공	22,644	(42.8)	16.8	9.3	116.9
	목 공	26,823	(47.5)	18.5	9.3	138.5
	전 기 공	19,758	(30.2)	20.3	8.9	102.0
	비 계 공	25,226	(38.7)	17.1	9.7	130.2
	석 공	24,828	(32.4)	17.7	8.7	128.2
	미 장 공	25,897	(37.3)	18.5	9.0	133.7
	배 관 공	22,278	(43.4)	22.4	9.3	115.0
	도 장 공	22,129	(29.9)	19.2	9.2	114.2
	화물자동차운전사	15,651	(16.3)	25.3	8.9	80.8
	판 금 공	21,333	(50.9)	22.1	10.2	109.6
	용 접 공	22,392	(30.5)	23.1	9.9	115.6
	기 계 운 전 공	21,467	(27.0)	23.1	10.6	110.8
	철 근 공	25,644	(42.4)	17.0	9.2	132.4
	철 골 공	22,701	(38.3)	22.6	10.4	117.2
	굴 진 · 발 파 공	22,389	(25.3)	22.0	9.8	115.6
	공	타 일 공	25,722	(40.5)	15.8	8.8
벽 돌 공		26,109	(37.7)	17.3	9.0	134.8
다 듬 공		25,359	(37.7)	15.8	9.4	130.9
형 틀 공		27,181	(30.1)	20.2	9.4	140.3
건 구 공		24,464	(49.7)	13.8	8.9	126.3
지 붕 잇 기 공		28,692	(67.1)	20.6	8.6	148.1
잠 함 토 공		27,207	(9.8)	19.9	8.3	140.4
착 정 공		15,577	(22.6)	24.3	8.2	80.4
직 장		19,379	(22.4)	27.0	9.0	100.0
각 종 건 습		15,871	(32.3)	23.1	9.2	82.0

주: 1) 1989년 8월을 조사시점으로 함.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옥외근로자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1989.

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고용구조상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에 관한 이용 가능한 최근의 공식 통계는 1989년 8월을 조사시점으로 한 『옥외근로자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상용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1989년 8월중 상용·일용근로자를 망라한 건설업의 근로자 1인 일당 평균임금액은 21,58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7.5%의 임금상승률은 동기간중 일일평균근로시간이 1.1% 늘었던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모든 업종중 가장 높은 것이라 하겠다.

임금상승률을 직종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일반직종이 20~40% 내외, 기능직종이 15~60% 내외 등으로 직종간 큰 폭의 상승차를 보였는데 콘크리트공(42.8%), 목공(47.5%), 배관공(43.4%), 판금공(50.9%), 철근공(42.4%), 타일공(40.5%), 건구공(49.7%), 지붕잇기공(67.1%) 등의 직종이 특히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작년 중반 이후 본격적인 활황 국면에 들어갔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상용 고용 1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와 산업에 따른 추가임금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중의 노임은 이보다 훨씬 더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建設人力 不足의 諸要因

건설업부문의 기능인력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건설업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그 주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1989년의 10인 이상 사업장조사에 나타난 상용근로자수와 경제기획원의 가계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수를 대비해 보면 제조업은 43.6%가 1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인데 비해 건설업은 7.3%에 불과하여 건설업에는 10인 미만의 영세하도급업체가 많을 뿐 아니라 타업종에 비해 비상용고용, 즉 일용 및 임시직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10인 이상 사업장 조사통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건설업 전체 상용고용자중 노무직(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4%(제조업 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용직·임시직 중심의 고용구조는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며 계절변동이 심한 특성으로 인하여 기능인력의 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공사체제도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분업체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

동공급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들은 연간 임금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퇴직금을 비롯한 기타 제도적이거나 관행상 인정되고 있는 복리후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급격한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들에 비해 총보상개념으로 볼 때 훨씬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평생소득(Lifetime income)개념으로 볼 때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불안한 취업구조가 낮은 연평균소득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낳고 이것이 건설업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설인력조차도 장기적인 건설업부문 취업을 기피하여 전직이 많고 일반적으로 타산업에 비하여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인력난의 두번째 요인으로는 열악한 작업조건을 들 수 있다. 건설현장은 제조업의 공장 근로나 광업의 갱내작업에 비하여 옥외근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근대산업부문 중 가장 높은 노동강도가 요구될 뿐 아니라 산업재해의 위험도 상당히 큰 편이어서 직종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로자들일수록 건설직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강도를 각 직종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수가 없지만 근로자들이 흔히 준거로 삼고 있는 경험치에 의하면 흔히 강도가 가장 높다고 거론되는 광산노동보다 건설현장의 노동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높은 노동강도는 근대산업부문 중 건설현장의 기계화·자동화 정도가 타 산업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1988년의 경우 건설업의 노동장비율은 광업의 25.2%, 제조업의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노동강도, 낮은 노동장비율의 결과로 건설현장은 또한 재해가 빈번한 곳으로 대표되는 데 특히 금년 들어와서는 건설물량의 폭주와 인력부족으로 산재사고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금년 1/4분기에 발생한 건설업 산재는 6,804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7.4% 증가하여 전체 산재증가율 7.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140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569명)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년동기 산재사망자 68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올해 들어 산재사고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는 정부측의 합리적인 중·장기 기능인력수급정책의 부재도 건설기능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최근 겪고 있는 인력난은 성급한 주택건설계획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건설기능공 양성정책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중동건설 경기 이후 공공, 사내, 인정직업훈련원 등에서 양성되는 건설기능공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정부의 합리적인 인력수급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기능인력의 정책적 양성을 도외시켰던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관련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업체들의 자체기능공 양성의무비율이 현재 총인건비의 0.26%로 외국에 비해 낮은 뿐 아니라 그나마 기능공을 양성하는 대신 훈련분담금을 납부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었음에도 가능한 정책적 제재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최근의

인력난으로 연결된다 하겠다.

이같이 정부의 기능공 양성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데다가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관행화되어 왔던 전통적인 기능공 양성방식 즉, 도제체제도 신규인력의 유입이 뜸해지면서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경제기획원의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에 따르면 건설업부문 전체 취업자중 40세 이상 취업자가 47.9%인데 비해 제조업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인 취업자비중이 25%에 불과하다(표 3 참조). 이것은 농업부문에 이어 건설부문에서도 노동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신규노동력의 유입이 많지 않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최근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일반적으로 향상되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취업기회가 확대된 데 반해 신규노동력 공급의 풀(pool)역할을 해왔던 농촌유휴인력이 고갈되었으며 도시비공식부문에서조차 과소비풍조와 더불어 소비성 서비스부문이 팽창되면서 무기능·비숙련서비스직의 고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고 굶은 일로 대표되는 건설기능직에의 신규인력유입이 뜸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도 있다.

넷째는 건설기능인력의 비교적 낮은 공급탄력성을 최근 인력난의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건설기능공은 일정한 기능습득 또는 숙련기간이 필요하므로 수요 급증과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공급탄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단기간내의 급속한 수요 증대에 비해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잔업 및 휴일

〈표 3〉 연령별 취업자 구성

(단위: 천명, %)

	제 조 업		건 설 업	
	취업자수	구 성 비	취업자수	구 성 비
총 수	4,667	100.0	1,024	100.0
15 ~ 19 세	342	7.3	15	1.5
20 ~ 24 세	769	16.5	56	5.5
25 ~ 29 세	994	21.3	127	12.4
30 ~ 34 세	837	17.9	176	17.2
35 ~ 39 세	560	12.0	162	15.8
40 ~ 44 세	437	9.4	141	13.8
45 ~ 49 세	320	6.9	140	13.7
50 ~ 54 세	219	4.7	118	11.5
55 ~ 59 세	109	2.3	58	5.7
60 세 이상	81	1.7	33	3.2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9.

특근 기피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감소추세도 인력부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要約 및 結語

주택가격의 안정과 근로자들의 실질생활향상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약 2/3 가량이 무주택자라는 한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최근 폭등추세를 보였던 집세 동향은 근로자들의 실질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기에 대단위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과정이다. 건설인력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려 하였던 것도 우리 경제의 커다란 당면과제로 대두한 주택건설 촉진이 라는 큰 테두리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하겠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지가상승문제도 있겠으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필요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문제라 하겠다. 계획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력난으로 벌써 건설인력의 임금이 급등함으로써 건설단가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주택건설계획 자체가 지연될 우려조차 낳고 있다. 또한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건설현장에 새로 불러 들이고 있는 40세 이상의 미숙련 고령 노동력과 여자근로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재해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분석하였던 바와 같이 건설인력난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건설업에서의 불안정한 고용관행,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조건, 기능인력양성정책과 건설기능직의 비탄력적 공급구조 등 어느 하나도 단기적으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극심한 인력난과 이로 인한 노임단가 급등을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가 외국인력 수입방안이다. 실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기술연수명목으로 외국인력의 불법채용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력의 노임단가가 현재 국내노임단가의 1/3 수준이라는 점과 부족한 일손을 우선 메울 수 있다는 매력으로 일반기업에서 이들의 본격적인 수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적 시각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없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우선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경우 건설업체들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연히 취하여야 할 기술개발, 자동화공법 개발 및 기술인력훈련 등을 등한히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건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건설업체들의 자구노력이며 국민경제 전체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당면 과제의 해결을 외국인력수입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건설업의 장

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구유럽에서 1970년대에 경험하였던 수입노동자(guest workers)의 사회적 문제를 정부와 사회전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을 볼 때 아직 전근대적이고 비생산적인 소위 도시비공식부문(주로 최종소비형서비스업)에 불완전 취업자 내지는 잠재실업자가 온존하고 있는 상태를 감안할 때 단기적인 공급애로를 풀기 위하여 외국인력수입을 허용하기보다는 건설기업체들이 기술투자와 동시에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라 보여진다.

이같은 취지에서 최근 건설기능인력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내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 보여진다. 특히 사내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내훈련의무 비율을 현행 0.26%에서 1992년까지 연차적으로 0.6%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훈련유인책으로 건설도급한도액 책정과 우수건설업체지정에서 기능인력양성 실적을 반영하기로 할 예정이며 직업훈련비의 법인세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미 공급과잉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만이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밖에도 건설업의 고용불안정성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종의 특성상 기업이 소정 기능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하면서 직업의 안정성과 상시고용이 누리는 각종 법적복지보장과 관행상 인정되는 상여금 등의 혜택 등을 누리게 하는 방안으로는 예컨대 건설기능인력 풀관리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 가능성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분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重要勞動判例

“중요노동판례”는 법원, 노동위원회의 판례 중 새롭고 주목될 만한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사건개요와 판결(판정·결정) 요지를 분리하여 실었다. 되도록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되 사례마다 독자적인 제목하에 원문을 짧게 축약하고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낱말을 수정 또는 덧붙이기도 하였으며, 각 사례에 참조되는 법조문을 조사, 부기하였고 판례의 원출처와 동판례를 이미 취급한 다른 간행물도 모두 확인하여 소개하고 필요시 각주를 달았다. 따라서 “중요노동판례”는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하에 있음을 알린다. (編者)

1

■ 제3자가 쟁의행위현장에 나타나서 금액이나 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 외에 달리 어떤 언동을 한 것이 없었다면 그가 당해노조원들 사이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만으로 제3자 개입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사건개요 피고는 마산창원노동조합 총연합(이하 마창노련이라 함)을 결성하여 동연합의 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1989년 3월 초순 ○○회사 창원공장에서 쟁의중이던¹⁾ 회사 노조위원장등 조합원들에게 액수미상의 쟁의기금과 라면 등을 전달하여 격려하였고, 4월 10일에도 같은 곳에서 교선부차장등 다수의 노조원들에게 사용자측의 회유나 강압적 수단에 굴하지 말고 강력하게 임금인상투쟁을 하라고 하였다.

이 2가지 사실에 대해 원심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제3자 개입금지) 위반을 인정하자 피고는 이 사실들은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해당된다 하여도 제13조의 2 규정의 단서규정²⁾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상고.

1) 문맥으로 보아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노동쟁의’중이라기 보다는 제3조에서 말하는 ‘쟁의행위’중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하 같음.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라는 개념자체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행위개념이긴 하나, 이 규정의 입법취지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조종·선동 또는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를 유발하거나 진행중인 쟁의를 확대·과격화시키거나 또는 제압·중단시키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과 개입행위의 요건으로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금지하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첫째 사실에 있어서 쟁의관계 당사자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만을 가지고 바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거나 기타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금액 또는 수량이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액수미상의 쟁의기금과 라면이라고만 판시하여 그 금액이나 수량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개입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마찰노련의 의장인 피고인이 쟁의현장에 나타나 금품을 전달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쟁의근로자들을 고무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나, 금액이나 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전달한 것 외에 달리 어떤 언동을 한 것이 없다면 피고인이 노조원 사이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만으로 피고에 한하여 개입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게 개입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둘째 사실에 있어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단서²⁾에 의하여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개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개입행위를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90. 4. 10. 제2부 판결, 89도 2415; 전문:法律新聞 1990. 5. 31. p.7; 요약보도:朝鮮日報 4. 11.; 한겨레신문 4. 11.; 中央日報 4. 11.; 京鄉新聞 1990. 4. 11.; 勞使新報 1990.4. 18.).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단서: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며, 정부의 방침에 입각하여 공사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퇴직금급여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³⁾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조, 제28조, 제36조, 제95조;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사건개요 피고공사를 포함한 정부투자기업들이 매년 적자를 보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직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많이 지출되는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 온 것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피고공사는 1981. 1. 1.자로 퇴직금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금여지급률이 종전보다 하향조정되었고 자격이나 부서에 따라 일부 직원에에만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퇴직금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퇴직금급여규정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행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이에 대해 피고공사는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2. 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 3. 1. 폐지)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 8. 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 3. 1. 폐지)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는 점, 둘째 피고공사의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고 적자운업을 탈피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개정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위 개정조치가 피고공사의 내규인 취업규칙·정관·이사회운영규정의 각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 개정이 유효라고 주장.

결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여부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이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개정의 효력 여부

피고공사의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고 적자운업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

3)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은 결과적으로 퇴직금지금액을 인하하는 것으로 임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공사로서는 개정시 위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등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은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⁴⁾이다.

위 개정이 피고공사의 내규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은 피고공사가 사용자측 입장에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대법원 1990. 3. 13. 제2부 결정, 89다카 24780, 퇴직금; 전문: 법원공보 1990. pp. 882~884).

3

□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휴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교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사건개요

피재자는 1988. 10. 10. ○○화물자동차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이 회사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가스회사의 산소통운송작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9. 1. 1.~3. 간 연휴를 보내고 1. 4. 위 가스회사에 출근하여 60킬로그램짜리 산소통 73개를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인부 2명 등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복서화물차에 40여개 정도 상차(上車)하였을 때,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피재자는 평소에도 개당 50 내지 60킬로그램 이상되는 산소통을 운송보조자 1명과 함께 굴러서 상차한 다음 기흥에서 서울까지 하루 2~3차례 왕복하였고 더구나 산소통을 하차(下車)할 때는 충격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보조자가 밑에서 받아주거나 고무판을 깔고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하차 및 운송작업을 매일 2~3차례씩 반복하는 것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이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사고당일은 날씨가 매우 추워 보통 건강한 사람도 노천작업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였다.

4)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 1046 판결; 1988. 5. 10. 선고, 87다카 2853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 4277 판결 각 참조.

또한 피해자는 질병도 없었으며 다만 연휴기간동안 친구들과 어울려 상당한 음주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처인 원고는 위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⁵⁾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⁶⁾,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휴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제2부 판결, 89누 6990,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전문: 법원공보 1990. pp. 671~672).

4

■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의 결정방법·목적·수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

사건개요 여러 종류의 정기간행물, 단행본 및 전집류를 제작·판매하는 ○○계열기업은 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소외 김△△이 그 자신 또는 그의 처인 소외 이×× 명의로 대표이사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는 업체로서 모두 동일건물내에 사무소가 소재할 뿐 아니라 부자급 이상의 간부사원은 전문분야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위 계열기업에 겸임발령되어 있으며 일반사원들도 위 계열기업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위 계열기업근로자들이 1987년 9월 노조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회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고 출입문을 봉쇄함과 함께 단전·단수·전화불통 등의 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중재로⁷⁾ 4개의 단위노동조합설립에 합의하고, 이어 기본급 20%인상, 상여금 연 400%지급 등에도 합의하였다.

사용자측에서 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자, 조합원들은 이 계열기업의 구조에 비추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노조협의회를 구성한 후,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원고등 6명을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5) 이른바 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과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 그리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因果關係)에 대해서는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2권 제4호, 1989, pp.144~145 참조.

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 403 판결; 1989. 10. 24. 선고, 89누 1186 판결 각 참조.

7) 근로감독관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중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재'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이하에서 말하는 중재가 아니고 통상 '간여'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임..

교섭에 임하도록 결의했다.

이 단체교섭위원들은 조합측의 단체협약안을 마련하여 1987. 12. 5.~17. 사이에 5회에 걸쳐 사용자측과 교섭을 행했지만, 사용자측에서는 실질적 경영자인 위 김△△의 위임을 받은 간부들만이 수시로 교체되어 출석하는 관계로 교섭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교섭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이는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사용자측 교섭담당자들의 권한의 한계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한 노조측은 12. 18. 위 김△△와의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다.

12. 21. 노조측과 대면하게 된 위 김△△은 “노조의 단체협약안은 불건전한 외부세력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등 발언을 하여 이에 조합원들이 반발함으로써 단체교섭이 중단되었으며, 다음날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한 조합원들은 사용자측의 성실한 교섭자세를 촉구하면서 조합원 전원의 무기한 철야농성·전원 사표제출 등을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단체교섭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정상근무할 것을 설득하여 대부분 근로자들을 정상근무케 하고, 자신들만이 위 조합의 결의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여 그날부터 단식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조합원 대부분의 정상근무로 인하여 정기간행물은 평시와 다름없이 발행되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평소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1개 업체를 노동쟁의를 이유로 폐간기로 결정하는 중에 교섭재개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서 위 교섭위원들은 12. 28. 농성을 해제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는 바로 다음날 위 1개 업체의 폐간을 이유로 직원 11명(이 중에는 단체교섭위원 2명도 포함됨)을 해고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것을 금지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다른 한 명의 교섭위원을 징계해고하고, 또 한명의 교섭위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취했다. 회사측은 1988년 1월 위 1개 업체 폐간으로 인하여 해고된 직원 가운데 비조합원들을 모두 재입사 조치하였다.

이에 원고는 회사측의 위 해고가 쟁의행위등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판결요지 원고가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의 결정방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0. 4. 26. 제2 특별부 판결, 89구 1355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진문: 미간행; 요약보도: 한국일보 1990. 4. 27.; 한겨레신문 1990. 4. 27.; 韓國經濟新聞 1990. 4. 28.).

■ 근로자에게 특별히 징계해고할만한 비위사실이 없더라도 회사는 근무성적불량·통솔력 부족·직원상호간의 융화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 2)

사건개요 원고는 1979. 10. 16.에 피고회사의 정비부사원으로 채용되어 1981. 3. 20.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1986. 1. 8.부터는 방글라데시 건설현장에서 각각 근무한 후 1987. 9. 12.부터 피고회사 안양골재사업소의 중기계장으로 발령받고 산하 정비사 5인의 작업지시감독과 장비부품구입 및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입사후 총 13차례 시행된 승급호봉심사에서 평균이하로 평가되어 7차례 승급이 제한된 바 있고,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1985년 하반기·1986년 하반기·1987년 상반기 등 3회에 걸쳐 동급자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회사는 이러한 원고의 근무성적불량에 대해 수차 경고하였으나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자 1987. 9. 12. 원고를 안양골재사업소에 전보발령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소에 부임한 직후부터 원고는 업무배치에 불만을 품고 사업소장과 불화하여 오던 중 중기부품의 교체나 구입시 부적합품을 구입함으로써 중기가동을 지연시키거나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소속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었다. 원고와의 불화 때문에 사업소장과 인사담당 이사는 사직하였으며,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원고와의 근무를 꺼려 모두 전출을 원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88. 3. 23.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오다가 4. 11. 본사 인사부 대기근무로 발령한 후 4.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성적불량, 통솔력부족 및 직원상호간의 융화부족, 직무능력부족,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를 5. 4.자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91조는 징계의 종류로 면직·정직·직위해제(대기발령)·감봉·견책의 5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제92조는 징계면직의 사유로 9개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동 제68조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동조 제2호)등 9개 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69조는 종업원을 해고할 때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없이 해고하는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이거나,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의 잘못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해고는 피고회사가 해고사유를 인정한 사실과 취업규칙의 적용조문에 비추어 보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상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해고가 징계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없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직원을 채용하고 상세한 인사관리규정을 두어 근무평정에 따라 보직·승진 등의 인사관리를 행하여 왔고 각 직급별 정년제를 규정하여 종신고용제를 채용하고 있는 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서울민지법 1990. 4. 12. 제42부 판결, 89가합 33263; 전문: 法律新聞 1990. 5. 21. p.11; 요약보도: 中央經濟新聞 1990. 4. 24.; 法律新聞 1990. 4. 30.; 勞使新報 1990. 5. 2.).

6

□ 1일 8시간 근무형태하에서 기준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라는 회사측의 지시에 반하여 6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사건개요 종래 평일에는 8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여 1주 48시간 근무를 해오던 중 근로기준법 개정⁸⁾(1989. 3. 29. 법률 제4099호)으로 기준근로시간이 1주 4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노·사간에 1989. 8. 24~9. 21.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근무형태(요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모두 결렬되었다.

단체교섭에서 노조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토요일은 6시간을 근무하고 주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이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고, 회사측은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에는 8시간을 근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되자 회사측은 1989. 9. 30. 잠정적으로 "1주일을 통하여 6일 근무시 평일은 8시간 근무·토요일은 6시간 근무하되, 유급휴일이 있어서 1주일을 통하여 5일 이하 가동시는 토요일도 8시간 근무한다"고 노조측에 통보했다.

8)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除)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례의 회사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된다.

1989. 10. 1. ~ 10. 7.의 1주에 있어서 10. 3. (개천절)이 취업규칙에 의거한 유급휴일이 기 때문에 회사측은 그 주의 토요일(10. 7.)에 8시간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측은 10. 6. 임시총회결의를 통하여 유급휴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10. 7.에 6시간만을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일 신청인등 조합원 63명이 6시간만을 근무하고 일제히 퇴근했다.

회사측은 이러한 조기퇴근사태와 관련하여 1989. 10. 12.과 10. 24. 두 차례에 걸쳐 징계 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에 따라 단순 동조조합원 59명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하였으며, 노조 조합장과 노조집행부를 맡고 있는 신청인등 12명의 주동자에 대해서는 정직조치하였다.

신청인들은 유급휴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징계조치한 행위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판정요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근로시간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셈이 되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에도 6시간만을 근무하기로 결의하여 회사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조기퇴근한 것은 정당한 작업지시 위반으로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회사측이 징계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중노위 1990. 3. 19. 재심판정, 90부노 35; 전문: 미간행).

主要 勞動日誌

日 字	勞 動 政 策	勞 使 團 體	勞動組合·勞使紛糾
1990. 3. 13	· 대법원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된다」 판결		
3. 14		· 한림대부설 사회조사연구소 : 「388개 기업 노조위원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전노협소속 노조 : 「업무조사 거부」 입건 항의 임시총회 개최
3. 16	· 노동부 : 「금년 7월부터 갯내·분진 등 7개 위험작업주 34시간의 연장근로 금지」 입법 예고		
3. 18		· 전노협 : 「노동운동탄압분쇄 및 '90임투승리를 위한 전진대회」 개최	
3. 27			· 강원산업노조 : 파업 결의
3. 28	· 정부 : 강원산업분규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3. 31	· 서울고법 : 「파업에 따른 무임금기간, 평균임금계산때 빼야」 판결		
4. 3	· 서울민사지법 : 「사립학교교원 노동3권 제한규정은 합헌」 판결		
4. 6		· KIET : 「산업인력의 업종별·직종별 수급전망과 향후 대책」 발표	
4. 9		· 경단협 : 「주택문제에 관한 정책심포지엄」 개최	
4. 10	· 노동부 : 내년부터 진폐보상 직종 확대키로	· 국민경제사회협의회 : 창립회의 개최	

日 字	勞 動 政 策	勞 使 團 體	勞 動 組 合 · 勞 使 紛 糾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 공무원법「단체행동금지」합헌 판결 • 서울고법 : 「연월차휴가 미사용 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5배」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산업 : 분규 타결 • 성균관대 직원노조 : 파업 돌입 • 한국피코 노조대표 3명 : 체임담판 위해 도미 • 마산 한국일신회사 : 수출부진으로 노사, 감원합의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법 남부지원 : 「노점상 정년 60세」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총 : 노동절 정상근무 확정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공인노무사 권한 확대 확정 • 건설부 : 건설직업훈련원 내달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제신문 : '89학년도 대학졸업생 취업률 조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노조 : 파업 돌입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법 남부지원 : 「재봉사 정년 60세」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아자동차노조 : 쟁의신고 결의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89년 산업재해 분석자료」 발표 • 노동부 :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국제비교」 발표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그룹 : 임금 5.7% 인상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 직원노조 : 분규 타결로 정상근무
4.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야단체 : 「국민연합」결성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89년 주요근로감독실적」 발표 • 정부 : KBS노조에 중대조치 경고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직업별 취업자통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강대 직원노조 : 파업 돌입 • 기아자동차노조 : 파업 잠정결정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 「농수산물가격이 물가상승 주도」 발표 		

日 字	勞 動 政 策	勞 使 團 體	勞 動 組 合 · 勞 使 紛 糾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중공업노조 : 전면 파업 · 기아자동차노조 : 정상조업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강사노조 : 결성대회 개최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 현대중공업농성 강제해산, 「골리앗농성」 계속 · 경찰 : KBS농성에 공권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대병원노조 : 파업 · 서강대 직원노조 : 분규타결로 정상근무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5개 공사 노조 :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결성 · 노총, 전노협 : 노동절 기념식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 「불법쟁의 즉각 공권력 투입」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8개 노조 : 전노협에 동조, 1일 동안 파업 · 조선대병원 : 분규타결 · 경남창원 남성알미늄 : 노조파업에 직장폐쇄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 「'89년 하반기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조 서울지부 : 「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위」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중공업「골리앗농성」 : 농성 종료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041명 시국선언 : 생존권보장등 촉구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노사합의맨 변형 근로시간 연장가능」 유권해석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ET : 「주요업종별 경쟁력 분석 및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공단 오리엔트전자 : 근로자 2명 수은중독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내년부터 100인 이상기업 종업원 2% 장애자 고용 의무화」확정 		

日 字	勞 動 政 策	勞 使 團 體	勞 動 組 合 · 勞 使 紛 糾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부 : 「근로자주택건설 시행계획」 확정 · 상공부, 경제기획원 : 100인 이상 사업체 1,344개사 임금, 평균 8.5% 인상 집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단협 :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발표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부 : 30대그룹 임금, 평균 6.8%인상 집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노조 : 파업 돌입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확정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공회의소 : 「기업경영 애로요인 및 관련정책조사결과」 발표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직원 : 방송제작 복귀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재급증 발표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택시노조 : 임금협상 타결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당 : 노총간부와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백여 대기업 : 근로자주택 건설추진 · 현대자동차 : 분류 타결 · 대한교육보험노조 : 파업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사발전연구원 : 「노사발전 세미나」 개최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본부 : 노사분규현장에 경찰투입시 「보고제」에서 「허가제」로 지침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 노동조합 실태조사」 발표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조 : 창립1주년 집회개최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노조 : 파업 결의 · 경남양산 세신실업 : 직장 폐쇄 · 대구지역 의료보험조합노조 : 자진해체

日 字	勞 動 政 策	勞 使 團 體	勞 動 組 合 · 勞 使 紛 糾
5.30	· 청와대 대책회의: 「물가 8~9%내 억제방침」 발표	· 노총: 여성노동자대회 개최	
5.31			· 동아일보: 노사협상 타결 · 지역의료보험조합 노조: 쟁의 재연 조짐 · 서울의보노조: 쟁의신고
6. 1	· 경찰: 대한교보노조에 공권력 투입	· 노총·전노협: 「유해작업범위 축소방침」 철회요구	
6. 2		· 여성단체연합: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정의 실상과 대책」 토론회 개최	
6. 4			· 동아건설 창동공장 노조: 전노협 탈퇴결의
6. 5		· 전노협: 「전노협가입노조 임금인상률 높다」 발표	
6. 6		· 제77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스위스에서 개막	
6. 7	· 노동부: 「올해 상반기 노동사분규실태 분석」 발표	· 4개 재야단체: 노조원 무더기 구속 비난	
6. 8			· 태백탄전 7개노조: 일파 쟁의신고 · 수미다노조: 238일만에 도일투쟁 쟁의타결
6. 9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89년 경제활동인구연보」 발표		
6.12	· 서울민사지법: 「'80년 MBC·경향신문기자 4명 해고무효」 판결	· 경단협: 「'90년 단체협약의 주택관련조항조사」결과 발표	· KBS신임노조간부: 시한부 농성
6.13	· 경제기획원: 「시도별 산업활동동향」 발표 · 서울고법: 「노사책임불문을 합의한 농성행위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무효」 판결		·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파업돌입 · 전국택시노조 대전지부: 파업

日 字	勞 動 政 策	勞 使 團 體	勞 動 組 合 · 勞 使 紛 糾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동연구원 : 「우루과 이라운드」 관련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연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연합조선노조 : 파업돌입 • 5개 철강업체 노조협의회 : 공동투쟁 결의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유해작업」조정 백지화 • 서울고법 : 「노조활동방해 위한 승진발령 불응이유 노조원 해고는 부당」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 「올 물가 12~13% 상승」 전망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동아일보 : 「노사안정과 노동법」 학술심포지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택시노조 대전지부 : 대전지노위의 중재안 수용하여 파업중단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95년까지 「실업고 12만 · 전문대 6만명 증원」 계획 • 중노위 : 「노조기피 폐업은 부당」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내 25개 탄광업체 : 임금협상 타결 • 기아기공노조 : 쟁의발생 신고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 전교조교사복지 서명운동주도 현직교사 107명 중징계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총 : 단체교섭권보장 촉구 • 전경련 :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휴일문제에 대한 결의」 채택 • 전국언노련 : 「방송구조 개편」 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 협상 타결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사부 :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적용 사업장 확대」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渡美 (주)피코근로자 : 법정투쟁 돌입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 「'90년도 대학졸업자 대학별 취업현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노협 : 「'90년 상반기 노동운동 탄압백서」 발표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문제 및 노사관계에 대한 근로자의식조사 연구」 발표 • 전노협 : 주택문제 해결등 촉구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법 : 「쟁의신고 노동위에서 반려해도 절차 적법하면 유효」 판결 		

日 字	勞 動 政 策	勞 使 團 體	勞 動 組 合 · 勞 使 紛 糾
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고령자 채용」의 무화 추진 • 재무부: 개인소득세 비과세 · 감면 대폭 축소방침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근로감독관 구속 수사권 확대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세계경제전망보고서」 발표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해외노동동향」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계 외자기업 노조대표: 미국계기업 노조탄압 재재를 미국정부에 요청

附 錄

부표 목차

〈부표 1〉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133
〈부표 2〉 산업별 취업자	134
〈부표 3〉 직업별 취업자	135
〈부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비농가)	136
〈부표 5〉 산업별 상용근로자.....	137
〈부표 6〉 산업별 입직률 및 이직률	138
〈부표 7〉 월평균 급여액 추이(전산업)	139
〈부표 8〉 성별 및 직종별 임금(전산업)	140
〈부표 9〉 산업별 임금 총액	141
〈부표 10〉 월평균 근로시간(전산업).....	142
〈부표 11〉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143
〈부표 12〉 노동생산성지수	144
〈부표 13〉 산업재해 발생추이	145
〈부표 14〉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추이	146
〈부표 15〉 연도별 노동조합원수 및 조직률	147
〈부표 16〉 연도별 단위노조수	148
〈부표 17〉 산업별·남녀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1989. 12. 31 현재)	149
〈부표 18〉 산별 조합원수 및 조합원 구성비 추이	150
〈부표 19〉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152
〈부표 20〉 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153
〈부표 21〉 원인·유형별 노사분규 현황(1989. 12. 31 현재).....	154

<부표 1>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전체	참가율	남	참가율	여	참가율	전국	농가	비농가
1970	10,062	57.6	6,447	77.9	3,615	39.3	4.4	1.5	7.4
1975	12,193	58.3	7,822	77.4	4,371	40.4	4.1	1.2	6.6
1980	14,431	59.0	9,019	76.4	5,412	42.8	5.2	1.1	7.5
1981	14,683	58.5	9,204	75.8	5,479	42.3	4.5	0.8	6.5
1982	15,032	58.6	9,266	75.0	5,767	43.4	4.4	0.9	6
1983	15,118	57.7	9,305	73.7	5,814	42.8	4.1	0.8	5.5
1984	14,997	55.8	9,338	72.1	5,658	40.7	3.8	0.8	4.9
1985	15,592	56.6	9,617	72.3	5,975	41.9	4.0	1.1	4.9
1986	16,116	57.1	9,819	72.1	6,296	43.1	3.8	0.9	4.7
1987	16,873	58.3	10,138	72.5	6,735	45.0	3.1	0.7	3.8
1988	17,305	58.5	10,414	72.9	6,891	45.0	2.5	0.5	3.0
1989	17,975	59.5	10,716	73.3	7,259	46.5	2.6	0.6	3.0

1989.1	16,218	54.2	10,042	69.4	6,176	39.9	3.2	1.1	3.5
2	16,442	54.8	10,175	70.2	6,268	40.5	3.6	1.2	4.0
3	17,656	58.8	10,670	73.5	6,986	45.0	3.1	1.2	3.6
4	18,263	60.7	10,839	74.5	7,424	47.8	2.6	0.7	3.1
5	18,531	61.5	10,903	74.8	7,628	49.0	2.4	0.5	2.9
6	18,631	61.7	10,910	74.7	7,722	49.5	2.2	0.5	2.7
7	18,488	61.1	10,875	74.3	7,612	48.7	2.3	0.5	2.8
8	18,471	61.0	10,885	74.3	7,586	48.5	2.3	0.5	2.9
9	18,453	60.8	10,858	74.0	7,595	48.5	2.2	0.4	2.7
10	18,699	61.5	10,951	74.5	7,748	49.4	2.1	0.3	2.6
11	18,380	60.2	10,874	73.8	7,506	47.5	2.4	0.5	2.9
12	17,467	57.3	10,613	71.9	6,853	43.5	2.6	0.9	2.9

1990.1	16,877	55.2	10,307	69.7	6,569	41.7	3.2	1.0	3.6
2	17,107	55.9	10,459	70.7	6,648	42.1	3.5	1.0	3.9
3	18,170	59.3	10,903	73.6	7,267	46.0	2.7	0.9	3.1
4	18,661	60.8	11,067	74.5	7,594	48.0	2.2	0.5	2.6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부표 2〉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전 산업		제조업		건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계	남	계	남	계	남	계	남
1970	9,617	6,104	1,268	852	281	275	3,114	2,047
1975	11,692	7,431	2,175	1,439	509	486	3,609	2,321
1980	13,683	8,462	2,955	1,800	843	770	5,108	3,159
1981	14,023	8,679	2,859	1,747	876	807	5,363	3,304
1982	14,379	8,717	3,033	1,866	829	771	5,795	3,417
1983	14,505	8,819	3,266	2,024	817	760	5,999	3,476
1984	14,429	8,894	3,348	2,083	905	839	6,119	3,588
1985	14,970	9,137	3,504	2,153	911	848	6,667	3,874
1986	15,505	9,339	3,826	2,289	889	822	6,942	4,009
1987	16,354	9,741	4,416	2,562	920	843	7,252	4,186
1988	16,870	10,099	4,667	2,701	1,024	930	7,556	4,407
1989	17,515	10,391	4,841	2,782	1,140	1,029	8,022	4,620
<hr/>								
1989.1	15,707	9,683	4,862	2,810	910	824	7,783	4,568
2	15,857	9,780	4,774	2,799	920	835	7,807	4,558
3	17,107	10,284	4,889	2,815	1,079	979	7,914	4,584
4	17,792	10,517	4,891	2,814	1,155	1,038	7,965	4,579
5	18,093	10,601	4,839	2,788	1,182	1,061	7,963	4,576
6	18,216	10,620	4,879	2,791	1,170	1,055	8,022	4,589
7	18,061	10,571	4,845	2,769	1,168	1,060	8,084	4,624
8	18,040	10,580	4,844	2,776	1,193	1,078	8,072	4,628
9	18,052	10,557	4,873	2,775	1,200	1,086	8,044	4,618
10	18,304	10,651	4,846	2,761	1,212	1,089	8,113	4,655
11	17,942	10,565	4,817	2,755	1,243	1,121	8,180	4,699
12	17,014	10,279	4,729	2,730	1,248	1,121	8,315	4,759
<hr/>								
1990.1	16,340	9,910	4,709	2,726	1,056	952	8,319	4,765
2	16,517	10,055	4,689	2,704	1,110	1,001	8,374	4,833
3	17,682	10,579	4,758	2,736	1,286	1,159	8,400	4,837
4	18,254	10,789	4,724	2,722	1,338	1,197	8,442	4,843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부표 3〉 직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 무 직		서 비 스 직		생 산 직	
	계	남	계	남	계	남	계	남
1970	462	377	575	498	615	266	1,944	1,492
1975	416	329	747	591	830	358	2,815	2,102
1980	732	546	1,268	853	1,078	453	3,974	2,880
1981	791	604	1,259	836	1,198	507	3,957	2,908
1982	790	580	1,398	924	1,430	599	3,979	2,905
1983	882	647	1,525	1,004	1,459	585	4,122	2,979
1984	974	710	1,642	1,091	1,490	587	4,324	3,163
1985	1,090	773	1,729	1,132	1,622	630	4,530	3,285
1986	1,162	810	1,802	1,143	1,670	649	4,894	3,493
1987	1,233	846	1,886	1,190	1,781	699	5,459	3,771
1988	1,315	893	2,032	1,269	1,815	714	5,768	3,975
1989	1,452	953	2,180	1,331	1,883	728	6,046	4,170
1989.1	1,361	929	2,143	1,321	1,788	705	5,837	3,981
2	1,377	936	2,142	1,320	1,815	704	5,738	3,967
3	1,406	938	2,196	1,336	1,819	702	6,013	4,134
4	1,437	951	2,180	1,327	1,850	714	6,096	4,197
5	1,440	944	2,166	1,323	1,847	706	6,086	4,212
6	1,459	952	2,169	1,316	1,888	725	6,112	4,206
7	1,478	963	2,191	1,324	1,899	734	6,088	4,199
8	1,493	964	2,179	1,322	1,896	743	6,113	4,228
9	1,491	963	2,183	1,328	1,886	735	6,124	4,219
10	1,497	968	2,192	1,343	1,940	748	6,117	4,206
11	1,487	965	2,186	1,338	1,970	760	6,148	4,225
12	1,494	957	2,237	1,378	1,995	766	6,074	4,237
1990.1	1,489	952	2,293	1,412	1,975	767	5,846	4,045
2	1,505	961	2,313	1,414	1,980	777	5,910	4,112
3	1,529	972	2,346	1,431	1,977	780	6,135	4,285
4	1,531	975	2,338	1,421	1,994	773	6,140	4,306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부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비농가)

(단위 : 천명)

	전 체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상시고	일 고
1970	4,580	1,236	411	2,363	570
1975	6,181	1,651	504	3,258	768
1980	8,575	2,273	642	4,728	932
1981	8,871	2,330	658	4,946	937
1982	9,579	2,640	806	5,160	953
1983	10,011	2,676	860	5,594	934
1984	10,454	2,606	744	6,031	1,072
1985	11,165	2,799	789	6,397	1,180
1986	11,768	2,996	836	6,666	1,269
1987	12,630	3,135	868	7,315	1,313
1988	13,217	3,239	891	7,771	1,316
1989	13,886	3,187	886	8,270	1,543

1989. 1	13,277	3,174	885	8,051	1,167
2	13,263	3,179	878	8,070	1,135
3	13,684	3,163	878	8,227	1,415
4	13,901	3,214	870	8,236	1,581
5	13,978	3,198	881	8,221	1,678
6	14,058	3,189	878	8,300	1,691
7	14,006	3,169	877	8,299	1,662
8	14,011	3,179	872	8,339	1,621
9	14,072	3,195	894	8,337	1,646
10	14,210	3,228	904	8,372	1,706
11	14,154	3,214	909	8,362	1,668
12	14,013	3,148	903	8,424	1,539

1990. 1	13,766	3,100	898	8,426	1,342
2	13,856	3,131	911	8,442	1,372
3	14,218	3,167	916	8,540	1,595
4	14,415	3,243	926	8,591	1,656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부표 5〉 산업별 상용근로자

(단위: 명)

	전 산업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970	1,039,612	45,935	656,612	34,812	32,395	61,595	57,905
1975	1,654,589	53,819	1,154,419	36,506	47,627	82,923	93,048
1980	2,709,384	67,431	1,831,466	91,401	114,320	158,782	173,724
1981	2,737,983	68,481	1,834,407	85,995	116,257	180,979	176,411
1982	2,875,650	66,407	1,893,433	97,656	127,801	184,998	209,923
1983	3,067,989	68,038	1,974,147	98,290	138,405	223,413	234,011
1984	3,165,634	69,411	2,040,964	99,920	139,799	226,420	241,890
1985	3,098,894	71,749	1,984,249	90,928	138,619	224,650	245,538
1986	3,183,874	72,247	2,056,066	86,550	139,363	224,584	251,646
1987	3,330,156	71,061	2,178,675	81,738	148,487	229,336	258,122
1988	3,366,208	65,031	2,194,683	80,171	154,693	234,949	268,222
1988. 8	3,363,957	63,919	2,191,450	79,556	156,259	234,459	269,070
9	3,348,903	62,801	2,176,118	79,550	155,713	234,779	270,354
10	3,332,624	62,296	2,162,137	79,385	155,122	234,609	269,558
11	3,336,140	62,845	2,161,135	79,963	156,163	235,077	270,309
12	3,353,199	62,833	2,176,147	80,696	156,363	235,935	269,157
1989. 1	3,363,672	62,745	2,185,535	80,537	157,261	238,965	268,750
2	3,330,491	62,608	2,149,949	80,309	155,908	241,782	269,336
3	3,336,260	61,927	2,144,864	82,438	157,382	242,617	275,517
4	3,324,357	61,672	2,131,010	83,354	157,304	243,632	276,168
5	3,313,199	60,826	2,118,290	83,164	156,694	245,182	276,880
6	3,305,395	60,293	2,108,333	83,251	154,986	248,040	276,975
7	3,304,072	60,339	2,106,416	84,084	154,549	248,802	275,168
8	3,330,120	60,048	2,104,413	84,005	153,370	249,516	274,876
9	3,275,105	59,771	2,080,229	84,200	153,043	248,681	275,707
10	3,258,991	60,185	2,064,775	84,461	151,984	247,798	275,639
11	3,259,718	60,205	2,061,836	85,288	152,436	248,783	275,938
12	3,266,197	59,475	2,064,736	84,935	153,675	251,775	275,795
1990. 1	3,273,537	59,065	2,070,569	85,044	152,561	255,561	276,414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부표 6〉 산업별 입직률 및 이직률

(단위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70	4.9	6.0	5.4	6.0	3.4	3.0	2.0	2.6
1975	3.3	2.6	5.2	4.4	5.3	3.2	2.4	2.1
1980	3.8	3.7	4.9	5.6	4.9	4.9	2.3	2.0
1981	3.5	3.6	5.5	5.4	4.9	5.8	2.4	2.0
1982	2.8	3.1	4.8	5.0	5.8	5.1	2.1	1.8
1983	2.5	2.7	5.5	5.0	4.9	4.9	2.1	1.9
1984	3.7	3.4	5.4	5.4	4.4	4.4	2.0	1.8
1985	3.2	3.1	4.3	4.5	3.7	4.7	1.9	1.7
1986	2.8	2.8	4.8	4.2	3.8	4.0	1.7	1.5
1987	2.5	2.6	4.6	4.3	3.4	4.9	1.7	1.4
1988	2.2	3.0	4.4	4.5	2.8	2.8	2.1	1.8
1987. 8	3.6	1.8	3.7	4.3	2.7	3.7	1.3	1.4
9	2.8	1.5	3.3	3.3	3.1	3.0	1.7	1.6
10	3.1	1.8	3.3	3.8	2.6	2.8	1.4	1.3
11	3.1	1.9	4.8	3.8	3.1	2.7	1.1	1.1
12	2.7	1.6	4.2	3.2	3.7	3.6	1.3	1.0
1988. 1	3.4	2.0	4.8	4.1	2.6	3.7	1.6	1.3
2	4.2	2.4	4.5	5.1	4.8	2.8	2.1	1.9
3	4.8	2.7	6.0	5.8	2.7	3.0	5.3	2.9
4	4.4	2.4	5.1	5.4	2.5	3.8	2.2	2.3
5	3.8	1.9	4.3	4.7	4.1	2.5	2.2	1.3
6	2.2	3.0	4.1	4.4	2.4	3.4	1.7	1.5
7	1.9	3.4	4.1	4.2	2.3	3.4	1.6	2.1
8	2.2	2.7	3.9	4.1	2.3	2.1	1.6	1.7
9	1.2	2.9	3.0	3.7	2.4	2.4	2.1	1.6
10	1.8	2.6	4.4	5.0	2.6	2.8	1.9	2.2
11	3.4	2.5	4.1	4.2	2.7	2.0	1.6	1.4
12	2.1	2.2	4.2	3.5	2.5	1.6	1.2	1.6
1989. 1	2.18	2.32	3.83	3.42	3.28	3.48	1.75	1.91
2	1.77	1.99	3.83	3.42	2.76	3.04	2.06	1.84
3	1.38	2.47	4.50	4.74	5.62	2.97	5.03	2.73
4	1.70	2.11	3.57	4.22	4.73	3.62	2.31	2.07
5	1.35	2.72	3.28	3.88	3.20	3.43	1.97	1.71
6	2.02	2.89	3.33	3.80	2.71	2.60	1.67	1.63
7	2.50	2.43	3.16	3.25	2.83	1.83	1.35	2.01
8	1.89	2.37	3.05	3.14	3.27	3.36	1.40	1.51
9	2.59	3.05	2.64	3.79	3.00	2.77	1.89	1.59
10	3.75	3.06	3.29	4.03	2.71	2.40	1.56	1.58
11	2.06	2.03	3.20	3.34	3.47	2.49	1.54	1.43
12	1.43	2.64	3.13	2.99	2.28	2.69	1.24	1.29
1990. 1	2.03	2.72	3.42	3.46	1.21	2.03	4.99	3.26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부표 7〉 월평균 급여액 추이(전산업)

(단위 : 원, 1985=100)

	총 임 금	정액급여	특별급여	실질임금	소비자물가지수
1970	17,831	—	431	113,286	15.7
1975	46,019	—	3,957	143,599	32.0
1980	176,058	129,212	21,074	248,319	70.9
1981	212,477	155,173	21,813	246,493	86.2
1982	245,981	180,937	32,967	266,502	92.3
1983	273,119	199,687	37,857	286,288	95.4
1984	296,907	218,424	40,833	304,208	97.6
1985	324,283	239,487	45,605	324,283	100.0
1986	350,965	256,775	50,388	341,406	102.8
1987	386,536	276,760	61,083	365,001	105.9
1988	446,370	316,047	77,099	393,624	113.4

1988. 3	423,696	296,778	74,643	376,619	112.5
4	379,460	303,162	24,787	337,898	112.3
5	392,876	309,582	29,061	347,986	112.9
6	488,671	316,179	118,049	429,790	113.7
7	466,484	326,891	85,231	409,556	113.9
8	406,715	324,542	26,418	355,520	114.4
9	557,667	325,988	178,014	486,196	114.7
10	405,450	327,932	20,925	354,105	114.5
11	415,044	329,130	31,750	359,657	115.4
12	631,450	346,088	231,589	542,483	116.4

1989. 1	459,421	344,378	61,082	394,015	116.6
2	455,142	333,502	71,614	389,010	117.0
3	497,040	345,714	95,658	421,935	117.8
4	459,770	357,523	45,525	388,648	118.3
5	472,148	368,878	43,369	394,114	119.8
6	613,288	379,428	172,207	511,073	120.0
7	562,526	386,803	112,453	469,163	119.9
8	524,275	386,997	72,567	434,002	120.8
9	663,131	387,963	213,258	543,996	121.9
10	500,748	394,345	38,845	409,777	122.2
11	510,169	397,619	49,219	416,804	122.4
12	776,008	419,080	293,958	634,511	122.3

1990. 1	639,029	428,994	150,000	517,432	123.5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부표 8〉 성별 및 직종별 임금(전산업)

(단위 : 원)

	남 자	여 자	생 산 직	사 무 직
1980	223,825	99,380	123,589	248,289
1982	309,910	139,689	171,564	339,801
1983	340,960	159,050	192,355	370,536
1984	366,353	174,245	209,804	392,785
1985	397,265	189,845	230,589	423,133
1986	426,871	208,914	255,133	452,761
1987	467,286	234,071	286,987	494,050
1988	534,658	274,832	347,780	548,503
<hr/>				
1988. 3	511,945	254,966	309,376	545,184
4	454,204	235,822	302,488	460,644
5	468,216	247,286	307,857	481,668
6	589,492	293,037	372,380	609,277
7	554,600	259,189	369,116	566,929
8	485,115	253,760	325,136	490,457
9	663,214	350,350	434,515	683,075
10	482,610	252,792	327,689	483,787
11	493,074	259,626	329,114	500,847
12	761,309	372,567	497,340	765,025
<hr/>				
1989. 1	545,647	288,527	357,964	560,387
2	538,711	288,588	368,326	540,677
3	593,492	302,499	367,413	623,126
4	543,009	290,764	376,866	539,534
5	555,193	302,290	389,020	551,271
6	731,125	370,848	499,003	721,092
7	660,039	361,286	458,586	659,940
8	616,482	333,203	448,004	595,577
9	780,535	417,652	536,923	780,463
10	589,845	312,311	420,863	574,242
11	599,457	320,244	417,592	594,580
12	922,960	464,047	632,481	906,159
<hr/>				
1990. 1	744,241	416,040	538,086	730,266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부표 9> 산업별 임금 총액

(단위 : 원)

	전산업	제조업	광업	전기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업	운수 창고업	금융 보험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70	17,831	14,301	18,574	37,156	24,295	19,807	18,524	37,915	24,354
1975	46,019	38,378	54,650	104,399	61,590	52,700	45,509	96,251	66,888
1980	176,058	146,684	203,281	282,953	257,967	211,012	203,495	281,560	275,280
1981	212,477	176,176	243,710	357,083	319,767	247,240	238,309	339,664	343,118
1982	245,981	202,117	268,660	420,028	365,970	283,906	271,373	387,992	409,035
1983	273,119	226,790	286,419	484,421	387,082	311,111	292,194	417,352	450,421
1984	296,907	245,261	296,817	497,918	380,550	339,895	319,685	479,600	452,645
1985	324,283	269,650	325,079	574,795	400,397	372,048	342,269	519,175	484,407
1986	350,965	294,485	355,443	639,765	415,676	402,073	373,413	551,464	523,604
1987	386,536	328,696	384,769	698,967	453,203	447,085	410,403	612,629	557,515
1988	446,370	393,056	446,861	747,308	503,843	481,112	460,907	661,086	611,715
1988. 6	488,671	424,449	557,810	894,883	516,659	525,642	465,599	792,325	692,426
7	466,484	416,601	419,703	646,804	502,273	483,686	471,731	710,218	626,496
8	406,715	362,735	424,780	614,704	501,534	444,709	425,037	538,906	552,425
9	557,667	495,047	526,748	928,873	624,062	594,097	544,825	874,240	737,889
10	405,450	363,731	419,246	628,322	479,438	440,295	438,308	517,086	535,973
11	415,044	367,225	402,762	639,460	478,120	447,836	470,680	547,600	556,001
12	631,450	578,494	558,996	953,633	626,576	687,013	556,054	984,946	801,355
1989 1	459,421	401,093	431,783	645,365	503,628	457,308	481,690	699,008	669,311
2	455,142	419,558	420,412	706,242	518,300	484,974	450,843	576,139	587,621
3	497,040	410,412	539,883	859,577	563,973	512,252	503,353	840,235	794,730
4	459,770	422,452	411,633	688,469	529,484	479,014	450,924	560,957	628,930
5	472,148	430,723	460,861	652,613	525,651	492,792	528,638	528,163	628,263
6	613,288	562,607	676,358	975,612	637,938	666,207	505,470	875,184	817,912
7	562,526	516,816	460,716	722,325	573,564	542,968	557,192	803,884	716,142
8	524,275	493,748	514,319	753,009	548,494	532,646	510,961	653,589	626,588
9	663,131	605,366	670,091	1,112,347	703,225	677,588	613,804	948,120	843,156
10	500,748	463,069	508,617	703,073	549,211	521,292	492,234	593,441	664,641
11	510,169	461,214	521,486	777,761	571,708	518,886	537,208	650,221	664,562
12	776,008	725,191	759,065	1,181,129	886,958	822,349	633,156	1,107,863	940,881
1990. 1	639,025	599,691	574,785	960,574	693,134	610,370	574,847	1,861,060	793,693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부표 10〉 월평균 근로시간(전산업)

(단위 : 시간)

	총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970	224.2	—	—
1975	217.0	—	—
1980	223.9	195.3	28.6
1981	225.4	192.8	32.6
1982	226.4	194.2	32.2
1983	227.8	193.7	34.1
1984	227.5	193.4	34.1
1985	225.5	192.7	32.8
1986	227.8	193.4	34.4
1987	225.4	191.5	33.9
1988	221.8	190.6	31.2

1988. 3	224.7	192.0	32.7
4	222.4	191.1	31.3
5	220.1	188.3	31.8
6	224.1	192.7	31.4
7	226.6	195.3	31.3
8	223.0	191	32.0
9	215.1	185.1	30.0
10	219.0	187.1	31.8
11	227.3	197.2	30.1
12	232.2	202.0	30.2

1989. 1	218.4	189.4	29.0
2	197.6	171.7	25.9
3	222.0	192.3	29.7
4	216.9	188.5	28.4
5	220.2	191.3	28.9
6	221.1	192.0	29.1
7	215.2	186.0	29.2
8	213.6	184.2	29.4
9	199.9	172.4	27.5
10	207.4	177.7	29.7
11	218.4	190.5	28.0
12	213.4	186.3	27.1

1990. 1	198.2	172.5	25.7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부표 11〉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전산업	제조업	광업	전기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업	운수 창고업	금융 보험업	사회및개인 서비스
1970	224.2	232.0	200.9	212.5	205.4	211.0	234.2	220.8	218.2
1975	217.0	212.9	187.3	206.0	212.4	213.9	221.7	211.1	209.5
1980	223.9	230.6	182.3	211.0	219.0	219.4	218.9	197.3	204.8
1981	225.4	233.1	179.4	212.2	216.9	218.6	220.8	197.8	203.8
1982	226.4	233.4	185.5	210.2	218.4	221.3	225.1	201.0	205.7
1983	227.8	236.1	185.4	210.5	211.0	220.9	227.6	198.8	205.2
1984	227.5	235.8	184.3	214.6	213.3	216.9	232.0	199.3	203.4
1985	225.5	233.5	179.7	217.2	212.6	217.0	230.9	198.7	202.5
1986	227.8	237.7	177.1	218.9	211.2	216.0	229.4	196.4	200.5
1987	225.4	234.6	170.6	217.2	208.9	214.8	225.4	196.9	200.2
1988	221.8	228.6	171.2	221.2	208.0	215.2	224.2	199.5	202.4
1988.3	223.7	231.1	179.1	220.1	214.9	217.9	226.8	200.8	209.2
4	224.3	230.5	168.7	221.1	208.7	215.5	222.1	196.4	199.9
5	220.2	227.4	165.8	215.6	209.2	212.8	223.9	195.4	199.1
6	224.1	232.0	171.4	224.6	210.9	215.1	222.1	200.5	204.4
7	226.7	234.3	170.6	222.8	214.7	219.4	226.8	204.1	205.7
8	222.9	228.3	171.6	218.7	213.6	217.1	228.7	203.6	207.5
9	215.1	219.7	166.3	221.2	204.0	210.6	222.3	197.1	200.8
10	219.0	225.9	171.8	218.2	203.5	213.3	224.6	194.1	196.7
11	227.3	235.3	171.4	231.5	211.1	220.7	223.9	205.9	207.9
12	232.2	240.5	174.6	226.5	209.0	223.8	230.6	211.3	211.1
1989.1	218.4	226.0	170.8	217.2	197.9	210.7	220.6	196.1	195.3
2	197.6	200.9	154.7	204.8	186.6	196.3	208.8	181.2	184.6
3	222.0	228.4	175.8	201.5	214.6	214.9	225.3	200.8	205.9
4	216.9	223.9	168.4	212.9	205.7	208.8	220.6	193.8	197.2
5	220.2	226.6	173.2	207.9	210.7	214.1	224.9	200.1	201.6
6	221.1	228.7	169.6	215.0	208.4	212.6	221.0	200.4	201.4
7	215.2	221.7	165.4	207.1	207.8	208.6	220.2	196.1	194.1
8	213.6	217.7	163.2	204.4	207.4	211.8	220.5	200.0	200.2
9	199.9	204.8	153.0	193.7	187.6	198.6	210.4	179.3	182.6
10	207.4	214.8	158.7	190.2	194.6	202.2	214.5	179.8	186.9
11	218.4	225.9	159.9	229.1	206.4	212.1	217.2	198.5	200.9
12	213.4	220.2	162.2	225.4	200.1	208.3	216.7	192.2	193.9
1990.1	198.2	202.4	149.8	188.6	184.8	197.2	209.7	181.1	183.6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부표 12〉 노동생산성지수

(1985=100.0)

	생산직근로자 기준				상용종업원 기준			
	총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업	총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업
1980	60.1	90.1	58.4	79.6	62.8	87.7	61.5	76.5
1981	70.2	89.9	69.0	85.5	73.2	89.5	72.4	80.8
1982	75.3	86.6	74.4	88.8	77.9	84.1	77.4	84.7
1983	85.0	90.3	84.5	94.6	88.0	89.3	87.7	94.0
1984	93.5	95.2	93.4	95.6	95.6	95.7	95.5	97.4
19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6	116.1	101.1	117.8	99.3	116.4	101.6	117.9	102.8
1987	131.8	105.1	134.6	106.0	129.9	103.4	132.1	110.5
1/4	122.9	98.1	125.4	100.2	119.3	95.5	121.3	102.4
2/4	130.8	109.8	133.3	106.0	133.8	109.3	136.3	110.8
3/4	132.8	103.1	135.4	110.4	128.1	99.6	129.9	116.3
4/4	140.9	109.6	144.3	107.4	138.3	109.2	141.1	112.6

1988	150.4	109.2	150.4	119.3	145.7	108.6	148.7	120.1
1/4	145.1	105.4	149.2	107.1	139.0	102.9	142.3	110.4
2/4	145.5	108.4	148.9	115.7	141.5	108.6	144.3	116.7
3/4	154.1	107.8	157.6	126.6	147.3	106.4	150.0	128.7
4/4	156.9	115.4	160.4	127.6	154.9	116.4	158.4	124.7

1989	168.0	121.9	172.5	127.7	155.5	118.0	158.7	128.6
1/4	159.3	114.9	163.6	119.8	144.6	109.2	147.7	120.1
2/4	163.5	118.0	167.9	123.7	153.1	114.7	156.4	124.9
3/4	174.2	123.0	178.8	134.5	158.7	117.8	161.6	137.0
4/4	175.0	131.8	179.6	130.9	165.8	130.2	169.4	132.5

1990								
1/4	180.5	123.7	185.9	130.6	163.3	115.6	167.3	129.7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지수」, 각호.

〈부표 13〉 산업재해 발생추이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건수	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978	49,957	3,105,757	139,242	138,150	16.63	2.74	44.83
1979	55,763	3,607,595	130,307	128,457	13.52	2.89	36.12
1980	63,100	3,752,975	113,375	112,111	11.12	2.58	30.21
1981	59,029	3,456,746	117,938	116,698	12.38	2.72	34.12
1982	54,159	3,464,977	137,816	136,952	14.49	2.80	39.77
1983	60,213	3,941,152	156,972	156,116	14.00	2.66	35.99
1984	64,704	4,384,589	157,800	156,479	13.09	2.58	39.83
1985	66,803	4,495,185	141,809	140,218	11.57	2.68	31.55
1986	70,865	4,749,342	142,088	140,404	10.89	2.79	29.92
1987	83,536	5,356,546	142,596	141,495	9.77	2.90	26.62
1988	101,445	5,743,970	142,329	141,517	9.26	2.52	24.78

주: 1) 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2) 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3) 천인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

자료: 노동부, 「88 산업재해분석」, 1989.

〈부표 14〉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추이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광업	천인율	94.37	96.55	109.92	129.23	119.60	113.40	104.49	119.77	118.97	111.21	108.77
	도수율	42.90	44.18	49.33	59.11	53.58	50.25	46.84	55.10	54.51	53.77	52.88
	강도율	23.13	27.22	23.50	29.59	28.38	30.64	22.84	24.58	39.10	46.10	36.00
제조업	천인율	47.00	36.70	29.60	31.99	36.56	38.93	35.88	31.51	30.31	27.80	26.71
	도수율	16.95	13.42	10.61	11.34	12.99	12.28	12.59	11.16	10.54	9.82	9.68
	강도율	2.03	2.21	1.95	1.87	1.88	1.86	1.95	2.92	2.09	2.30	2.14
건설업	천인율	37.17	31.38	24.18	33.72	53.51	47.47	37.92	31.41	28.09	22.74	20.64
	도수율	14.59	11.91	9.05	12.76	20.16	17.42	14.65	12.07	10.92	8.97	8.21
	강도율	2.65	2.75	2.36	3.21	4.12	3.18	2.89	3.21	2.69	2.45	2.12
전기·가스· 수도업	천인율	18.62	14.58	13.82	17.72	15.59	17.57	9.79	7.52	8.73	7.75	6.38
	도수율	7.77	6.27	5.44	6.90	6.15	6.43	3.76	2.86	3.32	2.96	2.38
	강도율	3.76	3.96	2.71	4.38	2.50	2.20	1.84	2.45	1.37	2.39	1.65
운수·보관· 통신업	천인율	58.59	45.61	45.23	43.31	42.44	36.14	36.83	31.60	30.37	28.56	23.93
	도수율	22.52	17.47	16.97	16.16	15.61	12.84	13.12	11.24	10.88	10.50	8.82
	강도율	4.38	3.95	4.06	3.45	2.73	2.49	3.20	2.98	3.09	3.30	2.92

자료: 노동부, 「88 산업재해분석」, 1989.

〈부표 15〉 연도별 노동조합원수 및 조직률

(단위: 천명, %)

	조 합 원			비능가상시고			총 피 용 자			조 직 률(A)			조 직 률(B)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63	224	174	50	1,106	835	271	2,383	1,810	574	20.3	20.8	18.5	9.4	9.6	8.7
1964	272	211	60	1,169	881	289	2,363	1,813	550	23.3	24.0	20.8	11.5	11.6	11.0
1965	302	235	66	1,347	1,001	346	2,609	2,014	594	22.4	23.5	19.1	11.6	11.7	11.2
1966	327	251	76	1,487	1,128	359	2,780	2,129	651	22.7	22.3	21.2	11.8	11.8	11.7
1967	378	287	91	1,702	1,297	405	3,039	2,310	729	22.2	22.1	22.5	12.4	12.4	12.5
1968	413	310	103	1,957	1,458	499	3,400	2,519	880	21.1	21.3	20.6	12.1	12.3	11.7
1969	445	333	111	2,091	1,568	523	3,547	2,582	965	21.3	21.3	20.9	12.5	12.9	11.6
1970	473	358	115	2,363	1,779	585	3,746	2,740	1,006	20.0	20.1	19.7	12.6	13.1	11.5
1971	497	373	125	2,520	1,861	662	3,923	2,878	1,045	19.7	20.0	18.7	12.7	12.9	11.9
1972	515	381	134	2,529	1,863	666	4,004	2,957	1,046	20.4	20.5	20.1	12.9	12.9	12.9
1973	548	392	156	2,683	1,922	760	4,153	3,009	1,145	20.4	20.4	20.5	13.2	13.0	13.6
1974	656	463	193	2,974	2,166	809	4,443	3,251	1,192	22.1	21.4	23.9	14.8	14.2	16.2
1975	750	509	241	3,258	2,377	881	4,750	3,499	1,251	23.0	21.4	27.4	15.8	14.5	19.3
1976	846	559	286	3,630	2,575	1,056	5,140	3,670	1,469	23.3	21.7	27.1	16.5	15.2	19.5
1977	955	635	320	3,922	2,801	1,122	5,713	4,074	1,640	24.3	22.7	28.5	16.7	15.6	19.5
1978	1,055	697	357	4,389	3,051	1,334	6,241	4,373	1,868	24.0	22.8	26.8	16.9	15.9	21.2
1979	1,088	724	364	4,609	3,174	1,435	6,479	4,467	2,012	23.6	22.8	25.4	16.8	16.2	18.1
1980	948	600	348	4,728	3,251	1,476	6,464	4,415	2,049	20.1	18.5	23.6	14.7	13.6	17.0
1981	967	628	338	4,946	3,393	1,553	6,605	4,522	2,082	19.6	18.5	21.8	14.6	13.9	16.3
1982	984	653	332	5,160	3,505	1,655	6,839	4,598	2,241	19.1	18.6	20.1	14.4	13.8	15.7
1983	1,010	673	336	5,594	3,773	1,821	7,171	4,748	2,421	18.1	17.8	18.5	14.1	14.2	13.9
1984	1,011	684	327	6,031	4,132	1,899	7,632	5,080	2,551	16.8	16.6	17.2	13.2	13.5	12.8
1985	1,004	692	312	6,397	4,345	2,053	8,104	5,295	2,810	15.7	15.9	15.2	12.4	13.1	11.1
1986	1,036	725	311	6,666	4,472	2,194	8,433	5,471	2,962	15.5	16.2	14.2	12.3	13.2	10.5
1987	1,267	900	367	7,315	4,867	2,449	9,191	5,872	3,319	17.3	18.5	15.0	13.8	15.3	11.1
1988	1,707	1,232	475	7,772	5,153	2,619	9,610	6,142	3,467	22.0	23.9	18.1	17.8	20.1	13.7
1989	1,932	1,402	530	8,270	5,402	2,868	10,355	6,418	3,937	23.7	26.0	18.5	18.7	21.8	13.5

주 : 조직률 (A) = 조합원수 ÷ 비능가상시고 × 100

조직률 (B) = 조합원수 ÷ 총피용자 × 100

비능가상시고 및 피용자(상시고+일용직)의 계산시 모두 반기 및 연간 평균을 사용하여 구함.

자료 : 조합원수는 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및 내부자료, 비능가상시고 및 피용자는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1988 및 「한국통계월보」 1989년 6월호.

〈부표 16〉 연도별 단위노조수

(단위: 개소)

	산업별	지부	단위노조(분회)
1963	16	313	1,820
1964	16	341	2,105
1965	16	362	2,255
1966	16	359	2,359
1967	16	386	2,619
1968	16	385	2,732
1969	16	417	2,939
1970	17	419	3,063
1971	17	446	3,061
1972	17	430	2,961
1973	17	403	2,865
1974	17	432	3,352
1975	17	488	3,585
1976	17	517	3,854
1977	17	538	4,042
1978	17	552	4,305
1979	17	553	4,394
1980	16	—	2,618
1981	16	—	2,141
1982	16	—	2,194
1983	16	—	2,238
1984	16	—	2,365
1985	16	—	2,534
1986	16	—	2,658
1987. 6	16	—	2,725
1987.12	16	—	4,086
1988. 6	20	—	5,062
1988.12	21	—	6,142
1989. 6	21	—	7,380
1989.12	21	—	7,883

주: 1980년 8월 21일에 '노동조합정화조치'의 하나로 지부·분회가 단위노조로 통합됨.
 자료: 노동부.

〈부표 17〉 산업별·남녀별 노동조합수 및 노동조합원수(1989. 12. 31 현재)

(단위: 개소, 명)

	조합수	단 위 노 동 조 합			비 고
		계	남	여	
한국노총	1				
철 도	1	31,181	29,719	1,462	
섬 유	506	155,331	46,085	109,246	
광 산	127	44,305	42,596	1,709	
전 력	1	26,517	23,555	2,962	
의 기	89	38,416	23,348	15,068	
통 신	29	50,366	37,607	12,759	
항 운	85	46,668	44,610	2,058	
선 원	64	83,455	83,424	31	
금 용	183	120,571	75,550	45,021	
담 배 인삼	1	10,238	8,332	1,906	
화 학	1,036	206,429	142,899	63,530	
금 속	1,609	448,583	339,734	108,849	
연 합	1,390	237,597	167,000	70,597	
출 판	235	26,887	21,906	4,981	
자 동 차	806	121,161	112,446	8,715	
관 광	165	24,107	13,429	10,678	
채 신	1	21,949	16,733	5,216	
보 험	41	21,063	11,408	9,655	
택 시	1,371	117,284	116,700	584	
고 무	52	67,728	25,054	42,674	
사 무 금 용	90	32,579	19,971	12,608	
계	7,883	1,932,415	1,402,106	530,309	

주: ()안의 수치는 연합단체임.

〈부표 18〉 산별 조합원수 및 조합원 구성비 추이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합 계	497,221	515,292	548,094	655,785	750,235	845,630	954,727	1,054,608	1,088,061	948,134	966,738	984,136	1,009,881	1,010,522	1,004,398	1,035,890	1,267,457	1,707,456
철 도	34,156	32,977	31,679	33,655	33,549	32,946	33,461	33,165	32,806	32,734	32,841	32,254	31,072	30,664	30,426	30,398	30,305	31,041
섬 유	56,432	56,102	69,240	89,832	123,728	144,985	159,743	167,471	168,445	158,121	147,586	132,893	142,701	133,220	119,070	115,129	123,889	139,691
광 산	35,678	33,201	31,353	41,784	46,935	48,100	52,761	51,403	50,877	54,610	56,214	54,905	57,625	62,509	58,101	54,538	56,858	52,845
진 령	10,870	10,225	10,287	12,297	12,341	12,878	12,796	13,656	15,703	16,229	15,728	17,151	17,187	17,675	18,349	18,415	19,548	25,467
외 기	26,910	23,205	20,891	21,314	20,060	22,169	22,539	20,297	20,017	19,669	17,607	18,635	21,930	22,789	22,319	22,297	24,949	37,535
통 신	23,457	24,980	25,656	34,640	36,872	38,711	40,783	42,653	45,066	46,740	47,844	60,010	61,229	61,411	62,552	65,345	66,406	47,754
운 수	16,616	17,054	16,732	15,717	16,041	16,140	16,804	17,066	17,134	40,994	38,387	37,618	36,733	36,161	37,287	36,430	37,962	39,994
혁 민	45,165	49,567	51,734	64,470	64,421	66,972	87,001	96,590	104,241	34,015	83,022	83,403	81,037	77,768	75,653	79,574	78,444	86,099
금 용	19,972	23,425	25,173	31,513	37,174	37,164	41,115	52,347	59,934	58,272	63,203	75,326	83,814	90,800	94,619	97,547	125,521	114,349
진 매	14,197	13,592	12,378	14,177	14,139	14,562	14,433	14,019	14,500	13,105	13,700	13,183	12,872	12,390	12,130	11,454	10,816	10,574
화 학	41,267	43,742	48,009	66,776	81,439	103,035	130,876	160,782	165,135	157,834	156,562	163,897	164,341	146,515	147,506	154,433	180,529	179,921
금 수	25,397	28,604	33,387	49,051	63,090	82,907	98,470	128,040	127,889	115,395	109,939	103,575	115,231	123,351	127,812	135,778	229,016	402,182
연 합	38,957	43,873	44,959	48,422	52,127	62,967	73,935	76,723	77,666	71,933	63,686	61,306	57,771	58,242	59,894	59,835	101,521	188,514
출 판	4,557	4,365	4,272	5,204	10,233	10,574	7,879	9,680	5,726	8,322	6,821	6,483	5,959	6,080	6,196	5,815	6,439	21,932
자 동 차	80,536	85,950	96,623	101,816	111,986	124,362	134,359	141,074	150,726	109,375	105,424	115,897	113,493	123,033	114,403	140,226	164,626	92,195
관 광	2,283	4,716	6,925	6,389	6,207	6,871	7,112	8,821	11,318	10,787	7,994	7,600	4,946	7,914	8,081	8,676	10,898	18,637
부 두	20,771	19,711	18,874	19,728	19,893	20,287	20,660	20,821	20,878	-	-	-	-	-	-	-	-	-
체 신	-	-	-	-	-	-	-	-	-	-	-	-	-	-	-	-	-	21,160
시 령	-	-	-	-	-	-	-	-	-	-	-	-	-	-	-	-	-	13,016
협 회	-	-	-	-	-	-	-	-	-	-	-	-	-	-	-	-	-	101,333
고 무	-	-	-	-	-	-	-	-	-	-	-	-	-	-	-	-	-	65,278
사무금융	-	-	-	-	-	-	-	-	-	-	-	-	-	-	-	-	-	17,9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계	6.9	6.4	5.8	5.1	4.5	3.9	3.5	3.1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1.8
철 도	11.3	10.9	12.6	13.7	16.5	17.1	16.7	15.9	15.5	16.7	15.3	13.5	14.1	13.2	11.9	11.1	9.8	8.2	8.2	8.2	8.2
유 산	7.2	6.4	5.7	6.4	6.3	5.7	5.5	4.9	4.7	5.8	5.8	5.6	5.7	6.2	5.8	5.3	4.5	3.1	3.1	3.1	3.1
광 려	2.2	2.0	1.9	1.9	1.6	1.5	1.3	1.3	1.4	1.7	1.6	1.7	1.7	1.7	1.8	1.8	1.5	1.5	1.5	1.5	1.5
전 기	5.4	4.5	3.8	3.3	2.7	2.6	2.4	1.9	1.8	2.1	1.8	1.9	2.2	2.3	2.2	2.2	2.0	2.2	2.2	2.2	2.2
외 기	4.7	4.8	4.7	5.3	4.9	4.6	4.3	4.0	4.1	4.9	4.9	6.1	6.1	6.1	6.2	6.3	5.2	2.8	2.8	2.8	2.8
통 신	3.3	3.3	3.1	2.4	2.1	1.9	1.8	1.6	1.6	4.3	4.0	3.8	3.6	3.6	3.7	3.5	3.0	2.3	2.3	2.3	2.3
운 수	9.1	9.6	9.4	9.8	8.6	7.9	9.1	9.2	9.6	3.6	8.6	8.5	8.0	7.7	7.5	7.7	6.2	5.0	5.0	5.0	5.0
해 운	4.0	4.5	4.6	4.8	5.0	4.4	4.3	5.0	5.5	6.1	6.5	7.7	8.3	9.0	9.4	9.4	9.9	6.7	6.7	6.7	6.7
금 융	2.9	2.6	2.3	2.2	1.9	1.7	1.5	1.3	1.3	1.4	1.4	1.3	1.3	1.2	1.2	1.1	0.9	0.6	0.6	0.6	0.6
전 매	8.3	8.5	8.8	10.2	10.9	12.2	13.7	15.2	15.2	16.6	16.2	16.7	16.3	14.5	14.7	14.9	14.2	10.5	10.5	10.5	10.5
화 학	5.1	5.6	6.1	7.5	8.4	9.8	10.3	12.1	11.8	12.2	11.4	10.5	11.4	12.2	12.7	13.1	18.1	23.6	23.6	23.6	23.6
금 속	7.8	8.5	8.2	7.4	6.9	7.4	7.7	7.3	7.1	7.6	6.6	6.2	5.7	5.8	6.0	5.8	8.0	11.0	11.0	11.0	11.0
연 합	0.9	0.8	0.8	0.8	1.4	1.3	0.8	0.9	0.5	0.9	0.7	0.7	0.6	0.6	0.6	0.6	0.5	1.3	1.3	1.3	1.3
출 판	16.2	16.7	17.6	15.5	14.9	14.7	14.1	13.4	13.9	11.5	10.9	11.8	11.2	12.2	12.4	13.5	13.0	5.4	5.4	5.4	5.4
자 동 차	0.5	0.9	1.3	1.0	0.8	0.8	0.7	0.8	1.0	1.1	0.8	0.8	0.7	0.8	0.8	0.8	0.9	1.1	1.1	1.1	1.1
관 광	4.2	3.8	3.4	3.0	2.7	2.4	2.2	2.0	1.9	-	-	-	-	-	-	-	-	-	-	-	-
부 두																					
체 신																					1.2
시 령																					0.8
보 험																					5.9
고 무																					3.8
사무금용																					1.1

주: 통신노련의 조합원수는 1971~81년에는 당시의 채신노련의 조합원수이며, 1982~87년에는 우전통신노련의 조합원수임.
 자료: 노동부.

〈부표 19〉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계	임금체불	임금인상	휴폐업 및 조업단축	해 고	부 당 노동행위	근로조건 개 선	기 타
1975	133	32	42	7	10	19	4	19
1976	110	37	31	8	3	8	4	19
1977	96	30	36	4	4	6	2	14
1978	102	29	45	3	1	2	—	22
1979	105	36	31	5	6	3	—	24
1980	407	287	38	11	5	—	14	52
1981	186	69	38	11	9	4	32	23
1982	88	26	7	4	2	—	21	28
1983	98	35	8	9	6	—	19	21
1984	113	39	29	2	5	7	14	17
1985	265	61	84	12	22	12	41	27
1986	276	48	75	11	34	16	48	44
1987	3,749	45	2,629	11	51	65	566	382
1988	1,873	59	946	20	110	59	136	543
1989	1,616	59	742	30	81	10	21	673

주: 1988년 기타항목 543건중 단체협약에 관한 건수가 328건이고, 1989년 673건중 426건임.
자료: 노동부.

〈부표 20〉 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계	작업거부	농 성	시 위	기 타
1975	133	49	44	10	30
1976	110	45	45	15	5
1977	96	58	30	5	3
1978	102	55	26	3	18
1979	105	60	43	2	-
1980	407	98	204	47	58
1981	186	88	40	32	26
1982	88	67	16	3	2
1983	98	62	27	6	3
1984	113	62	46	3	2
1985	265	108	154	3	-
1986	276	138	112	21	5
1987	3,749	1,226	2,428	88	7
1988	1,873	675	1,178	5	15
1989	1,616	632	898	1	85

자료: 노동부.

〈부표 21〉 원인·유형별 노사분규 현황(1989. 12. 31 현재)

(단위:건)

	유 형 별 발 생					해 결	미해결
	계	작업거부	농 성	시 위	기 타		
임금체불	59	34	24	-	1	58	1
임금인상	742	347	354	1	40	740	2
휴폐업및 조업단축	30	5	20		5	27	3
작업환경 개선							
근로조건 개선	21	8	11		2	21	0
단체협약	426	127	284		15	410	16
해 고	81	11	68		2	79	2
사 납 금	11	3	1		7	11	0
노사협의 부 당	10		10			10	0
노동행위							
기 타	236	97	126		13	230	6
전년동기	1,873	675	1,178	5	15	1,813	60
계	1,616	632	898	1	85	1,586	30